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4)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자영업자 소득추계

1998. 10

통 계 청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4)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자영업자 소득추계

연구자 : 한 신 대 학 교

배 준 호

통 계 청

머 리 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에 이어 19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비농가중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매일 가계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고, 저축과 부채·연간소득·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은 직접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부담이 크고, 조사대상가구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조사입니다만 여러단계의 준비를 거쳐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쳤고 유용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다 널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초에 5개 주제를 선정하여 종합분석사업을 시작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번에 종합분석 내용을 주제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별 보고서중 제1권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금융자산보유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을 찾고자 하였으며, 제2권에서는 유동성제약하에서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결정에 있어 유동성제약의 중요성을 추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권에서는 지역별 소득 및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지역별 형평을 고려한 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권에서는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자영업자 소득을 추계하여 경제위기 국면에서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위협이 가구에 미칠 파급효과를 전망하므로써 정부의 대응방안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에서는 여성의 활발해진 경제활동참여와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의 생활실태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정책 및 육아정책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관련분야별로 연구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종 경제·사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96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가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8년 10월

통 계 청 장
윤 영 대

- 목 차 -

제1부 저소득층 생활 실태 분석.....3
Ⅰ. 문제의 제기.....3
Ⅱ. 지역별로 다른 실업 실태와 정부·가계의 경제력.....6
Ⅲ. 실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기반 파괴 12
Ⅳ. 가구 속성에 따른 실업 취약 계층의 파악.....25
Ⅴ. 고실업율 시대의 정부재정의 역할 28
Ⅵ. 결론(실업대책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 확보) 43
부록 1.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지출의 축소조정 47
부록 2. 근로자가구 중 실업 취약 계층의 유형별 파악 54
가.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연령별.....54
나. 가구유형 및 가구구분별.....57
다. 산업별 60
라. 교원가구와 금융보험업가구.....62

제2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과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71
Ⅰ. 문제의 제기.....71
Ⅱ.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73
Ⅲ.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에 따른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 ...80
Ⅳ. 결론..... 88

제3부 도시자영업자의 소득추계.....90
Ⅰ. 문제의 제기 90
Ⅱ.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92
Ⅲ. 도시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문제점.....98
Ⅳ. 도시 자영업자 소득 추계 방법.....104
Ⅴ. 결 론 116
부록 : 가구구분별 소비함수(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118

- 표·그 림 목 차 -

[표]

<표 1-1> 지역별 경제력 순위 : 재정자립도·소득·GRDP……7
<표 1-2> 가구원 실직이 가계 생활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근로자가구,지역별)…… 11
<표 1-3> 가구원 실업이 근로자가구 생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소득계층5분위별)…… 17
<표 1-4> 가구원 실업에 따른 파급효과의 가구유형별 비교
(근로자가구, 소득기준하위 60%)……18
<표 1-5a>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20
<표 1-5b>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20
<표 1-6> 저소득층의 동면가능기간 분포와 소득·자산 실태 ……21
<표 1-7> 저소득층의 가구유형별 동면가능기간 분포……22
<부표1-1>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1 ……52
<부표1-2>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2 …… 52
<부표1-3> 저소득층의 가구유형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52
<부표1-4> 연령별·부부학력별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 비교· 53
<부표2-1>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취업인원수별)……55
<부표2-2>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가구주 연령별)……56
<부표2-3>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가구유형별)…… 58
<부표2-4>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가구구분별)…… 59
<부표2-5>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가구주 산업별) ……61
<부표2-6>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취업인원수별) ……63
<부표2-7>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 가구주 연령별)……64
<부표2-8>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가구유형별) ……65

<부표2-9>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 지역별) ·····66
<부표2-10>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가구, 취업인원수별) ····· 67
<부표2-11>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가구, 가구주연령별)·····68
<부표2-12>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가구, 가구유형별)·····69
<부표2-13>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가구, 지역별)·····70
<표 2-1> 단시간 취업자의 시간대별 남녀 분포 ·····74
<표 2-2> 취업자 변화 (종사상 지위별)·····76
<표 2-3>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특성 분석 : 프로빗 분석·····79
<표 2-4>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가구유형별) ····· 81
<표 2-5> 가구원 실업 효과의 가구 유형별 비교
(근로자가구, 소득 하위 60% 기준) ·····83
<표 2-6> 연령별·부부학력별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 비교…87
<표 3-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92
<표 3-2>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93
<표 3-3>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94
<표 3-4> 농어촌 지역 보험료 부과와 징수 현황·····95
<표 3-5> 보유자산과 인적자본 정보를 이용한 소득추계
(근로자가구) ·····112
<표 3-6> 보유자산과 인적자본 정보를 이용한 소득추계
(자영업자가구) ·····114
<부표3-1> 소비함수 추정식 (전체가구) ·····118
<부표3-2> 소비함수 추정식 (근로자가구) ·····120
<부표3-3> 소비함수 추정식 (자영업자가구) ·····122

[그림]

<그림 1-1> 지역별 실업률……6
<그림 1-2> 지역별 경제력 순위 : 재정자립도·소득·GRDP ……7
<그림 1-3> 가구주 실업에 따른 동면가능기간(지역별 비교)……10
<그림 1-4> 직업별 남녀 취업자 변화율……14
<그림 1-5> 종사지위별 남녀 취업자 변화율……14
<그림 1-6> 가구주 실업시 동면가능기간(월소득 기준)……16
<그림 1-7> 가구주 실업시의 동면가능기간(월소득기준, 지수화)……16
<그림 1-8a> 저소득층의 동면가능기간 분포 ……19
<그림 1-8b> 동면가능기간 6개월의 계층별 구성비……20
<그림 1-9> 맞벌이가구의 일반가구에 대한 경제력 우위……24
<그림 1-10> 맞벌이가구의 일반가구에 대한 경제력 열위
(배우자 실직시)……24
<그림 1-11> 서울시 실업대책별 예산비율……33
<그림 1-12> 서울시 실업예산의 조달비율……33
<부도 1-1>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조정……49
<부도 1-2>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축소……50
<그림 3-1> 소득 추계의 기본 발상……105

머리말

우리의 경제사회는 지금 '혼돈'으로 빠지느냐 '안정'으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간의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일거에 분출되어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의 와중에 있다. 경제사회의 회생을 위해 기업, 금융기관, 나아가서는 정부 부문에서까지 광범위한 구조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작업의 결과로 다수의 실업자가 생겨나 실업률은 지난 40여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8년 8월말 기준으로 실업률은 8%대에 달하고 있으며 1999년에 들어 10% 전후의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세 가지 주제를 분석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근로자가구 특히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퇴출에 따른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간의 경제력 격차의 변화 분석, 그리고 현안인 도시 자영업자에의 국민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모색이 그 것이다.

첫번째 주제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자가구 가구원의 실업이 미칠 파급효과 가령 가계 소득의 감소와 소비지출의 축소 등을 가계 차원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다. 즉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가구원의 실업이 각 그룹의 대표적인 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득 감소와 소비지출의 축소, 그리고 발생하는 적자를 저축보유액으로 견뎌낼 수 있는 기간 등을 시산한다. 이상의 분석을 지역별, 소득계층별, 보유자산규모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아울러 취업인원수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유형별, 가구구분별, 산업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두번째 주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같은 현상으로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맞벌이가구의 여성배우자가 실직함으로써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와의 경제력 격차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연령별, 부부 학력별로도 그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덧붙여 기혼여성의 취업 특성을 프로빗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세번째 주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된 연구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수 가능한 물적, 인적자산 보유 실태와 소비생활 정보를 토대로 소득을 추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점 요소들을 밝히는 작업이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앞의 두 주제의 경우, 경제위기 국면에서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위협이 근로자 가구에 미칠 파급효과를 전망함으로써 당국의 대응 방안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 주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적정 과세의 실현이라는 해묵은 숙제 및 도시 자영업자에의 연금 적용 확대라는 현안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의 발전적 연구를 위한 시금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 추진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귀찮은 문의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주신 통계청 사회통계과 윤형백 과장, 우사임 사무관, 최관봉, 박영호, 박성인 님, 그리고 전산 분석을 담당해준 조인호 전 한화경제연구원 전산실장에게 감사드린다.

제1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분석

Ⅰ. 문제의 제기

진행중인 민간부문의 활발한 고용조정으로 과거 우리 경제사회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용조정은 피고용자의 반발이 약한 민간부문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등이 우선적인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구조조정의 여파가 금융기관과 대기업으로 번지면서 고용조정이 기능공 및 상용직 근로자 계층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어 상대적으로 고용보장도가 높은 이들 계층에도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정년 이전의 퇴사가 보편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공기업을 필두로 고용조정이 시작되면서 '철밥통'으로 알려진 이들 그룹에서도 실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조조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어 민영화나 민간 위탁 등이 활성화되면 구조조정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수년 이내에 실업할 것이다.

최근 대도시 지역의 실업률이 늘면서 그간의 대도시간 실업률 격차가 줄어들고 대도시 지역과 시군부 지역간의 실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부산, 인천,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과 경기의 실업률이 7%를 넘어선 반면 시군부 지역의 실업률은 5% 전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대도시 및 경기 지역이 고용흡수력이 높았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집중지역이었던 반면 시군부 지역은 농어업 종사자가 많고 이들 산업의 잠재적인 고용흡수여력 또한 높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된 과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1998년 9월 현재, 실업대책은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과 소요예산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실업대책과 별도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서울, 경기 등 재정 규모가 크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로 사업과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의 대부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의 실업대책비 중 9할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해 조달되므로 지방정부가 실업대책비 조달면에서 기여하는 정도는 미약하다. 서울, 경기 등 여유있는 일부 지방정부 조차도 중앙정부에서 배정되는 실업대책비를 제외한 자체 대책비

는 직원 급여 삭감분 등 기존 예산의 전용과 지방채 발행에 의한 조달이 고작이다.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것은 수요부족에 따른 극심한 불황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고 있고 지방채 발행과 외채 도입이 힘들기 때문이다.

지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고용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님은 명백하다. 지방정부와 지역내 민간부문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지역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자금면에서 역내 기업 경영을 돕고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일자리 창출은 어렵더라도 일자리 유지는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고용 패턴의 신축적인 운영이 전국단위보다 지역단위에서 보다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는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 이상의 사업을 전개할 경우 소요자금의 조달루트로는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국의 민간 부문을 염두에 둔다. 해당 지역의 추진 사업에 비전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 실업대책 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 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제력과 더불어 '자조 노력' 을 중요 지표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수행중인 각종 사회간접자본 지출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1조원 상당을 1998년도 추경예산에 배정해, 지방정부 발행 채권을 구입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앙정부 조달 재정자금의 지방 이관시 실업대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해 이를 토대로 지원 수준을 정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공유 등을 통한 고용유지에 성공해 장기실업자의 증가 방지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확보하려는 지방정부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첫째, 한정된 재원을 경기대책과 실업대책에 어느만큼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실업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주민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장기실업자 방지책과 연계시키는 문제이다. 불황하 세수입 격감으로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자 규모를 가급적 줄이려는 중앙정부와 일정수준의 실업대책을 펼치려고 벼르는 지방정부간의 밀고당기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 예산 중 얼마만큼을 실업대책에 사용할 것인지, 또 그간 펼쳐온

실업대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 끝없이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 이상으로 경기부양을 통한 실물경제의 회생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며, 따라서 실업대책의 상당부분을 경기대책으로 연계시켜 구상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 Ⅱ절에서 지역별로 다른 실업실태와 정부·가계의 경제력, Ⅲ절에서 실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불안정 실태를 살펴보고, Ⅳ절에서 가구 속성에 따른 실업 취약 계층을 파악하고, Ⅴ절에서 고실업률 시대의 정부재정의 역할을 정리하고 Ⅵ절에서 실업대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 확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결론을 기술한다.

Ⅱ. 지역별로 다른 실업 실태와 정부·가계의 경제력

1. 지역별로 다른 실업 실태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 특별시, 경기 등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이중에서도 불황 산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 인천 지역의 실업률이 특히 높다(그림 1-1 참조).

1998년 7월 현재 부산, 인천,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과 경기의 실업률이 7-9% 수준을 보이는 반면 도부 지역의 실업률은 5% 전후의 수준을 보여 산업활동이 활발한 대도시 및 그 주변부의 실업률이 높다. 이같은 차이는 대도시 및 그 주변부 지역이 구조조정을 강요받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집중지역이고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 반면, 도부 지역은 농어업 종사자와 영세기업 종사자가 많은데 이들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림 1-1> 지역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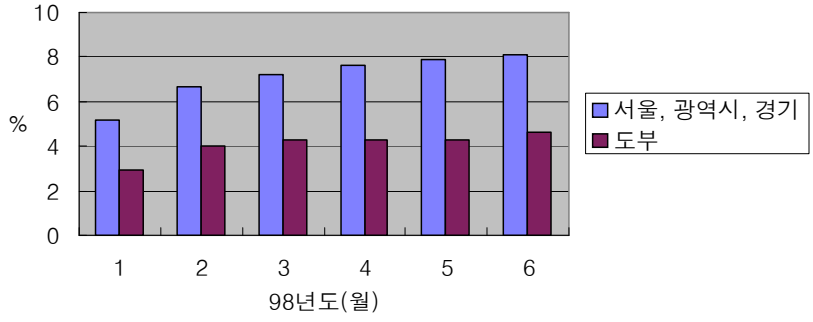

2. 지역별로 다른 정부·가계의 경제력

지방정부의 경제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력 지표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비율(순계 기준)을 고려하면 1998년 기준 평균인 63.4%를 넘는 곳은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 인천, 대구, 광주의 열거순으로 낮아지며, 평균을 밑도는 곳은 전남, 전북, 충남, 경북, 충북, 강원, 제주, 경남으로 열거순으로 높아진다. 서울은 98.8%로 가장 높고 광역시와 경기가 73%-88% 수준을 보여 나머지 지방정부의 25%-4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에 틀림없지

만 해당 지방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1-1>과 <그림 1-2>에서 보듯 재정자립도 순위와 지역별 근로자가구 소득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순위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세 가지 지표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오는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제주 정도이다.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재정자립도 순위에 비해 소득과 GRDP의 순위가 훨씬 낮다.

<표 1-1> 지역별 경제력 순위 : 재정자립도·소득·GRDP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정자립도	1	2	6	5	7	3	4	10	11	13	14	15	12	8	9
근로자가구 소득	1	15	10	12	4	7	8	9	5	3	2	13	14	6	11
1인당 지역내총생산	4	13	15	8	11	14	7	12	6	5	10	2	3	1	9

주 : 재정자립도는 1998년도 예산 기준. 근로자가구 소득은 통계청의 『1996년도 가구 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한 필자의 분석 결과. 1인당 GRDP는 1995년 기준치 통계청 작성 자료.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 및 KOSIS 통계 DB.

<그림 1-2> 지역별 경제력 순위 : 재정자립도·소득·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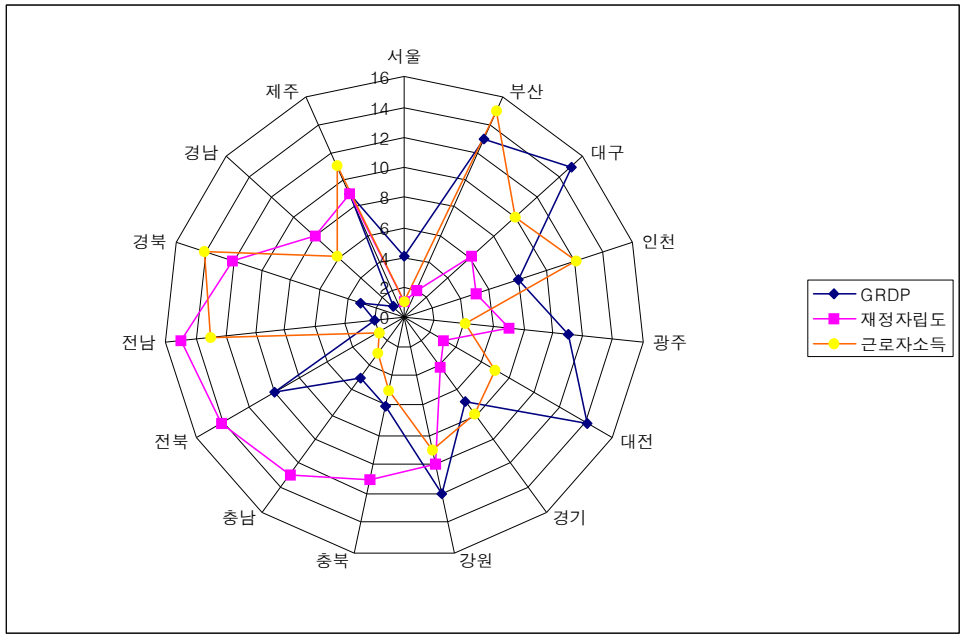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일반회계 규모 즉 기준재정수요가 크거나 세입 규모가 작은 지역이다. 일반회계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재정수요는 해당 지역의 주민수와 인구 구조, 면적, 공무원수,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사회복지 수요, 산업 경제 현황, 도로, 하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물리적으로 면적이 넓은 도 단위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

세입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입이 큰 지방정부는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고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자산가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상거래 및 자본거래가 활발한 대도시 지역이다. 지방세 구조가 소득세나 소비세보다는 '거래세'와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재산세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높은 실업률이 해당 지역 주민생활의 생활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가계의 경제력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 지표인 평균 월소득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근로자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서울이 200.1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이 166.0만원으로 가장 낮다. 부산은 서울의 83.0%에 불과하다. 부산의 낮은 소득은 가구주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곧 취업에 의한 배우자소득의 가구소득 기여도(9.8%)와 기타가구원 소득의 가구소득 기여도(10.2%)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산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경북, 전남은 근로자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168.8만원과 171.0만원인데 이는 가구주의 소득이 작고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의 가구소득 기여도(5.2%, 5.3%)가 낮기 때문이다. 경기의 평균 월소득이 제8위인 177.6만원인 점은 다소 의외이다. 이는 배우자소득의 높은 기여도(10.5%)에 비해 기타가구원소득의 기여도(6.1%)가 낮고 가구주 소득 또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충남(186.3만원)이 배우자소득의 기여도(12.4%)가 높고 기타가구원소득의 기여도(5.6%)가 낮은 점에서 경기와 비슷한데 소득이 높은 것은 가구주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충남과 더불어 공동 2위인 전북은 배우자소득의 기여도(10.8%)와 기타가구원소득의 기여도(8.8%)가 서울(10.2%, 8.7%), 충북(9.0%, 9.1%)과 더불어 높다. 반면 두 기여도가 높은 제주(11.3%, 8.4%)는 가구주 소득이 낮아 가구전체 소득은 제11위(174.2만원)로 낮다.

이상의 숫치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통계청의 조사대상에서 영농·영어 가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충북 등의 경우, 선발된 표본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비영농·비영어 가구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도부지역은 시부와 군부의 표본 추출비율에 있어 표본의 적합률 등의 문제로 시부 지역의 표본추출 비율이 군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설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조사치가 도부지역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기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1].

스톡인 보유저축액과 보유자산[2] 규모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산보유액인 저축보유액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 대체로 크다. 예외는 제주 정도이다. 제주는 소득은 낮은데 저축보유액이 1812.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광주가 소득 수준과 저축보유액이 가장 높아 다소 의외이다. 도단위에서는 충남, 전북, 충북, 경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전북, 충북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도 의외이다. 이들 지역의 추출표본이 1천 전후의 소표본이라는 점에서 표본 오차를 고려해야 할 지 모른다. 이 점은 본고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분야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보유자산규모는 지가의 차이를 반영하여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 경기, 경남, 인천, 충남,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전북, 강원, 경북, 제주, 전남의 순으로 낮아진다. 대체로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여겨지지만 저축보유액이 높은 수준인 제주와 경북의 순위가 낮게 나온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단 제주의 경우, 거주용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까지를 포함한 보유자산 규모에서는 전국 순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가구주 실직에 따른 '동면가능기간'의 지역별 비교

실업이 근로자가구에 안겨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계 적자를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으로 매꾸어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이하 동면가능기간)' 으로 계측해 보았다. 통계청의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14,795 근로자가구를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실업시의 파급효과를 각각 계측했다.

가구의 저축보유액을 고려함에 있어 퇴직시점과 실업기간 중 해당 가구가 받는 각종 금전적 급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구간 급부의 격차가 커서 평균의 의미가 약한 점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그보다는 1996년의 조사시점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 급부까지를 고려하면 대기업, 금융기관 종사자가 많은 대도시와 그 주변부 지역의 저축보유액이 더 커져 동면가능기간을 늘릴 것이다.

가계수지 계산시 조세, 보험료, 부조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조세와 보험료 등은 실업시 납부하지 않을 때가 많고 부조금 등도 크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부채 상환을 독촉받지 않고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이 전액 소비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가계에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이며 경남, 충남, 광주, 전남이 그 뒤를 잇는다. 저축보유액으로 견뎌낼 수 있는 동면가능기간은 가장 짧은 경기, 대전이 33개월이고 위에 열거한 지역은 이 기간이 모두 40개월 이하이다(표 1-2 참조). 해당 기간이 40개월을 초과하는 지역은 충북의 59개월을 필두로 제주, 강원, 서울, 경북, 인천, 전북 순으로 낮아진다. 충북의 높은 값은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취업율이 높고 저축보유액이 큰 반면 소비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가구주 실업에 따른 동면가능기간(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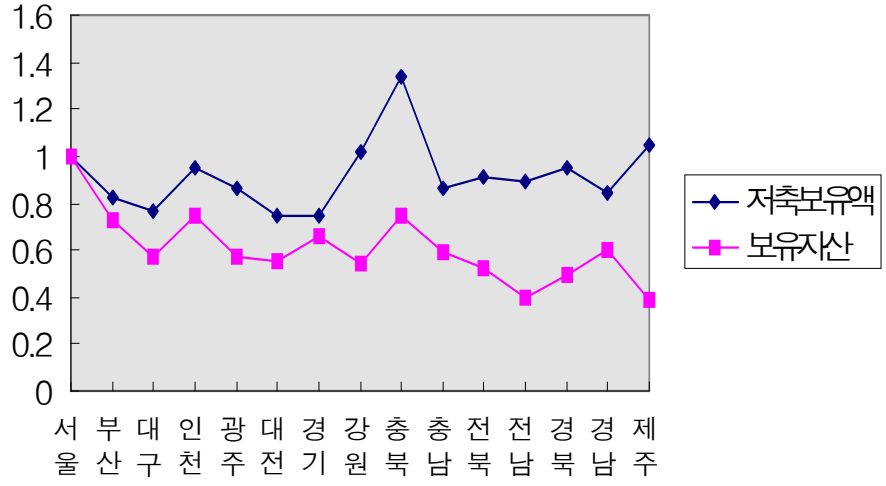

<표 1-3> 가구원 실직이 가계 생활안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근로자가구, 지역별)

(단위:만원)

가구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수(개)	1870	1538	990	1432	966	1025	1822	693	713	592	537	491	678	1126	324
월평균 소득	200.1	166.0	174.6	173.3	184.1	177.6	176.6	175.8	184.1	186.2	186.3	171.0	168.8	184.0	174.2
월평균 소비지출	128.3	112.9	114.7	110.9	122.6	113.2	112.5	109.0	112.4	123.4	118.1	108.6	104.0	113.8	112.5
저축보유액(평균)	1793	1385	1344	1385	1617	1370	1327	1598	1621	1590	1488	1342	1501	1558	1812
보유자산(평균)	10880	7451	5928	6616	6386	6129	7040	5113	5459	6515	5161	3744	4730	6831	4182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59.5	50.5	51.1	48.6	52.8	44.0	47.1	50.8	58.6	53.6	60.3	46.9	43.1	43.1	57.7
조정소비지출	102.2	91.9	92.8	86.0	97.3	88.3	89.4	88.9	89.9	98.1	99.5	85.7	83.3	88.8	98.9
가계수지	−42.7	−41.4	−41.7	−37.4	−44.5	−44.3	−42.2	−38.1	−31.3	−44.5	−39.2	−38.8	−40.1	−45.7	−41.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2	−33	−32	−37	−36	−31	−31	−42	−52	−36	−38	−35	−37	−34	−44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55	−180	−142	−177	−144	−138	−167	−134	−174	−146	−132	−96	−118	−149	−101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29.6	108.1	112.8	110.7	118.4	110.7	111.7	113.2	121.0	119.9	123.4	109.0	105.9	113.5	115.9
조정소비지출	116.5	104.1	105.8	99.2	110.5	103.7	101.7	100.3	102.4	112.3	108.8	98.4	95.8	103.8	106.5
가계수지	13.2	4.0	7.0	11.5	8.0	7.0	10.0	12.9	18.7	7.6	14.6	10.5	10.0	9.7	9.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36	345	193	121	203	196	133	124	87	210	102	128	149	160	194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827	1857	853	577	803	877	704	396	292	859	354	358	469	704	447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79.7	149.7	159.3	158.2	168.5	163.8	158.0	158.6	167.4	163.2	166.2	156.0	155.3	168.1	154.6
조정소비지출	118.9	106.4	108.3	101.7	113.1	106.3	103.7	102.3	104.8	114.9	110.7	101.3	98.3	106.4	108.0
가계수지	60.8	43.4	60.0	56.5	55.5	57.4	54.4	56.3	62.6	48.3	55.5	54.6	57.0	61.7	46.7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0	32	26	25	29	24	24	28	26	33	27	25	26	25	3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79	172	116	117	115	107	130	91	87	135	93	69	83	111	90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82.7	148.8	157.8	157.8	171.1	165.7	165.7	163.3	167.0	175.8	169.9	162.0	160.0	173.7	159.5
조정소비지출	119.1	106.2	108.3	101.6	113.2	106.5	104.0	102.5	104.8	115.5	110.8	101.6	98.5	106.6	108.1
가계수지	63.6	42.6	49.5	56.2	57.9	59.2	61.7	60.8	62.3	60.3	59.1	60.3	61.5	67.1	51.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8	32	27	25	28	23	22	26	26	26	25	22	24	23	3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71	174	120	118	110	104	114	84	88	108	87	62	77	102	81

주 : '조정소비지출'의 계측 방식은 부록 1. 참조

자료 : 통계청의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한 필자 분석

Ⅲ. 실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기반 파괴

1. 저소득층의 규모와 분포

통계상으로 파악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은 최근까지 줄어들어 왔다. '빈곤인구/총인구' 로 정의되는 빈곤율은 60년대의 40%대에서 70년대 15%, 80년대 10%, 90년대 8% 대로 떨어졌다[3].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관한 정의[4]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기준에 이들 계층을 정의할 경우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널리 쓰이는 지표의 하나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사용하여 이에 미달하는 계층을 절대빈곤인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하나인 생활보호대상자에 생계비 지원도 그 선정기준도 최저생계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5].

IMF 체제로의 이행 이후 실업자 급증과 불황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저소득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빈곤율도 그간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실업과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업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실업급여와 각종 공적부조 지급 대상의 확대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자가 급증하여 절대 빈곤인구를 늘리고 빈곤율도 일시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소득층을 「가구소비실태조사」 조사대상의 하위 20%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분석대상인 14,797 근로자가구 중 제1분위의 월평균소득 76.3만원은 평균소득 179.6만원의 42.5%로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제1분위 가구중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는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이며 맞벌이가구가 저소득층 가구로 분류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월평균소득은 노인가구 55.7만원, 모자가구 70.5만원으로 이들 가구는 전형적인 저소득층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제1분위의 8.3%와 4.9%를 점해 제2분위(0.7%, 1.4%)와 제3분위(0.4%, 0.9%)에 비해 훨씬 비율이 높다. 맞벌이가구는 제1분위의 4.8%로서 제2분위(14.5%)와 제3분위(28.2%)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1분위의 낮은 맞벌이가구 비율은 '맞벌이를 못해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는' 가구가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

2. 저소득층의 가계수지와 보유자산 실태

최하층 제1분위로 규정된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월간 가계수지는 흑자를 보인다. 제1분위는 소득 76.3만원, 소비지출 63.0만원으로 흑자액은 13.3만원, 평균소비성향은 82.6%를 보이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모자가 89.2%로 가장 높고 일반(82.9 %), 맞벌이(79.6%), 노인(75.8%) 순으로 낮아진다. 노인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적은 가구원수 등의 이유로 소비지출이 더욱 낮아 낮은 소비성향을 보여준다.

저축보유액은 노인가구,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보유자산 규모는 모자가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저축보유액은 제1분위 평균이 592만원이며 일반(612만), 모자(607만), 맞벌이(578만), 노인(390만) 순이고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의 64% 수준이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보유자산 규모는 제1분위 평균이 3,622만원이며 맞벌이(4,046), 일반(3,643), 노인(3,377), 모자(3,278) 순이고 모자가구는 맞벌이가구의 81% 수준으로 저축보유액에 비해 격차가 작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부동산의 가격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사용한 보유자산 규모는 일정 가정하의 추정치이다.

3. 저소득층의 취업 실태

저소득 근로자는 직업이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에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일부 상용직에 집중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누적합계가 전체 근로자에서 점하는 비율은 월 50만원 미만이 3.84%, 60만원 미만이 9.4 %, 80만원 미만이 23.8%이다[6]. 남녀의 분포비율은 남자가 1.6%, 4.4%, 13.5%이고 여자는 9.5%, 22.3%, 50.2%로서 여자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즉 여자 근로자 점유비는 월 50만원 미만 근로자의 69.4%, 60만원 미만 근로자의 66.4%, 80만원 미만 근로자의 59.2%에 달한다.

1997년 하반기 이후 실업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에 근무하던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실업하고 있다. <그림 1-4>에서 보듯 저소득 근로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직업인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의 취업자 변화율이 가장 크다. 또 <그림 1-5>에서 보듯 일용직과 일부 상용직에서 실업이 두드러지며 여자의 실업이 남자를 앞서고 있다.

<그림 1-4> 직업별 남녀 취업자 변화율

(1998년 4월,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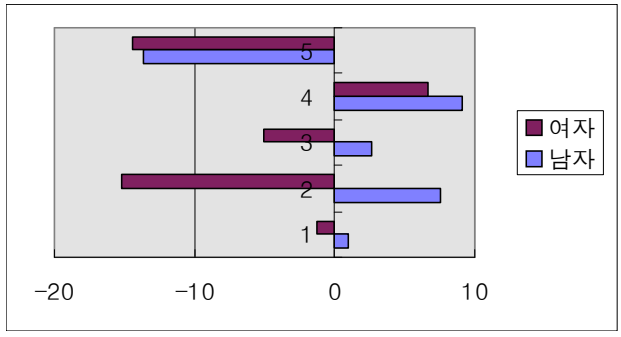

1.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2. 사무직
3. 서비스 판매직
4. 농림어업직
5. 기능 기계조작 단순 노무직

<그림 1-5> 종사지위별 남녀 취업자 변화율

(1998년 4월,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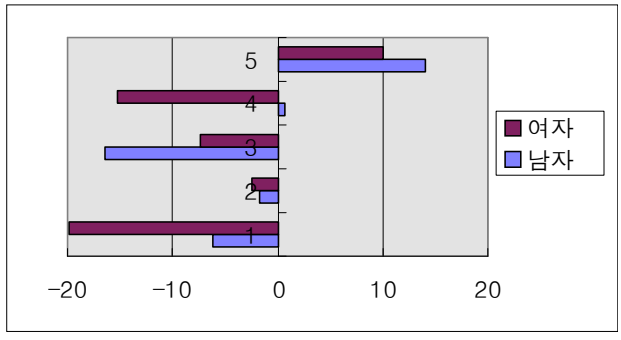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자영업주
5. 무급가족종사자

4. 실업에 따른 경제력 격차의 확대

지난 1년 사이에 급증한 전직(前職) 실업자의 주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해고된 이들로 이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므로, 실업자 증가가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한 저소득 가구의 소비 축소를 통한 가계수지 적자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의 상대적인 감소폭이 커 실업 위험이 낮은 중산층 이상 가구와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같은 실업자라도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위로금, 실업급여에 차이가 있고 이들 자금의 운영에 따른 자산소득의 격차로 '근로시의 경제력 격차가 퇴직후에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불황은 과거의 불황과 그 성격이 달라 실업자의 재취업이 저소득 일용·임시직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상용직부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까지 전직 실업자는 시차는 있지만 대부분 재취업했으나 오늘의 불황은

순환 요인외에 구조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실업자의 재취업 패턴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중산층 이상 가구의 실업자들이 취업처를 하향 조정하여 취업할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저소득 가구가 장기실업자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7]. 이렇게 되면 '퇴직으로 확대된 경제력 격차가 재취업 과정을 통해 한층 확대될' 수 있다.

5. 실업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동면가능기간

전 근로자가구를 5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의 대표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5>에, 하위 3분위를 가구유형별 대표적 가구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가 <표 1-6>에 기술되어 있다.

가. 소득수준에 의한 하위 20% 계층의 낮은 경제력

1) 평균치 기준

가구주의 실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동면가능기간은 저축보유액 기준시 14개월로 가장 여유있는 제5분위 계층의 1/8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축보유액으로 실업을 견뎌내는 이른바 동면가능기간은 14월(연소득 기준 15월)로 2분위(20월), 3분위(29월), 4분위(35월), 5분위(122월)에 비해 훨씬 낮다(그림 1- 6a 참조).

보유자산 추정치에 의한 동면가능기간은 90월(동 97월)로 2분위(112월), 3분위(142월), 4분위(161월), 5분위(445월)에 비해 훨씬 낮다(그림 1-6b 참조). <그림 1-7>은 이상의 차이를 제1분위를 1로 하여 각분위의 값을 지수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숫치는 퇴직전 직장과 당국, 그리고 주변의 지원없이 가계가 견뎌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8]. 중산층 이상의 실업 근로자 중 다수가 퇴직시 상당수준의 퇴직금·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제시된 숫자 이상으로 격차가 크게 확대된다. 계획대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일부 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 계층의 동면가능기간은 제시된 숫자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고려할 경우, 여기서 제시된 값이상으로 격차가 확대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가구주의 실업에 따른 해당 가구의 소비지출 삭감 노

력[9]이 크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즉 소득 감소시의 소비지출 감소를 나타내는 탄력치가 소득 증가시 탄력치의 일정 수준(가령 0.1 배)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일정 수준의 값을 0.5, 1.0으로 늘리면 소비 감소폭이 늘기 때

<그림 1-6> 가구주 실업시 동면가능기간(월소득 기준)

(a) 저축보유액 (b) 보유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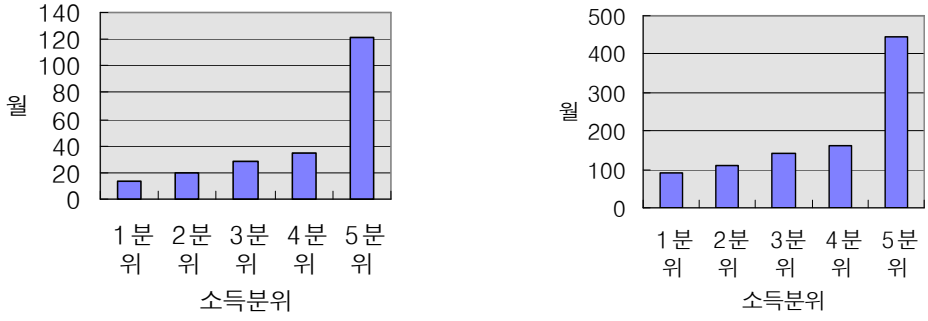

<그림 1-7> 가구주 실업시의 동면가능기간(월소득 기준,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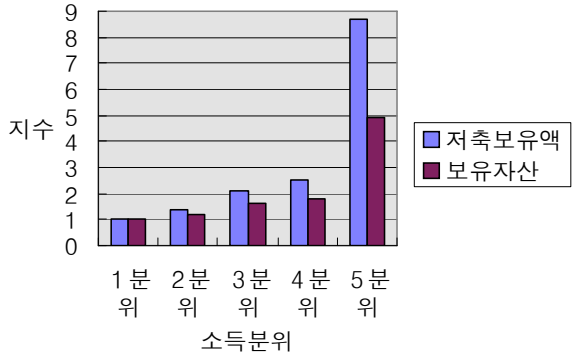

문에 가계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부도 2 참조). 또 소득의 절대수준에 따라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의 탄력치가 다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생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한 반면 저축보유액을 처분하여 생계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다. 즉 주거용 부동산의 평가액을 전액 소비할 수 있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인 것은 금융시장이 불완전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율이 낮고 부동산의 매각은 거주 기반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표 1-3> 가구원 실업이 근로자가구 생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소득계층 5분위별)

(단위:만원)

소득 계층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표본수(개)	2960	2960	2960	2960	2957
월평균 소득	76.3	124.1	162.1	209.8	325.8
월평균 소비지출	63.0	88.4	109.0	131.6	184.5
저축보유액(평균)	591.6	963.2	1299.2	1715.1	2935.1
보유자산(평균)	3622.2	5350.7	6474.8	7813.4	10730.8
가구주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8.6	20.2	36.3	59.0	130.0
조정소비지출	48.9	68.2	81.9	107.6	154.0
가계수지	−40.3	−48.0	−45.6	−48.5	−24.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4	−20	−29	−35	−122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90	−112	−142	−161	−445
가구주 50% 실업시					
실업후 소득	42.2	72.0	99.1	134.4	227.8
조정소비지출	57.0	80.5	98.1	120.9	167.9
가계수지	−14.8	−8.5	1.0	13.5	59.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0	−114	1295	127	4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45	−631	6455	578	179
배우자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74.5	117.8	148.5	186.8	285.5
조정소비지출	58.3	82.5	101.4	123.1	170.6
가계수지	16.1	35.2	47.1	63.7	115.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7	27	28	27	2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25	152	138	123	93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업후 소득	74.8	118.0	151.3	194.1	290.7
조정소비지출	58.4	82.5	101.5	123.3	170.7
가계수지	16.4	35.5	49.8	70.8	119.9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6	27	26	24	89.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21	151	130	110	24.5

자료 : 필자계산.

<표 1-4> 가구원 실업에 따른 파급 효과의 가구유형별 비교

(근로자가구, 소득기준 하위 60%)

(단위:만원)

소득 계층 / 가구유형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일반	맞벌이	노인	모자	일반	맞벌이	노인	모자	일반	맞벌이	노인	모자
표본수(개)	2427	142	247	144	2466	430	22	42	2085	834	13	28
월평균 소득	78.2	85.7	55.7	70.5	123.8	126.3		119.8	161.3	164.1		156.6
월평균 소비지출	64.8	68.2	42.2	62.9	88.1	90.5		92.6	110.7	104.4		112.8
저축보유액(평균)	611.9	577.9	390.3	607.2	985.6	829.0		819.5	1366.6	1095.3		2614.7
보유자산(평균)	3642.8	4046.4	3376.9	3278.0	5426.5	4880.4		5090.5	6885.5	5453.5		7007.0
가구주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6.8	32.9	11.7	9.5	15.2	46.8			26.4	60.4		
조정소비지출	49.3	64.9	39.5	53.1	66.0	81.0			77.4	93.8		
가계수지	-42.6	-32.0	-27.8	-43.6	-50.8	-34.2			-51.1	-33.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4	-18	-14	-14	-19	-24			-27	-3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85	-126	-121	-75	-107	-143	n.a.[1)]	n.a.	-135	-163	n.a.	n.a.
가구주 50% 실업시												
실업후 소득	42.2	59.1	33.7	40.0	69.4	86.4			93.7	112.2		
조정소비지출	58.3	66.6	41.6	59.9	80.2	83.9			98.6	97.3		
가계수지	-16.1	-7.5	-7.9	-19.9	-10.8	2.4			-4.8	14.9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8	-77	-50	-30	-92	342			-282	74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26	-540	-429	-164	-504	2015			-1423	366		
배우자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77.8	54.9			123.1	87.0			160.3	118.4		
조정소비지출	59.7	66.3			82.6	83.8			103.4	97.5		
가계수지	18.0	16.1			40.5	3.2			56.9	21.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4	37			24	259			24	5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02	225			134	1526			121	260		
기타가구원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76.4	85.2			116.9	124.0			148.0	159.5		
조정소비지출	59.6	67.0			82.3	85.2			102.5	99.0		
가계수지	16.7	18.2			34.6	38.8			45.5	60.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7	32			28	21			30	18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18	223			157	126			151	90		

주 : 1)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소비함수의 특성상 표본수가 적을 경우 소비함수 추정치의 정밀도가 떨어져 이를 기초로 '조정소비지출' 값을 구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를 얻기 어려움.

자료 : 필자계산

2) 분포 기준

앞에서 논의한 동면가능기간은 각 소득계층별로 소득, 소비지출, 저축보유액, 보유자산규모를 평균하여 얻은 값이다. 따라서 개별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값이라기 보다는 해당 계층의 대표적 가구에 적용될 수 있는 값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곧 같은 제1분위의 저소득층 가구라도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연령 분포가 다르고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면가능기간이 크게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개별 가구별 동면가능기간을 계산해 그 분포도를 살펴봄으로써 대표적 가구의 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보다 상세하고 흥미있는 정보에 접근해보자.

<그림 1-8a>는 저소득층의 동면가능기간을 7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고 <표 1-5a>와 <표 1-5b>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동면가능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흑자가구' 라 함은 가구주의 실직에도 불구하고 가계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동면가능기간을 계측할 수 없는 가구를 지칭한다. 대표적 가구에서는 동 기간이 14개월로 나타났지만 전 저소득층의 60% 정도가 12개월 이하이고 6개월 이하도 38%나 된다는 점이다(부표 1-1, 1-2 참조).

<그림 1-8b>는 동면가능기간이 6개월 이하인 2473(전체의 16.7%)가구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 40%가 전체의 71%를 점하고 있다.

<그림 1-8a> 저소득층의 동면가능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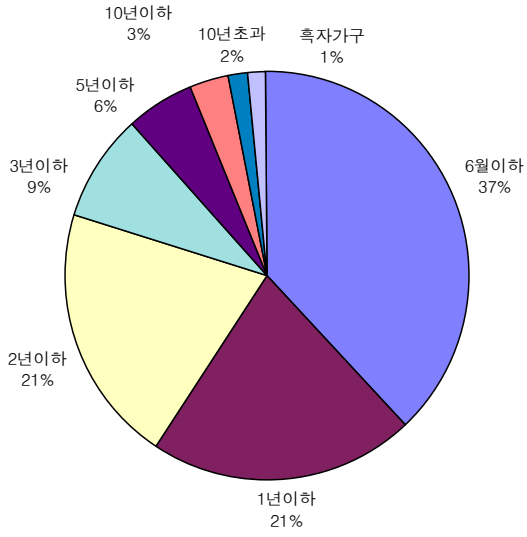

<그림 1-8b> 동면가능기간 6개월의 계층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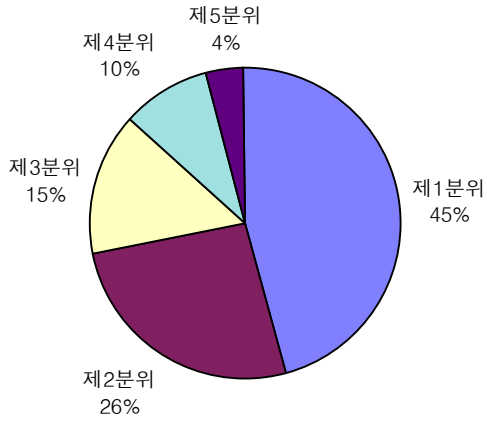

<표 1-5a>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a)

(단위 : %)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전체
6월 이하	38.1	21.8	12.4	8.0	3.2	16.7
1년 이하	21.1	21.3	16.6	12.6	7.1	15.7
2년 이하	20.5	25.5	24.4	22.1	12.9	21.1
3년 이하	8.7	11.8	14.3	14.5	9.4	11.7
5년 이하	5.5	9.2	11.1	13.3	10.7	10.0
10년 이하	3.0	5.5	7.7	8.5	10.7	7.1
10년 초과	1.7	2.4	4.7	6.9	12.1	5.6
흑자 가구	1.4	2.6	8.8	14.1	33.9	12.1
(가구수)	100(2960)	100(2960)	100(2960)	100(2960)	100(2957)	100(14797)

주 : 월소득기준. '동면가능기간'은 가구주 실직시 저축보유액으로 견뎌내는 기간.

자료 : 필자 계산

<표 1-5b>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b)

(단위 : %)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가구수)
6월 이하	45.6	26.1	14.8	9.5	3.9	100(2473)
1년 이하	26.9	27.1	21.1	16.0	9.0	100(2327)
2년 이하	19.4	24.2	23.2	21.0	12.3	100(3118)
3년 이하	14.9	20.0	24.4	24.7	16.0	100(1736)
5년 이하	11.1	18.5	22.3	26.7	21.3	100(1477)
10년 이하	8.4	15.5	21.8	24.2	30.2	100(1047)
10년 초과	6.0	8.5	17.0	24.8	43.7	100(822)
흑자 가구	2.3	4.2	14.4	23.3	55.8	100(1797)
(가구수)	20(2960)	20(2960)	20(2960)	20(2960)	20(2957)	100(14797)

동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저소득층은 저축보유액이 103만원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전체 평균의 17.4%에 불과하고 6개월 초과 1년 이하 계층도 370만원으로 평균의 62.5%에 머물고 있다. 저소득층 중 동면기간이 긴 그룹은 저축보유액이 많은 이들이지만 동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가구는 저소득층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는다(표 1-6 참조). 가구간의 편차는 저축보유액이 보유자산보다 크고,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더 크게 나온다. 소비지출의 편차가 소득보다 큰 것은 소비지출 자료가 년평균 자료가 아닌 2월간의 자료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1-6> 저소득층의 동면가능기간 분포와 소득·자산 실태

(단위 : %, 만원)

	기간분포(%)	저축보유액	보유자산	월소득	월소비지출	기간분포(%,전체)
6월 이하	38.1	103(0.862)	2829(0.916)	71(0.295)	61(0.526)	16.7
1년 이하	21.1	370(0.386)	3386(0.848)	77(0.244)	61(0.536)	15.7
2년 이하	20.5	696(0.369)	3881(0.729)	81(0.224)	66(0.565)	21.1
3년 이하	8.7	1123(0.393)	4438(0.637)	81(0.223)	66(0.526)	11.7
5년 이하	5.5	1527(0.418)	4603(0.581)	79(0.249)	65(0.640)	10.0
10년 이하	3.0	2641(0.581)	6783(0.545)	78(0.291)	71(0.602)	7.1
10년 초과	1.7	3620(0.761)	7829(0.553)	81(0.198)	71(0.487)	5.6
흑자 가구	1.4	752(1.194)	4334(0.615)	88(0.180)	56(0.392)	12.1
평균	100(2960가구)	592(1.432)	3622(0.819)	76(0.263)	63(0.548)	100(14797가구)

주 : 월소득기준. 괄호안은 변이계수.
자료 : 필자 계산

나. 하위 20% 계층의 가구유형별 구성

제1분위내에서 특히 경제력이 약한 그룹은 노인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제1분위는 8.3%의 노인가구, 4.9%의 모자가구, 4.8%의 맞벌이가구, 82.0%의 일반가구로 구성된다. 가구별로 보면 노인가구가 전 노인가구의 76.9%, 모자가구는 전 모자가구의 55.4%, 맞벌이가구는 전 맞벌이가구의 3.5%, 일반가구는 전 일반가구의 23.9%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실업에 따른 파급 효과는 경제력과 상이한 양상을 보여 모자가구, 일반가구, 노인가구, 맞벌이가구 순으로 약해진다. 즉 저축보유액에 의한 동면가능기간은 맞벌이가구(18월)를 제외하면 노인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는 14월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표 1-7> 저소득층의 가구유형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단위 : %)

	저소득층 기간분포				
	전 저소득층	일반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6월 이하	38.1	37.5(30.7)	35.2(1.7)	44.1(3.7)	44.4(2.2)
1년 이하	21.1	21.2(17.4)	16.2(0.8)	20.2(1.7)	25.0(1.2)
2년 이하	20.5	22.3(18.3)	14.1(0.7)	15.4(1.3)	17.4(0.8)
3년 이하	8.7	8.9(7.2)	7.0(0.3)	6.9(0.6)	4.2(0.2)
5년 이하	5.5	5.7(4.7)	7.7(0.4)	5.3(0.4)	3.5(0.2)
10년 이하	3.0	2.4(2.0)	4.2(0.2)	3.2(0.3)	2.8(0.1)
10년 초과	1.7	1.3(1.0)	6.3(0.3)	1.2(0.1)	2.8(0.1)
흑자 가구	1.4	0.9(0.7)	9.2(0.4)	3.6(0.3)	0
합계 (가구수)	100 (2960)	100(82.0) (2427)	100(4.8) (142)	100(8.3) (247)	100(4.9) (144)

주 : 월소득기준. 괄호안은 저소득층 2960가구에 대한 비율.
자료 : 필자 계산

여기서도 개별가구의 동면가능기간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동 기간이 6월 이하는 모자가구와 노인가구가 44%로 일반가구의 38%에 비해 높고, 1년 이하인 가구도 모자가구 69%, 노인가구 64%로 일반가구의 59%에 비해 다소 높다. 또 동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가구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가구는 맞벌이가구가 16%, 노인가구가 5%로 일반가구(3%)나 모자가구(3%)에 비해 높다.

<부표 1-3>에서 보듯 동면기간의 장단은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축보유액의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 낮은 소득 수준에서 동면기간이 더 길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6. 기혼여성의 실업과 저소득층내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고학력 배우자 중심으로 '자아실현파' 맞벌이가구가 늘면서 맞벌이가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가구주 수입이 클수록 배우자의 취업률이 낮다'는 더글러스·아리사와 법칙에서 유추되듯, 맞벌이는 가구주 소득만으로 가계를 꾸리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가구주 소득만을 비교하면 그동안 맞벌이가구의 가구주 소득이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해 왔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 연령별 직종별·연령별·남녀별 임금 격차가 줄면서 가구주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

들고 배우자의 취업소득이 맞벌이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그림 1-9>은 맞벌이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력 우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림 1-10>는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업시의 경제력이 일반가구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30대 미만과 60대 이상 제외).

그러나 저소득층 맞벌이가구로 한정하면 배우자 실업은 일반가구와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경제력 열위로 연결된다. 제1분위로 한정하면 맞벌이가구의 일반가구에 대한 경제력(월소득) 우위는 9.6%이지만 배우자 실업에 따른 경제력 열위는 29.8%에 달한다(표 1-4 참조). 제2분위에서는 맞벌이가구의 경제력 우위가 2.0%인 반면 배우자 실업에 따른 경제력 열위는 29.7%로 제1분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즉 '맞벌이가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늘리는' 현상이 하위 40% 계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저소득층에서 맞벌이 가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30대 미만의 고졸-고하, 고하-고하, 고하-고졸 부부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업으로 일반가구와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다(부표 1-4 참조). 이는 이 연령대 남녀의 임금 격차 축소, 높은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중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학력의 부부라도 30대, 40대, 50대에서는 맞벌이가 양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벌린다. 맞벌이에 따른 경제력 격차는 최대 기준으로 30대 미만 31%, 30대 39%, 40대 29%, 50대 56%인데 배우자 실업시의 경제력 열위는 30대 미만의 30%를 제외하면 30대 4%, 40대 11%, 50대 8%로 낮다.

<그림 1-9> 맞벌이가구의 일반가구에 대한 경제력 우위

(연령별·부부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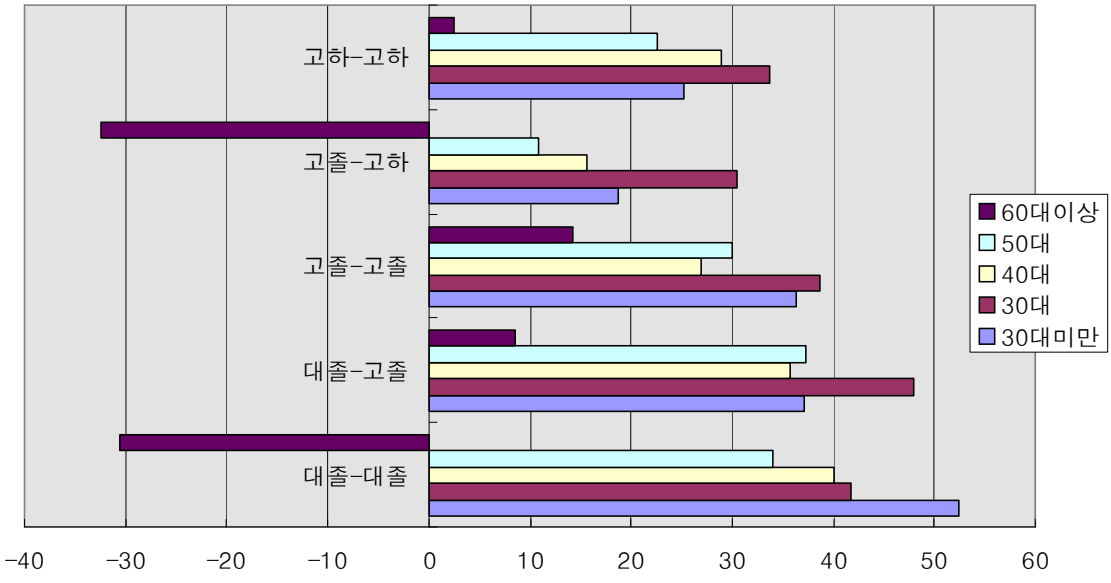

주 : (맞벌이가구의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100

<그림 1-10> 맞벌이가구의 일반가구에 대한 경제력 열위(배우자 실직시)

(연령별·부부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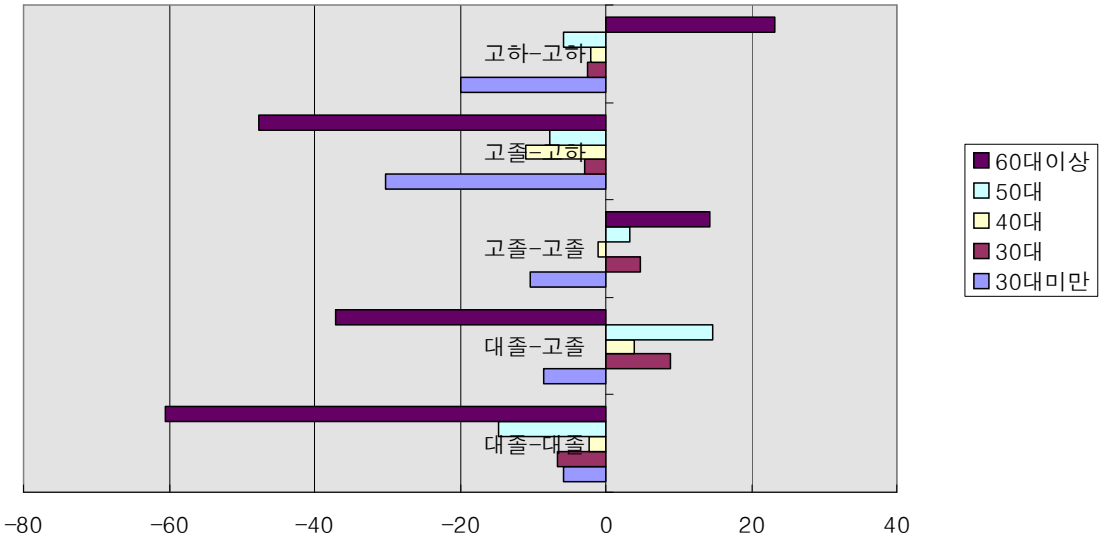

주 : (맞벌이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100

Ⅳ. 가구 속성에 따른 실업 취약 계층의 파악

앞 절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고용조정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같은 실업자라도 저소득층 가계가 입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동면가능기간' 이라는 계량적 지표의 상대 비교를 통해 밝혔다. 덧붙여 최근 진행중인 일련의 대규모 실업 사태로 '근로기에 두 계층간에 존재하던 경제력 격차가 실업과 재취업 과정을 통해 한층 증폭되는'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수준과 보유자산외에 다른 속성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 가령 해당 가구의 취업인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유형, 가구구분, 거주지역, 종사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의 분석 결과 실업에 따른 '동면가능 기간'이 짧은 계층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별로 없는 20대 미만이나 20대의 가구주 단독 취업가구로, 소득수준이 낮아 저축보유액이 별로 없고, 실업시 퇴직금과 각종 위로금 수령액 마저 없거나 미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사업장 근로자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경남, 충남,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가구 속성별로 실업에 취약한 가구의 속성과 파급효과를 정리해보자. 취업인원 1인 가구가 가장 취약하지만 취업인원이 2인인 가구(전체 대상가구의 39.7%)인 가구도 가구주 실업의 타격은 작지 않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 가장 취약하고 30대와 40대 역시 취약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최근 실업이 급증하는 30대 미만과 50대의 경우 실업이 가구에 안겨주는 파급효과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대 미만을 제외하면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실업에도 불구하고 일반가구를 약간 밑도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외반가구보다 41.6%나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가구에서 배우자소득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26.6%이므로 배우자 실업으로 가계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업으로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는 확대되기보다 축소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취약 가구로 알려진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은 뜻밖이다. 아마도 이들 가구의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또 노인가구가 모자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근간 경제력이 약한 '독립 노인'의 대폭적인 증가와 취업여성의 대우 향상으로 모자가구의 경제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가구는 회사원가구보다 소득, 저축보유액, 보유자산이 각각 16.0%, 19.0%, 4.4% 높다. 일부 연구[10]에서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에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공무원이 일생소득 차원에서 검토하면 회사원보다 높다고 지적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일부 표본가구를 고려해 기대 생애소득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고는 표본 대표성이 높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의 정년이 5년 이상 길고 퇴직후 연금이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기 급여만의 비교에서 이같은 결과가 얻어진 사실이다.

'동면가능 기간'은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가 가장 짧고, 회사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 가구가 그 다음이며, 공무원가구가 가장 길다. 이는 공무원가구의 소득이 높고 저축보유액이 클 뿐아니라,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회사원가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등이 위험지역이며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다소 여유가 있다. 농업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지만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실업 위험도 낮다. 반면 실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의 경우 배우자 취업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낮은 반면 기타가구원 취업에 의한 가구소득 기여도가 높다.

저소득층과 가장 대조를 보이는 계층의 하나가 교원사회이다. 교원부문은 작금의 구조조정에서 무풍지대로 남아 정년 이전에 학교를 떠나는 이들이 소수에 머물고 있다. 교원가구는 소득, 저축보유액, 보유자산에서 근로자가구의 상층부이다. 분석대상인 교원가구는 조사대상 근로자 14,794 가구의 4.1%인 612가구로, 월평균 소득(271.0만원)은 근로자가구 평균(179.6만원)보다 50.9%가 높다. 곧 교원가구의 다수가 최고소득층인 제5분위에 속하는 것은 제5분위 평균소득(325.8만원)과 제4분위 평균소득(209.8만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맞벌이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취업한 교원가구는 평균소득이 335.2만원으로 거의 전원이 제5분위에 속한다.

교원 사회에 조기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어 가구주나 배우자인 교원이 실업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40대가 가구주 실업에 따른 파급효과를 가장 크게 받지만 동면가능기간(41월)은 근로자가구 평균(34월)보다 높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이 기간(42월, 54월)이 40대보다 크지만 근로자가구 평균(79월, 116월)보다 낮다. 교원가구의 소비지출이 근로자 평균보다 높아 가계수지 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다[11]. 맞벌이 교원가구의 경제력은 단연 세어 가구주 실업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이는 것은 배우자 취업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30.8%로 크지만 흑자율이 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동면가능기간(각각 34월, 39월)은 맞벌이가구보다

훨씬 짧다. 교원가구에서는 노인가구가 모자가구에 비해 경제력이 높아 전체 근로자가구의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 거주 교원가구는 다른 지역 교원가구보다 소득은 16.0% 높고, 저축보유액은 광역시보다 40.6%, 도보다 60.1% 높다. 보유자산은 서울이 광역시보다 81.1%, 도보다 105.5%가 더 높다. 이로 인해 서울 가구주 실업시의 동면가능기간(69월)은 도(45월), 광역시(46월)보다 월등히 높다.

1인 취업 교원가구의 동면가능기간(30월)은 2인 취업가구(91월)보다 훨씬 짧다. 2인 취업가구가 배우자 실업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이는 것은 배우자 취업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19.4%로 낮기 때문이다. 기타가구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2%에 불과하다.

Ⅴ. 고실업률 시대의 정부재정의 역할

실업률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일자리의 유지와 일자리의 신규 마련, 실직 기간중의 실업자 생계 지원, 장기실직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으로, 지원 대상에는 실직자와 노동수요자인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두 부처외에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건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실업대책의 기획 및 집행부처로 참가하고 있다.

실업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과제로 간주되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거나 보조해주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거시경제의 운영 목표인 성장률, 인플레, 자본시장의 수급, 환율 등과 연계시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실업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지방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시각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무시못할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는 노동부, 행자부 및 관계 부처의 실업대책을 집행하는 일선 부서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 계획하에 내부 예산으로 지역내 실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하에서는 실업대책의 기본 흐름을 조망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실업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이 갖추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오늘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통상의 마찰적실업외에 기업·금융기관 등의 민간 부문과 정부조직·공기업 등의 정부부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 실업까지 겹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준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려깊은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 1998년도 정부 당국의 실업 대책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은 고용수준의 유지, 실직자의 생활 유지 및 취업 촉진, 그리고 긴급 구호 성격의 각종 취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요 예산은 일반회계 자금의 전용과 신규 편성, 공무원 급여 삭감,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장기채 발행과 외자 도입 등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1998년 8월 기준 지출 측면은 당초의 계획에 따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세입측면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장기채 발행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업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 계획사업을 집행하면서 중앙정부 배정 예산에 자치단체 예산을 일정부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이를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자치체의 재정여력이 약해 효과있는 실업대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다른 자치체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이 많고 예산 규모도 커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실업대책 사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방세수의 격감으로 세입이 당초 계획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이후 효과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 중앙정부의 실업대책 : 기본방향과 핵심 내용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 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업자의 노동력 및 노동의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책이며, 셋째는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노동시장 관행 정비를 통한 취업알선 증대책이다.

중앙정부는 4월-7월 기간중 2조 6천 6백12억원을 실업대책 예산으로 투입하였다. 사업별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제공이 9천6백42억원(36.2%), 고용유지 지원이 8천99억원(30.4%), 실업자 생활보호 지원이 5천7백32억원(21.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3천1백39억원(11.8%) 등이다.

8월-12월 기간중에는 늘어난 실업자를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늘려 7조5천1백7억원으로 잡았다. 사업별 내역은 일자리 제공 56.3%, 고용유지 지원 15.4%, 실업자 생활보호 20.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7.8%로, 상반기에 비해 고용유지 지원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예산이 줄고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1)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은 1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기업의 고용수준 유지를 지원하

고 있다.

2) 실업자의 노동력 및 노동의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책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그동안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고 1998년 7월 1일 이후 10인-29인 사업장, 9월 1일 이후 5인-9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1999년 4월 1일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이들의 상당수는 특별연장 급여를 포함해도 수급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생계유지 가능한 급여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실업급여 수령자는 실업자중 일부로 1998년 9월 1일 기준, 총 인정실업자 144.6만명 중 실업급여 적용대상은 28.4만명으로 인정실업자의 19.6%에 불과하며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4천2백70억원이다.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150.4만원이다. 노동부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162.2만원으로 평균보다 8% 높고, 대구 149.3만원, 경인 147.9만원, 부산 147.0만원, 대전 141.4만원, 광주 134.2만원 순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당국은 적용대상을 1998년 1월에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3월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10월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7월 15일부터 지급기간을 두 달 연장하였다. 제도 확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고용보험의 운영은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연결 조치로 정부가 사업주 납부분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의 긴급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외의 자, 실업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 소진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법에는 생활보호, 공공근로, 실업자 대부제도 등 '보조 안전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극빈층의 보호망인 '생활보호' 제도는 최근의 실업 사태와 관련성은 약하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가 장기실업자로 남아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면 긴급구호비 성격의 지원이 고려될 수 있고, 이 때 생활보호 제도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전인구의 3.3%(약 150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활보호가 2/3를 점하고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는 1/3에 불과하다. 장기실업자의 대량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상당수의 실업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1998년 5월 이후 공공근로사업이 대규모로 전개되면서 8개 분야에서 20여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은 효율성보다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 지급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의 자활보호와 맥을 같

이한다. 추진실적은 다른 제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5월말 기준 7.5만명에게 1,380억원을 지출하여 연간 목표의 27.8%와 25.5%를 달성하는 등 상반기 3개월사이에 연간 목표인 5천1백19억원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였다. 8월부터 시작하는 4개월간의 제2차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연간목표를 넘어서는 사업비 지출이 계획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예산은 공무원 급여 삭감분 1조 1천 1백19억원의 46%로 국비가 2천8백59억원, 지방비 2천2백60억원이다.

소규모 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실업자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월말 기준 목표 2조 8백억원의 25.2%(5,252억원)에 머무른 것은 고용안정채권의 소화가 부진하기(목표의 8.5%) 때문이다. 이후 고용안정채권은 4개월에 걸쳐 8천7백3십억원 어치가 팔렸다[12].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한다. 공공투자 사업중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로 1조원의 신규 투자시 약 3만 1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제조업(2만 8천명), 농림수산업(1만 8천명)보다 크다.

3)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노동시장 관행 정비를 통한 취업알선 증대책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직업훈련은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과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은 1998년도 목표가 8.8만명에 4,133억원인데 비해 실적은 5월말 기준 3.0%(2,600명)와 1.0%(40억원)에 불과하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목표치인 25.1만명과 3,586억원의 46.0%(11.5만명)와 25.1%(900억원)로 순조로운 진도를 보이고 있다. 재직자 고용유지 훈련이 저조한 것은 기업의 업황이 좋지 못고 사업주의 이해부족때문일 것이다.

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여전히 경직적이어서 노사간에 신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고 노조의 저항으로 합법적인 정리해고 조차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신규 대졸자가 실업자군으로 대거 편입되는 등 실직자 계층의 속성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턴사원제의 활성화 등 기존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어 나가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나. 지방정부의 실업대책 : 서울시 사례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서는 예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단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실업자의 1/4 정도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자체 예산으로 상당수준의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서울시의 실업대책도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에 준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업자의 노동력 및 노동의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책이며, 셋째는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노동시장 관행 정비를 통한 취업알선 증대책이다.

첫번째 대책으로 고용안정 도모사업(5개), 두번째 대책으로 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16개), 실직기간중의 생활보호 강화(9개), 사회안정 대책(2개)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세번째 대책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시행(6개)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좁은 의미의 실업대책 사업외에 서울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공사장 가령 상수도 및 지하철 공사장, 공원조성 사업 공사장 등의 인력 사용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것까지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고용안정 도모사업 11개, 실직기간중의 생활보호 강화 12개, 사회안정대책 4개,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시행이 11개로 늘어 5개분야 54개 사업으로 좁은 의미의 실업대책에 비해 16개 사업이 더 많다.

서울시의 실업대책 예산은 4천2백80억원인데 자체예산이 3천8백80억원(90.7%), 국비가 304억원(7.1%), 자치구 예산이 96억원(2.2%)이다. 사업별 예산은 고용안정 도모가 2천7백78억원(64.9%), 실업자 취업기회 확대 2백38억원(5.6%), 실직기간중 생활보호 강화 1천98억원(25.7%), 사회안정 대책 강구가 1백16억원(2.7%),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시행이 51억원(1.2%) 이다(그림 9, 그림 1-11 참조).

서울시는 1998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상 처음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연초계획했던 규모보다 1조5천6백억원 가량 줄어든 8조3천3백억원으로 편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건설 및 도로 개설·확장 등 각종 공사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고 서울시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실업대책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명확하다.

1)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수준 유지

서울시의 고용안정 사업(11개 사업) 예산은 고용유지보조금을 이용한 중앙정부의 '이전' 정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의 '융자'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천7백50억원을 마련해 운전자금으로 1천9백50억원, 시설자금 8백만원을 배정하고 운

<그림 11> 서울시 실업대책별 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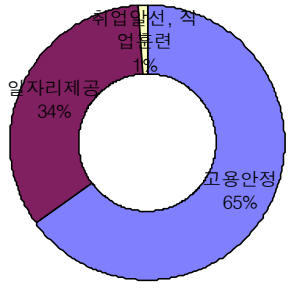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시 실업예산의 조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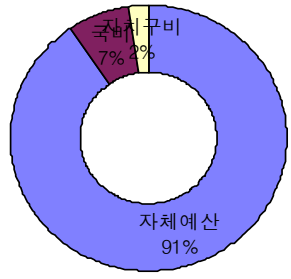

전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추진실적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밖에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설계 변경 관련 개산급 지급,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의 선급금 지급율 상향조정,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기업창원 지원 확대에 나서 서울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중랑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협의의 실업대책에 의한 고용안정 사업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인 315개 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 1조 7천7백2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 실업자의 노동력 및 노동의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책

실업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2백억원(국비 23.8% 시비 45.6%, 자치구비 30.7%)과 시 자체사업 37억원의 237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공공공사장 가령 지하철공사장, 상수도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취업기회 확대가 계획되고 있다.

실업자 생활보호책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를 선정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이들의 자녀학비를 지원한다. 긴급구호비로 1인 6만원(5인 가구 30만원 이내)을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의 전개와 진료비와 아동보육료 감면외에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을 융자해준다.

사회안정책의 하나로 노숙자 보호를 위해 무료 급식, 잠자리, 무료 진료, 상담 서비스를제공하고, 근로자 합숙소를 설치하여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토록 하고 있다.

3)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노동시장 관행 정비를 통한 취업알선 증대책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은 195개 기관에서 4만6천명을 교육, 훈련시킬 계획이며 추진 실적도 비교적 양호하다. 취업알선은 공공부문 560개소(서울시 5개소, 자치구 555개소)와 민간부문 728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소요예산 51억원은 서울시 실업예산의 1.2%로 규모가 가장 작고, 중앙정부 실업예산의 이 부문 비중(11.2%)과 비교해도 훨씬 낮다.

2.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실업자들의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조치들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이 고려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가. 중앙정부의 실업대책

1)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하반기 실업대책에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다. 고용유지보조금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16개 사업이 지원대상인데 지원조건과 지원수준이 다르고, 활용

하는데 장애요인이 많아 활용도가 낮다.

4월-7월 기간중 지원실적은 8천99억원으로 전체 실업대책 예산의 30.4%를 점해 당초 기대를 밑돌았는데, 하반기에는 15.4%로 더욱 낮아졌다. 특히 '휴업수당지원금'이 전체의 대부분을 점해 근로시간 단축과 훈련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의 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휴업수당지원금의 경우 1998년 8월말 기준 2,792사업장, 56.3만명으로 고용유지보조금 전체 이용실적의 82.0%에 달하고 있다.

고용유지보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책을 4개 정도로 줄이고 지원요건도 간소화시키며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이용률을 높인다.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고용촉진지원금의 4가지로 줄이고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른 다단계(1/30에서 1/2) 지원체계도 간소화하고 지원규모를 높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와 더불어 노동부 지방사무소 요원 및 자치체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고용용안정 담당자 혹은 기관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업체를 찾아내 사업주와 면담하고 설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의 활동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근속자를 해고하기 보다 고용 조건을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바꾸어 부담을 줄이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즉 고용유지보조금 제도를 소개하면서 사업주측을 설득한다.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중앙정부의 고용유지보조금 제도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전 근로자의 2할 정도에 육박할지 모를 최대 실업자수를 1할 정도로 억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IMF 이전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가 실업자로 배출될 전망인바, 이를 1명 선으로 줄이는 대신 잔류자 9명 중 2명을 계약직 등 신축적인 고용으로 전환하고 7명의 잔류 정규직의 급여를 생산성에 맞게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2) 실업자의 노동력 및 노동의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책

고용보험을 1998년 중 파격적인 속도로 확대 적용해왔고 앞으로도 적용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제도가 확장되면서 향후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 1998년 중에 추진된 일련의 적용확대 조치로 보험재정에 일방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있고, 도입 초기의

보험료 대납 등의 파격적 조치를 경험한 민간 기업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대된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낼 지 불분명하다.

1998년 10월부터 곧 적용예정인 5인-9인 사업장에 대한 확대 조치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천한 고용보험의 정착이 어려워지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99년 중에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지만[13] 불황하에 제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요컨대 1998년, 1999년의 두 해에 걸쳐 전개될 심각한 실업사태와 그에 따른 실업자 생계대책 수단으로는 고용보험의 확장보다 긴급피난을 위한 지원책 등으로 해결하고, 고용보험의 확장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퇴직자들과 같이 경제력이 있는 실업자들은 높은 퇴직금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각종 위로금을 지급받고 실업 기간중 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까지 지급받아 소득불공평을 조장한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사업장 퇴직자들은 위로금은 커녕 퇴직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실업후 실업급여 수령자도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퇴직시 퇴직금(위로금 포함)이 일정 금액(1억원)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퇴직 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직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지급 제한의 근거는 명확하지 못하다.

실업급여 미지급자, 실업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 소진자, 장기실업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든 생활보호, 공공근로, 실업자 대부제도 등의 '보조 안전망' 제도가 당초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 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의 발족후 일천하므로 위에서 열거한 '보조 안전망' 조치들이 실업급여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1998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지 못했다. 1998년 하반기 이후 장기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조안전망 제도를 폭넓게 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생활보호 중 '자활보호'의 경우 월소득 23만원, 보유재산 2,900만원을 각각 20%와 50% 정도 늘려 28만원과 4,4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면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220만명선으로 늘어난다. 현 자활보호대상 가구의 절반 정도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이들을 거택보호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보호'를 명실상부한 제도로 만든다.

공공근로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기존의 영세민 취로사업과 그 성격이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는 점이다. 또 연간 참여해도 근로기간이 7개월 정도이므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건설업 등의 임

시·일용직들이 장기실업자화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수준을 넘는 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금이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근로사업 참여 조건 중 구직활동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부양책임자 여부와 저소득층 요건을 강화한다.

공공근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별 노임수준의 차등화, 고용효과가 높고 사회기반 형성 통한 장기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사업에의 집중 투자, 추진주체인 지자체 및 비정부기구(NGO)에의 사업집행상의 자율권 부여, 추진 주체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근로사업의 개발과 관리에서 NGO 등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참가자의 자발적인 의욕을 끌어내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킨다.

창업을 위한 실업자 대부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높을 뿐아니라 실업자의 자활 노력을 지원해주지만 현실의 실업자 대부 자금의 주된 용도는 생계비와 주택자금 조달이다. 창업을 위한 실업자 대부자금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해준다. 대출채권의 부실율이 높다 하더라도 같은 자금을 생활보호 지원 비용 등으로 지출한 때에 비해 훨씬 높은 산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벤처 여부, 창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여부, 실업자 창업과 일반 창업의 여부 등을 구분하지 말고 고용창출효과에 주목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지원보다 민간 벤처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순리이다. 창업지원과 관련한 금융 지원외에 세제상 지원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자 대부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제2의 고용안정채권의 판매 등을 통해 추가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도 내부적으로는 고용창출효과와 성장잠재력 배양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사업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공근로사업을 연계시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일 것이다.

3)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노동시장 관행 정비를 통한 취업알선 증대책

실업자 직업훈련은 진척도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내용이 문제시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지출액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훈련 이수자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훈련 과정이 현장 수요를 무시한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편성되거나 필요 이상의 난이도를 지녀 수강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실업자, 대졸 실업자, 기술직 실업자, 금융기관 실업자 등 상위층 근로자의 실업자나 일용근로자, 청소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훈

련과 취업알선의 연계도가 약해 훈련 따로, 취업알선 따로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재편성하고, 수강자 지원기준을 단일화하며, 훈련 내용을 현장의 실수요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낭비적인 교육훈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영리법인의 직업훈련 사업에의 참여를 허용하여 인력개발사업을 육성하고 직업훈련기간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직업 훈련의 효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자와 노동수요자간의 연계를 높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 점에서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자인 기관이 훈련이수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과 자본과 인력 면에서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해당 기업이 자체 훈련기관 배출생의 일부를 받아들이면 이들 훈련생의 고용분에 대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한다.

행정사무직, 교원직 등의 화이트칼라층의 정년이 길어 대졸 등 신규 졸업자들의 일자리가 제약받아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층에 조기퇴직제를 도입하고, 조기퇴직자에게는 본인 희망시 해당 직장에서 시간제 근로 등 신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정수준의 복지 제도 적용을 보장한다.

조기퇴직제는 블루칼라와 일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직과 교원직 등 많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가령(加齡)에 따라 숙련도가 증가하기 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임금이 생산성을 웃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조기퇴직제는 노동시장내의 내부자-외부자간 갈등을 해소시키는 장점도 지닌다.

임시직, 시간제, 재택근무형, 인턴 사원, 능률 급여, 연봉제, 비노조원 근로자 등과 같은 유연성있는 고용패턴과 노동시장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해 실업의 장기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대량 발생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범죄 발생을 가속시킨다.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 비율을 '장기실업률'이라고 할 때, 미국·일본은 20% 이하, 프랑스·영국·독일은 40% 전후, 아일랜드·벨기에는 60% 전후 수준이다.

장기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적 요소를 철폐하여 입직과 이직에 따른 공급자측 비용과 채용에 따른 수요자측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 결과 위에 열거한 제도 등이 도입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마찰적 실업 기간이 줄고 구조적 실업형 실업자의 재취업이 촉진될 수 있다.

나. 지방정부의 실업대책 : 서울시 사례

여기서 서울시의 실업대책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먼저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실업대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14]을 기술하는 형태를 취한다.

서울시 실업대책 예산을 좁게 보아 4천2백80억원이라고 하면 추경에서 확정된 일반회계 예산규모 8조3천3백억원 대비 5.1%이며, 서울시 자체예산 3천8백80억원만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4.7%로 줄어든다. 게다가 실업대책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특별회계 자금이므로 실업예산의 전체 예산대비 규모는 이들 숫치보다 작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곧 아직은 실업대책 예산이 서울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마저 제 때 확보될지 불확실하다. 1998년 들어 세수입이 크게 떨어지면서 9월초 확정된 추경예산에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이 16%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실업대책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칠 경우 실업자의 급증에 따른 실업예산의 확대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즉 특별회계로 파악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부족하고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재원조달 측면의 제약으로 서울시가 실업대책 예산을 연초 계획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모른다.

추진되고 있는 실업대책 사업의 기본 성격이 복지지출형 단기 실업대책이라는 점이다. 외형상 고용유지 부문에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부문 예산이 '이전'이 아닌 '융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실업대책은 실직자 생계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복지지출형 실업대책의 측면이 강하다.

장기실업자의 증가와 고실업률 시대가 예상되고 있는바, 실업대책을 단기대책과 더불어 장기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장기대책이라 함은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신축적인 고용계약의 허용 등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관행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칭한다.

단기, 장기 실업대책을 세워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실업대책 조직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실업대책 사업을 올리고 이를 취합하여 시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정이 추구하는 중장기 투자계획과 국가 차원의 경기대책이 연계된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추진되기 어렵다.

현 실업대책상황실은 각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기획되고 집행, 감독되어 전체 시정 차원에서의 정책목표 및 거시경제 목표와의 연계성이 약하다. 이 점은 중앙

정부와 그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 또 일선의 25개 구청에 설립된 취업정보센터도 구청내 다른 부서 및 시청의 실업대책상황실과 업무협조가 약해 실업대책기구로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대책반을 '실업대책총괄반'으로 재편하여 이 조직에 시청 및 자치구의 요원들을 파견하여 실업대책을 기획하고 조정, 지휘하는 총괄 책임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청의 실업대책상황실, 자치구의 취업정보센터, 동사무소의 취업알선센터 등 전담부서에 우수한 전문직 공무원이 배속되어 있지 못하다. 본청의 경우 근무자가 최근의 전개되는 상황에 밝은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치구와 동사무소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이 배속되는 등 전문성 부족 외에 일선창구 담당의 서비스 정신마저 결여되어 실업대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청의 경우 실업대책 담당자로 우수한 전문직 공무원을 일정수 배속시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자치구와 동사무소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선발하여 구직자의 취업 문의와 이들의 취업알선에 매진토록 한다.

1)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수준 유지

고용수준 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기업의 상환부담을 수반하는 융자라는 점과 거치 및 상환기간이 짧아 지원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나마 융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여유가 있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재원확보에 힘써 지원규모를 좀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융자 조건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기업창업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기타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은 지원 효과가 작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대책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상의 숫치를 조금씩 손보아 금전적인 지원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원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업자의 노동력 및 노동의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보호책

제1차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3개월(5.2-8.14)에 걸쳐 신청자의 72.6%인 9천4백6명이 선발되어 하루 평균 3천7백70명이 참가하여 1백50억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단순노무위주이므로 기존 미취업자의 부업거리로 간주되어 고용창출보다는 실업보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다. 제1차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중 가정주부가 35%, 50세 이상이 45%로 나타나 실업자 지원보다 기존 미취업자의 부업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또 참여한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이 오히려 상실되거나 담당공무원에 의한 업무 감독이 어려운 점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선책으로 이른바 3D 업종의 사업에 실직자를 투입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지원하여 노동공급이 생산적 산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덧붙여 최저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등의 바터제 도입을 검토한다.

실업자 대부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생계비와 주택자금 지원에 집중되고 창업 등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아주 낮다. 창업 의사가 명확하고 여건을 갖춘 실업자를 선별하여, 융자한도를 크게 늘려 실질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업자의 일부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로 지정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은 긴급지원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또 하나의 생활보호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평균적인 참여자들이 얻는 월소득 60만원 정도는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지급받는 월지원금 50만원 이하(∵ 월 4만원 미만 소득과 6인이상 가구에서 최대 52만원)와 자활보호대상자들의 근로소득(취로사업에 참여해 하루 1만7천원, 가구당 월 12일 이내)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된다[15].

3)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노동시장 관행 정비를 통한 취업알선 증대책

직업훈련의 경우 지출된 예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직업훈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 훈련 사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잘 분석하여 직종별로 수요가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전문기술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을 늘려서라도 인력수요에 부응토록 한다. 교육내용과 취업간의 연계 기능 강화가 필요함은 중앙정부의 실업대책과 마찬가지이다.

취업알선의 경우 민간부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공공부문의 취업알선율이 민간의 취업알선율보다 크게 낮으며, 일용직 근로자를 냉대하는 구직등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인력은행 이외의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담당자를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공공부문 시설중 가장 숫자가 많은 동사무소의 취약한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직원 중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선발,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또 실직자의 다수를 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구직 등록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노동부 전산망의 구직시스템상의 문제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구직 등록이 필요한 공공근로사업 취로, 생활보호대상자 등록, 실업자 대부사업을 통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금의 대출, 일자리 소개 등에서 문전 퇫짜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법정수준보다 높은 10%에 달하고 교통비, 식비까지 자비부담이므로 부담이 크다.

Ⅵ. 결론 : 실업대책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 확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곧잘 거론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나 지역내총생산(GRDP),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이다. 최근 지역별 실업률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실업률 수준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유력한 변수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이상의 세 지표는 엄밀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표 1-1)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움직인다. 실업률이 높아져 생산량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최근의 실업자 증가는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경제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중앙정부가 때로 지나치다고 여겨질 정도의 파격적인 실업대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량 실업시대의 문턱을 갓 들어선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실업자수가 좀더 늘어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내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계유지, 취업알선 문제가 빅이슈로 부각되면서 자체 재정수요를 동반한 실업자 대비책이 요구될 것이다. 사실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거시경제적 과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전체 실업대책비의 어느 정도까지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때 주목해야 할 변수 중에 앞에서 얘기한 세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 근로자소득, 1인당 GRDP이 모두 낮은 지방정부라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세 지표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부담능력을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 지표 모두 지역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플로우' 지표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실업에 따른 지역경제난을 고려할 때는 주민들의 보유저축액같은 '스톡' 지표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구주 실업시 근로자가구가 '가계 적자를 저축보유액으로 매꾸어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기간(동면가능기간)'을 계측해 보았다(그림 1-3). 결과는 산업 활동과 상거래가 활발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경남(서울, 인천 제외)에서 짧게 나왔다. 이 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실업대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일견 타당성있어 보이는 주장이 반드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실업대책은 다른 자치체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경우 현재의 실업대책이 적극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실업대책이 서울시 지역에서 돌출나게 추진될 경우, 타자치체 주민이 취업 목적으로 이동해올 가능성이 있다. 통계는 실업자들의 이동후 취업 확률은 80%, 비경제활동인구의 이동후 취업 확률이 40%이며, 농어업종사자(78.9%)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직(51.1%)과 단순노무직(45.2%)의 이동후 취업확률도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6].

지방정부의 실업대책은 자치체의 재정력에 의존하며 이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사례를 놓고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과 실업대책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맞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외에 산업구조, 취업구조, 인구구조의 차이도 자치체별 실업대책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개 자치체가 재정자립도 등 각자의 특성과 제약을 고려하여 실업대책을 강구해야만 지방재정과 실업대책의 정책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서울시 사례는 자치체별 실업대책이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체내 실업자의 생활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문제가 조만간 부각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합의는 물론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경제력이 크게 떨어진 장기실업자들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 복지부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으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17]를 포함하여 생활보호 지원대상을 3배-4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실업대책 마련에서 지방정부가 일정한 몫을 수행해야 할 때가 곧 찾아올 것이다. 가장 앞서 있는 서울시 등도 지역내 실업자 특히 장기실업자 구제와 관련하여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 고조로 중앙정부의 실업대책비가 누적되면 자차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금 못지않게 자체 조달분으로 실업자 구제에 나서야 할 지 모른다. 지역내 실업대책 자금 마련방안으로는 역내 자유업자와 자영업자, 교원, 공무원, 단체 조직원 등 다소 여유있는 계층의 지방채[18] 구입과 기부금 등이 유력한 수단일 수 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채 이자소득의 소득세 경감 조치와 기부금 소득공제액 확대를 검토한다.

이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업대책실을 현재의 부서별 추진사업의 현황을 취합, 정리하는 부서에서 소요 실업대책 예산의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사업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부서로 탈바꿈시킨다.

실업대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책임행정과 자조(自助)행정의 입장보다 지역이기주의에 매달

리거나, 중앙정부가 예산 배분과 집행권을 결정함에 있어 예산에 대한 최종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앙이 책임질 사안과 지방에 넘겨줄 사안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대책 사업과 예산을 배분할 때 책임행정과 자조 행정을 추구하는 자치체에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자치체의 책임행정과 자조행정의 수준을 판단할 경우, 당장의 분배 악화 방지만이 아니라 장래의 효율성 확보까지를 염두에 둔 행정인지에 주목한다[19].

이상의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정부 실업대책반 조직을 재편하여 총리실 산하에 '실업총괄대책반'을 두고, 대책반장을 총리가 맡고 부반장을 노동부 장관이 맡아 노동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시켜 부처별 업무를 총괄, 지휘토록 한다.

향후 실업대책 처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집중 논의되는 세출상의 문제점 못지 않게 지방재정의 고질적 취약점인 지방세 구조와 자금조달 방법 등 세입면의 내재된 문제점[20]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지방재정의 역할 재정립 논의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노동부 『제27회 노동통계연감』 1997, 및 홈페이지 보도자료.

노동부 『98년도 실업 대책』 1998.

노응원 「지역별 소득격차 분석」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 변화와 추이』 제4회 통계의 날 세미나 발표자료, pp.65-103, 1998.

노인철 외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디지털 조선일보, 중앙일보 외.

박대근·이창용 「유동성 제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 변화와 추이』 통계청, 1998, pp. 3-30.

박순일 외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요 분석: 빈곤의 원인, 복지욕구 및 복지제도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배준호 「고실업률시대의 지방재정의 역할」 『IMF체제하에서의 지방재정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재정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1998.

서울시 내부자료 및 홈페이지.

양세정 「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요인」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 변화와 추이』 통계청, 1998, pp. 107-141.

이경원·이상수 『서울시 실업대책 연구(중간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이상용 「IMF와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 운용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세미나 자료, 1998.

이영희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전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자료,1998.

이종훈 「인건비 예산의 효율화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7.

임창호 외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9.

재정경제부 예산청 내부자료, 1998.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 1998 및 홈페이지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99년도 실업대책 방향』 1998. 6.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안내』 1998.

Abel A.B. and B.S. Bernanke, *Macroeconomics,* Addison Wesley, 1992.

Dynarski, M and S. Sheffri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87, pp. 411-28.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Oxford Univ. Press, 일어판 『貧困と人間開發』 國際協力出版會, 1997.

부록 1.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의 축소 조정

1. 최근의 소득감소와 소비지출의 조정

여기서는 근로자가구가 가구주나 배우자 혹은 기타가구원의 실업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지출을 축소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채택한 방법을 기술한다. 본문의 <주 9>에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상세히 서술한다.

소비함수가 소득만의 함수로 결정되는 간단한 소비함수 모형의 추정식 $\ln C = a + b \ln Y$를 고려해보자. 이 때 b 는 소비의 소득탄력치로서,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비가 b% 만큼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상의 추정식을 토대로 소득이 1% 감소할 때 소비가 b % 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가역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소비행태가 소득의 증가와 감소시에 대칭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감소할 때 사람들은 소득 감소에 맞추어 곧바로 소득을 축소 조정하지 못하고 약간만을 줄여 한동안 과거의 소비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항상소득가설'과 '상대소득가설'이라는 이름하에 1950년대의 경제학에 제시되어 사람들의 소비행태가 단기와 장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유력 가설로 인정받아왔다. 이들 가설에서 제시된 주장이 40년이 경과한 오늘날, 그것도 한국에서 여전히 들어맞을지 안맞을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1997년말 이후 발표된 도시가계조사 통계치를 보면 소득 감소 이상으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여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1/4 분기의 도시가계조사 통계는 근로자가구에서 명목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였는데 명목소비지출은 8.8%나 감소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또 1997년 4/4분기에는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고 소비지출이 0.8% 감소했다. 적어도 기존의 주류파 가설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소비지출이 감소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는 소득 감소폭보다 소비지출의 감소폭이 작아야 한다.

87년 이후의 명목소득과 명목소비지출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88년, 89년, 93년, 96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다. 당연히 이상의 네 해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높다. 그러나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높아 소비의 소득탄력치(=한계소비성향/평균소비성향)는 0.9 전후의 값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탄력치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수준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로는 첫째, 최근 10여년간 자산인플레와 고임금의 영향을 받아 가구의 가용 소득이 크게 늘었고 둘째,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와 개인연금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며 셋째, 사교육비 및 개인교통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자산디플레가 진행되고 불황이 가속화되면서 급여 수준이 동결되거나 하향조정되고, 업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를 불문하고 소비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그 간의 '과잉소비'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즉 최근 수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기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속에서 지난 10여년간의 왜곡된 소비지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반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해석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간이 지나면 소비지출의 감소폭은 지금 나타나는 값보다는 상당수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곧 크게 낮춘 소비수준을 조금 상향 조정한 수

준에서 소비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술을 사전 지식으로 하여 본고에서 채택한 소비지출 조정과정을 서술해보자.

2. 본고가 채택한 소득감소시의 소비지출 조정과정

앞에서 기술했듯이 소득이 줄어들면 어떤 형태로든 소비지출을 축소 조정할 것이다. 또 축소 조정의 기본적인 양상은 일시적으로 크게 낮추었다가 일정 시점 이후 상향 조정해 원래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도 기술하였다.

우리가 본고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근로자가구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 혹은 기타가구원이 실업했을 경우 기존의 저축과 보유자산으로 견뎌낼 수 있는 '동면가능 기간'을 계산해냄으로써, 최근의 실업사태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미치는 그룹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소득 감소 초기의 '크게 낮아진' 소비수준보다 이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될 '다소 낮아진' 소비수준을 유추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함수는 종속변수로 소비지출을 택하고, 설명변수는 통상의 변수로 소득과 연령별 가구원수를 사용하고 더미변수로 가구주연령, 가구유형, 가구구분, 거주지역, 가구주산업 등을 이용하고 있다. 즉 소비함수 모형식은 (A 1)식과 같이 된다.

(A 1) $\ln C = f(\ln Y,$ 연령별가구원수$(M_1..M_9)$, 더미변수(가구주연령 D_1, 가구유형 D_2, 가구구분 D_3, 거주지역D_4, 가구주산업 D_5))

여기서 IMF 체제하의 실업이 위의 식에서 가구소득(Y) 만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21]. 즉 (A 1) 식에 따른 추정식은 (A 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A 2) $\ln C\hat{} = a + b\ln Y + c_1 M_1 + \cdots\cdots + c_9 M_9 + d_1 D_1 + \cdots + d_5 D_5$

이 식에서 $b\ln Y$ 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A 2)식은 (A 3)식과 같이 쓸 수 있다.

(A 3) $\ln C\hat{} = A + b\ln Y$

$A = a + c_1 M_1 + \cdots\cdots + c_9 M_9 + d_1 D_1 + \cdots + d_5 D_5$

소득이Y。에서 Y'로 감소할 때 있을 수 있는 조정소비지출치로 다음의 3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째, 특정 가구는 소득이 Y。에서 Y'로 줄면 당초의 실제소비(lnC)에서 (mod*b*lnY。, 여기서 mod는 소득감소시의 소비탄력치 축소파라미터) 만큼을 뺀 (lnC^ − mod*b*lnY。)을 소비한다. 즉 현재소득이 Y'으로 줄었더라도 항상소득은 Y。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lnC^ − b*lnY。)까지 줄이지 않고 그보다 높은 (lnC^−mod*b*lnY。)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이 가구는 소득이 Y。에서 Y'로 줄었을 때 소비지출 기대치(lnC^)에서 (mod*b* lnY。)를 뺀 (lnC^ − mod*b*lnY。)를 소비한다. 셋째, 둘째 방식의 소비지출기대치(lnC^)를 구할 때, 소비지출을 집계된 1항목이 아니라 10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이들의 합계치를 소비지출의 기대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도 1-1>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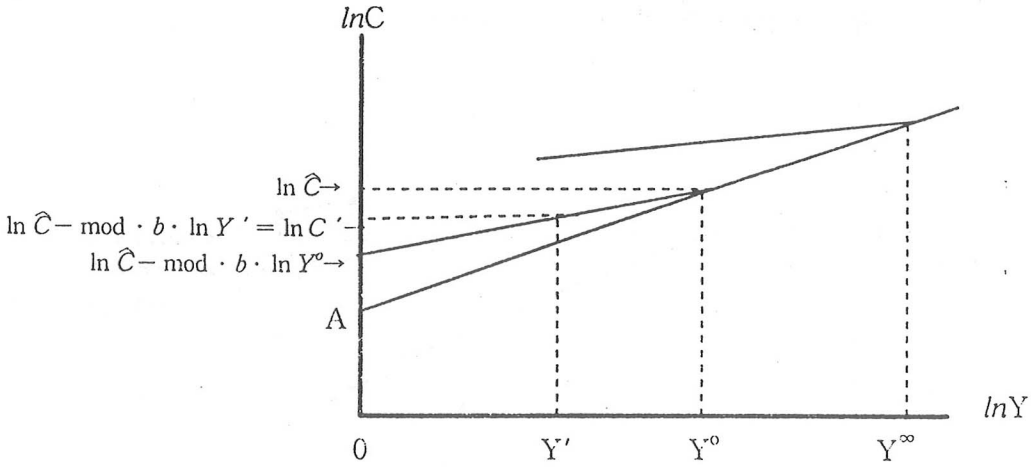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둘째 방법으로 구한 소비지출 기대치를 조정소비지출치를 구하는 기준치로 사용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조사된 실제소비지출이 2개월간의 소비지출 데이터이므로 가계별로 내구재 소비지출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실제소비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 이것들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셋째 방식인 10개의 소비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얻어진 소비지출 추정치보다 둘째 방식에서 오히려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값이 얻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방식은 일견 둘째 방식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도 있어 보이지만 얻어진 값이 둘째 방식보다 비현실적인 값을 보이는 것은 추정과정상의 오차가 누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즉 주요소비항목을 세분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지출항목별로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소비지출 반응을 반영하여 소득감소에 대해 상이한 축소폭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10개의 추정식이 얻어지는 과정에서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이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만다.

셋째 방식의 경우 가령 소비지출항목을 10개로 나눌 경우 교양오락, 식료품지출중 외식비, 피복·구두, 가구가사용품, 보건의료의 5개 소비지출은 소득감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

우리가 조정소비지출의 값을 얻기 위해 사용한 식은 (A 4)식과 같다.

(A 4) lnC′=lnC^ - mod * b *lnY ° + mod * b *lnY′

(A 4)식은 소득 감소후 소비지출이 소비지출의 기대치(C^)에서 약간 떨어진 (mod*blnY ° - mod *blnY′) 만큼 감소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Y °는 당초 소득, Y′은 감소된 소득이며 mod는 소득탄력치 조정계수, b는 소득탄력치이다.

우리는 (A 4)식에 lnC^ 대신 실제소비지출 lnC °을 대입하여 조정소비지출 값을 계산해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mod =0.1 은 소득 감소시의 소비지출 탄력치를 0.1b로 가정하는 셈이 되므로 소득 감소시의 탄력치가 소득증가시 탄력치 b의 10% 수준이라는 것을 지칭한다[23]. (A 4)식을 정리하

면 lnC'= lnC^−mod*b*ln(Y。/Y')가 되고 이를 바꾸어 쓰면 C'=C^ * (Y'/Y。)^{mod*b} 가 된다. 이는 C'/C^ = * (Y'/Y。)^{mod*b} 로 정리되며 mod, b 값에 따라 상이한 곡선을 그린다. <부도 1−2> 는 x축에 C'/C^, y 축에 Y'/Y。의 값을 취해, b=0.6, mod=0.1, 0.5, 1.0 세 경우에 대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부도 1−2>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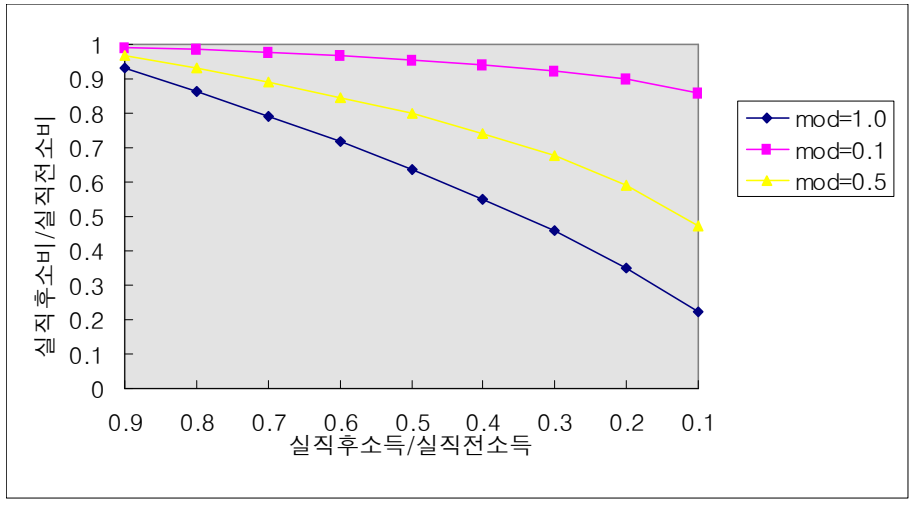

3. 본고 이용 자료에 대한 설명

본 분석에서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조사한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이다. 이 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는 통계로 96년도 조사에서는 군지역의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24,290 가구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인가구와 군지역 비농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대표성은 다소 높아졌다.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가구를 주요지표에 따라 층화 추출한 3만가구를 조사대상 예정가구로 선정하여, 이들을 상대로 가계수지는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연간소득과 저축·부채 및 내구재 보유현황은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였다. 기준은 가계수지는 96년도 10월, 11월의 두 달간 수지, 저축·부채 및 가구내구재 보유현황은 11월말 현재, 연간소득은 1995년 12월1일부터 1996년 11월말까지 번 소득이었다.

최종적으로 조사완료된 24,290가구는 1인가구 3,187가구와 2인이상 가구 21,10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유의할 점의 하나는 조사된 24,290가구가 모두 다른 가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지 모르겠다. 결국 특정 가구가 두 번, 세 번 계수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조사지역별로 조사지 회수율이 다르므로 조사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대표성이 있음직한 가구가 복수 계수되는데 전체적으로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처리는 조사대상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 가구로 확장하는 작업에 제약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같은 작업을 시도하지 않는 본고의 분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영향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같다. 농어가가 제외됐다고 하지만 전북, 충남, 충북, 광주의 근로자소득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역의 근로자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그간의 제반 통계로 미루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응원(1998)은 시부지역과 군부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가중치평균을 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전북과 충북의 소득이 광역시보다 오히려 낮게 나온다. 다만 그가 제시한 소득은 가중치를 이용한 점외에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2인 이상 전가구(21,103가구)가 분석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1인가구를 포함하여 근로자(14,797가구)만을 분석한 우리의 분석과 직접 비교하는 작업에는 다소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은 10월과 11월의 두 달간의 소득의 평균치를 구해 월소득으로 사용했다. 소득계층을 나누기 위한 소득 기준으로는 월소득외에 '연소득'도 함께 이용했다. 월소득은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인데 비해 연소득은 면접 방식에 의해 얻어진다. 따라서 연소득은 구체적인 숫치를 근거하여 얻어진 조사치이기 보다 상당부분 회상과 감에 의해 구술되는 조사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험에 의하면 어느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지닌 귀중한 통계치로서 이용가치가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같다[24]. 이상의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분석에서는 선 월소득, 후 연소득의 순으로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다.

가구원별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별로 기록된 숫치를 사용하였고, 사업소득 및 가내소득은 연간소득의 각 가구원별 소득을 토대로 가구원별 소득지분을 유추하였다. 이 경우 연간소득의 세부 항목 가령 배우자 사업소득, 배우자 부업소득, 기타가구원 사업소득, 기타가구원 부업소득 등이 기록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등 큰 항목만 값을 기록한 표본이 많아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의 사업소득 및 가내소득을 유추하는 작업은 표본수가 크게 줄어들어 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마는 단점이 있다.

소비지출 역시 두 달간 소비지출의 평균치를 월소비지출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지출의 월별 기복이 소득에 비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연간소비지출로 환산해 계절성, 가구특성의 문제를 제거한 월소비지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성이 없지 않다. 우리의 경우 소비지출 통계치로 실제치대신 소비함수 추정에 의한 '기대소비지출'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구 특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그러나 모든 가구에 적용될 수 있는 계절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대근·이창용(1998)이 제시한 방법이 한 가지 대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들은 과거 5년간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연간소비지출/(10월 소비지출+11월 소비지출)의 비율을 구해 이들의 평균치를 계절성 조정을 위한 환산비율로 사용한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도시가계조사가 군지역 비농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소비지출 패턴이 시지역 비농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10월, 11월이 추수기이며 주식의 산지에 거주하는 군지역 비농가의 주식비 지출 유형이 시지역 비농가의 그것과 다른 유형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가구별 소비지출의 기대치를 구해야 하는 분석 방법의 특성상 추정의 정도를 크게 낮출 우려가 있는 표본을 제거하였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넘어서는 가구와 월소득 및 월소비지출이 1천만원을 넘는 가구이다.

보유자산은 저축보유액에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더한 값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월세평가액의 12를 곱해 연간 평가액으로 환산한 다음 할인율(가령 8%)를 적용해 환산한 값이다. 자동차의 경우 경차를 1로 할 때, 소형차 2, 중형차 3, 대형차 4의 가중치를 주어 보유대수를 환산하고, 외제차의 경우 3의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였다.

<부표 1-1>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1)

(단위 : 가구수, %)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합계
6월 이하	1128(38.1)	646(21.8)	367(12.4)	236(8.0)	96(3.2)	2473(16.7)
1년 이하	625(21.1)	631(21.3)	490(16.6)	372(12.6)	209(7.1)	2327(15.7)
2년 이하	606(20.5)	754(25.5)	722(24.4)	654(22.1)	382(12.9)	3118(21.1)
3년 이하	258(8.7)	348(11.8)	424(14.3)	428(14.5)	278(9.4)	1736(11.7)
5년 이하	164(5.5)	273(9.2)	330(11.1)	395(13.3)	315(10.7)	1477(10.0)
10년 이하	88(3.0)	162(5.5)	228(7.7)	253(8.5)	316(10.7)	1047(7.1)
10년 초과	49(1.7)	70(2.4)	140(4.7)	204(6.9)	359(12.1)	822(5.6)
흑자 가구	42(1.4)	76(2.6)	259(8.8)	418(14.1)	1002(33.9)	1797(12.1)
합계	2960(100)	2960(100)	2960(100)	2960(100)	2957(100)	14797(100)

<부표 1-2> 소득계층별 동면가능기간 분포(2)

(단위 : 가구수, %)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합계
6월 이하	112 8(45.6)	646(26.1)	367(14.8)	236(9.5)	96(3.9)	2473(100)
1년 이하	625(26.9)	631(27.1)	490(21.1)	372(16.0)	209(9.0)	2327(100)
2년 이하	606(19.4)	754(24.2)	722(23.2)	654(21.0)	382(12.3)	3118(100)
3년 이하	258(14.9)	348(20.0)	424(24.4)	428(24.7)	278(16.0)	1736(100)
5년 이하	164(11.1)	273(18.5)	330(22.3)	395(26.7)	315(21.3)	1477(100)
10년 이하	88(8.4)	162(15.5)	228(21.8)	253(24.2)	316(30.2)	1047(100)
10년 초과	49(6.0)	70(8.5)	140(17.0)	204(24.8)	359(43.7)	822(100)
흑자 가구	42(2.3)	76(4.2)	259(14.4)	418(23.3)	1002(55.8)	1797(100)
합계	2960(20)	2960(20)	2960(20)	2960(20)	2957(20)	14797(100)

<부표 1-3> 저소득층의 가구유형별 동면가능기간 분포

(단위 : %, 괄호안은 만원)

	저소득층 기간분포					전계층
	전 저소득층	일반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기간분포
6월 이하	38.1(71,61)	30.7(74,63)	1.7(79,69)	3.7(47,35)	2.2(67,58)	16.7(120,88)
1년 이하	21.1(77,61)	17.4(78,63)	0.8(88,76)	1.7(60,41)	1.2(77,60)	15.7(148,103)
2년 이하	20.5(81,66)	18.3(83,67)	0.7(84,71)	1.3(59,54)	0.8(74,82)	21.1(164,111)
3년 이하	8.7(81,66)	7.2(81,66)	0.3(90,68)	0.6(61,50)	0.2(63,53)	11.7(180,115)
5년 이하	5.5(79,65)	4.7(83,67)	0.4(95,67)	0.4(62,42)	0.2(65,60)	10.0(190,122)
10년 이하	3.0(78,71)	2.0(75,74)	0.2(84,69)	0.3(72,66)	0.1(70,66)	7.1(206,131)
10년 초과	1.7(81,71)	1.0(79,72)	0.3(86,59)	0.1(86,80)	0.1(76,60)	5.6(240,138)
흑자 가구	1.4(88,56)	0.7(94,61)	0.4(97,55)	0.3(73,39)	0	12.1(278,152)
합계 (가구수)	100(76,63) (2960)	82.0(78,65) (2427)	4.8(86,68) (142)	8.3(56,42) (247)	4.9(71,63) (144)	100(180,115) (14797)

주 : 월소득기준. 괄호안은 (소득, 소비) 금액.
자료 : 필자 계산

<부표 1-4> 연령별·부부학력별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 비교

단위 : 만원

연령별	부부학력별 남편-아내	저축보유액 맞벌이	저축보유액 일반	보유자산 맞벌이	보유자산 일반	맞벌이 월소득	a 월	b 월	c %	d %	표본수(개) 맞벌이	표본수(개) 일반	합 계
30대 미만	대졸-대졸	1312.8	1539.2	9999.8	9486.4	101.7	-2.2	5.0	52.4	-5.7	46	65	111
	대졸-고졸	1127.8	1048.5	7628.9	6586.1	71.8	1.1	14.5	37.2	-8.4	32	81	113
	고졸-고졸	1099.7	946.3	5270.2	5538.7	69.2	2.2	-3.9	36.3	-10.4	242	645	887
	고졸-고하	1155.6	518.0	3622.3	3140.9	58.2	10.9	8.3	18.8	-30.3	9	42	51
	고하-고하	500.2	683.7	2577.2	3414.8	54.2	-3.4	-15.5	25.2	-19.9	13	26	39
											342	859	1201
30대	대졸-대졸	2655.7	2352.1	10377.9	11505.7	102.6	3.0	-11.0	41.8	-6.7	220	353	573
	대졸-고졸	2648.0	1881.1	9444.3	8955.9	71.9	10.7	6.8	48.0	8.9	200	496	696
	고졸-고졸	1707.6	1353.0	6967.0	6736.7	53.9	6.5	4.3	38.6	4.8	650	1508	2158
	고졸-고하	1261.5	1034.4	5710.3	5571.1	50.0	4.5	2.8	30.5	-3.0	146	241	387
	고하-고하	1301.3	875.8	5177.8	4320.0	49.8	8.5	17.2	33.8	-2.5	160	262	422
											1376	2860	4236
40대	대졸-대졸	2684.0	3360.8	13920.5	14108.6	119.1	-5.7	-1.6	40.0	-2.3	61	102	163
	대졸-고졸	3011.3	2786.3	12067.8	12008.6	76.5	2.9	0.8	35.8	3.9	104	215	319
	고졸-고졸	1951.3	1980.6	8216.3	8639.7	52.7	-0.6	-8.0	27.0	-1.1	379	506	885
	고졸-고하	1480.1	2019.8	7088.8	8618.3	50.1	-10.8	-30.5	15.7	-10.9	264	257	521
	고하-고하	1332.1	1156.0	6192.5	5210.1	46.6	3.8	21.1	29.0	-2.0	520	451	971
											1328	1531	2859
50대	대졸-대졸	2553.5	3506.2	12879.4	16534.2	170.2	-5.6	-21.5	34.1	-14.7	19	41	60
	대졸-고졸	2781.1	2837.1	12782.3	13061.0	64.4	-0.9	-4.3	37.3	14.7	43	113	156
	고졸-고졸	2387.9	2275.3	9003.4	9891.0	60.6	1.9	-14.6	30.0	3.3	63	125	188
	고졸-고하	1705.2	2324.1	7395.9	9185.2	42.4	-14.6	-42.2	10.8	-7.6	155	283	438
	고하-고하	1668.6	1536.8	7157.1	6802.4	52.1	2.5	6.8	22.6	-5.7	349	522	871
											629	1084	1713
60대 이상	대졸-대졸	3083.1	2993.1	8708.1	21980.6	105.2	0.9	-126.1	-30.6	-60.5	4	12	16
	대졸-고졸	2292.6	4652.1	11617.6	14823.3	156.0	-15.1	-20.6	8.6	-37.2	6	26	32
	고졸-고졸	1146.9	2912.6	2706.9	10395.0	.	.	.	14.3	14.3	5	17	22
	고졸-고하	1122.0	2906.3	7857.7	9605.4	36.5	-48.9	-47.9	-32.5	-47.6	21	56	77
	고하-고하	1103.5	1333.3	6801.7	6480.5	45.5	-5.1	7.1	2.5	-23.3	85	130	215
											121	241	362
											3796	6575	10371

주 : a = (맞벌이가구 저축보유액 - 일반가구 저축보유액)/맞벌이가구 월소득
b = (맞벌이가구 보유자산 - 일반가구 보유자산)/맞벌이가구 월소득
c = (맞벌이가구 월소득 - 일반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 100
d = (맞벌이가구 배우자 실업시 월소득 - 일반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 100

자료: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한 필자 분석.

부록 2. 근로자가구 중 실업 취약 계층의 유형별 파악

가.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경제력이 높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소비지출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여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인수 3인 이상 가구는 취업인수 1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89.3%가 높은 반면 소비지출은 42.9%가 높을 뿐이다. 이로 인해 저축보유액은 47.2%, 보유자산은 33.3%가 더 많다. 그러나 3인 이상 취업가구는 전체 가구의 6.5%에 지나지 않으며 1인 취업가구가 60.2%, 그리고 2인 취업가구가 33.2%를 점하고 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가구주 완전 실직이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인 취업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부표 2-1>에 제시되어 있듯이 1인 취업가구의 경우 완전 실직시 보유저축으로 26개월을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인 취업가구의 64개월에 비해 월등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가구주의 부분 실직(연간 6개월 정도)시에는 이 기간이 133개월로 늘어나 파급효과가 작다.

연공임금의 경향이 아직도 강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지만 60대 이상에서는 30대보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부표 2-2 참조). 소비지출은 40대에서 최고수준을 보이고 50대, 30대, 60대 이상, 30대 미만의 순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은 50대, 40대, 30대, 60대 이상, 30대 미만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실업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연령계층이 30대 미만과 30대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의 가구주 완전 실직이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작지 않다. 저축보유액으로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은 30대 미만이 31개월, 30대가 33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소득수준이 더 높고 저축보유액도 높지만 소비지출 규모가 커서 역시 34개월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50대는 79개월, 60대 이상은 116개월로 나타나 파급효과가 적음을 알 수 있다. IMF 체제 이후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50대 직장인들이 상당수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들 숙련 노동력의 유휴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논외로 하고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만을 염두에 두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파급효과가 낮다고 할 수 있다. 50대 직장인들의 퇴직이 대졸보다는 고졸과 중졸이하 학력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숙련 노동력의 유휴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부표 2-1>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 취업인원수별)

(단위:만원)

취업인원수	1인	2인	3인 이상
표본수(개)	8910	4918	969
월평균 소득	148.2	216.7	280.6
월평균 소비지출	103.6	130.1	148.0
저축보유액(평균)	1344.5	1688.9	1979.5
보유자산(평균)	6325.0	7332.4	8429.1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8.0	87.5	166.6
조정소비지출	74.0	113.1	134.6
가계수지	−56.0	−25.6	32.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4	−66	62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3	−286	263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82.9	152.0	223.4
조정소비지출	92.9	118.6	137.9
가계수지	−99.8	33.4	85.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35	51	2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634	219	99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73.4	248.0
조정소비지출	_	119.5	138.8
가계수지		53.9	109.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1	18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6	77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97.1	173.3
조정소비지출	_	120.6	135.1
가계수지		76.5	3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2	52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96	221

주: 조정소비지출은 소비함수 추정후의 조정치로 산출 방법은 부록1 참조
출처: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을 이용한 필자 계산

<부표 2-2>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근로자가구,가구주연령별)

(단위:만원)

가구주 연령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표본수(개)	2853	5187	3546	2351	860
월평균 소득	140.1	180.4	195.5	211.6	152.5
월평균 소비지출	88.8	113.4	133.2	132.5	93.4
저축보유액(평균)	918.2	1547.3	1752.2	1786.2	1332.0
보유자산(평균)	4827.1	6981.8	7577.7	7771.0	6345.8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35.8	40.1	52.7	85.4	63.2
조정소비지출	67.3	88.3	106.1	109.4	78.3
가계수지	−31.5	−48.2	−53.4	−24.0	−15.1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9	−32	−34	−74	−88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53	−145	−142	−324	−421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87.9	110.1	124.0	148.4	107.5
조정소비지출	78.4	102.7	122.1	121.1	85.1
가계수지	9.4	7.4	2.0	27.3	22.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97	209	914	65	60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511	945	1999	285	284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30.1	162.0	173.0	194.5	143.6
조정소비지출	80.3	105.3	125.0	123.6	87.0
가계수지	49.8	56.8	48.0	70.9	56.6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8	27	37	25	24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97	123	158	110	112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86.4	169.3	124.0
조정소비지출	−	−	125.7	122.2	85.8
가계수지			60.8	47.0	38.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9	38	3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25	165	166

나. 가구유형 및 가구구분별

대부분의 근로자가구는 일반가구거나 맞벌이가구이다. 두 가지 유형외에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조사대상 근로자가구의 2.2%와 1.8%를 점하고 있지만 68.6%를 점하는 일반가구와 27.5%를 점하는 맞벌이가구가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일반가구는 다시 가구주만 취업한 가구와 가구주 및 배우자가 취업한 가구(맞벌이가구 제외 가구), 가구주 및 기타가구원이 취업한 가구, 기타가구원만 취업한 가구로 나뉘어 진다. 맞벌이가구에도 기타가구원이 취업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일반가구에 비해 기타가구원의 취업비율은 낮다. 기타가구원의 취업이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미치는 소득 증대효과는 평균적으로 9.6%와 5.0%로 나타나 일반가구 쪽이 크다. 취업비율이 맞벌이가구에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가구별로 볼 때 기타가구원의 취업에 따른 가구소득 증대효과는 두 가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기타가구원의 취업 유무와 취업비율에 따라 두 가구를 좀더 상세하게 분류하여 논의하는 것을 배제하고,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로 크게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이같은 구분으로 두 가구를 구분하는 시사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표 2-3>에서 보듯 맞벌이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41.6% 높지만 소비지출은 23.7%가 높을 뿐이다. 저축여력이 큰 만큼 보유저축액이 21.3%, 보유자산이 11.4%가 더 높다. 저축에 비해 보유자산의 차이폭이 작은 것은 맞벌이가구가 비교적 젊은 세대에 많고, 또 일반가구중에도 과거 맞벌이를 통해 일정 소득을 벌어 재산을 축적한 다음 맞벌이를 그만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주 완전 실직이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보유저축액으로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이 일반가구 32개월에 비해 맞벌이가구는 78개월로 나타나 가계의 저력이 배 이상 강함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에서 배우자 실직시에도 가계수지가 월 47만의 흑자를 보여 오히려 저축보유액이 축적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 두 가구에 비해 취약한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이지만 가구주 완전 실직의 파급효과는 일반가구에의 효과보다 오히려 작게 나타난다.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은 두 가구보다 작지만 적자 규모가 작아 저축보유액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이 각각 35개월과 53개월로 계산되고 있다.

근로자가구를 공무원,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로 네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조사대상 표본에서 점하는 비중은 각각 10.2%, 28.0%, 45.0%, 16.8%로 표본 대표성은 비교적 높다고 생각된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아 두 번째인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곧 통상의 회사원 가구보다 16.0%가 더 높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아 공무원 급여가 10% 삭감을 목표로 실지급수준이 줄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원보다 더 높은 수준일 확률이 크다.

물론 공무원가구의 맞벌이 비율과 기타가구원의 취업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부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 완전 실직시의 가구소득 축소폭은 공무원가구 10.6%에 비해 회사원 가구 9.0%이다. 또 기타가구원 완전 실직시의 가구소득 축소폭은 각각 5.8%, 4.4%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의 완전 실직이 해당 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같은 축소폭의 차이는 맞벌이 비율과 기타가구원의 취업비율에 차이를 있음을 말한다. 즉 공무원가구의 이들 비율이 회사원가구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소득외에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에 있어서도 공무원가구는 회사원가구에 비해 19.0%, 4.4%가 더 높다. 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가구에 비해 80.0%, 58.3%가 더 높고, 임시 및 일용노무자 가구에 비하면 무려 160%, 98.5% 만큼 더 높다.

최근의 실직 사태가 공무원 조직보다 민간 조직에서 광범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직원들이 오히려 절실한 실직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완전 실직에 따른 가계에의 파급효과는 저축보유액으로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이 43개월로 가장 길고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 37개월로 가장 낮다.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공무원외 사무종사자는 40개월을 보이고 있다.

<부표 2-3>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가구유형별)

(단위:만원)

가구 유형	일반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표본수(개)	10154	4062	321	260
월평균 소득	163.2	231.3	89.9	122.1
월평균 소비지출	109.6	135.6	60.4	88.6
저축보유액(평균)	1433.2	1737.8	847.6	1232.4
보유자산(평균)	6670.6	7429.4	4491.0	4735.1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33.4	97.2	18.6	45.4
조정소비지출	81.6	118.8	48.9	72.3
가계수지	-48.2	-21.5	-30.3	-26.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0	-81	-28	-4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8	-345	-148	-176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98.2	164.2	54.2	83.7
조정소비지출	98.5	124.2	56.0	80.4
가계수지	-3.6	40.0	-1.8	3.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942	43	-474	367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8348	186	1999	1411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62.2	172.1	-	-
조정소비지출	101.9	124.4		
가계수지	60.2	47.6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4	3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1	156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47.7	219.9	-	-
조정소비지출	101.2	126.8		
가계수지	46.3	93.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1	1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44	80		

<부표 2-4>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근로자가구, 가구구분별)

(단위:만원)

가구 유형	공무원	공무원 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
표본수(개)	1506	4144	6667	2480
월평균 소득	237.7	204.8	166.2	138.3
월평균 소비지출	152.8	132.6	105.4	90.2
저축보유액(평균)	2302.0	1934.6	1278.7	884.9
보유자산(평균)	9195.9	8812.3	5808.9	4632.4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66.4	51.8	47.8	47.8
조정소비지출	120.8	102.6	85.0	74.7
가계수지	-54.3	-50.8	-37.2	-26.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2	-38	-34	-3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69	-173	-156	-173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52.1	128.1	106.9	92.8
조정소비지출	139.8	120.1	95.7	82.9
가계수지	12.3	8.0	11.1	10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88	243	115	8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749	1107	522	464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12.6	186.4	150.6	124.5
조정소비지출	143.1	123.3	97.7	84.4
가계수지	69.5	63.1	52.9	40.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3	31	24	22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2	140	110	115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23.9	195.9	151.1	119.6
조정소비지출	143.6	123.7	97.8	84.1
가계수지	80.2	72.2	53.2	35.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9	27	24	2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5	122	109	130

다. 산업별

<부표 2-5>은 가구원 실직이 가계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어업 순이며 저축보유액도 같은 순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보유자산은 도소매업이 전기가스·건설업보다 다소 크게 나오는 것외에는 저축보유액과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실업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공히 광업·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실업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고 여자의 경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다수의 실업자가 배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중에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이들이 해고 위협에도 가장 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가구주의 완전 실직이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저축보유액으로 견뎌낼 수 있는 기간으로 계측하면 농업이 27개월로 가장 짧고, 전기가스·건설업 34개월, 도소매업과 운수창고통신업 35개월, 음식숙박업은 36개월로 비슷한 수준이며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이 40개월, 44개월로 비교적 높다. 농업 근로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을 뿐아니라 저축보유액과 보유자산에 있어서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배우자의 취업에 의한 가구소득 기여도는 운수창고통신, 서비스업이 9.7%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건설업이 9.6%, 농·어업 9.5%, 광업·제조업 9.4%, 도소매업 9.3%로 비슷한데 음식숙박업은 6.4%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대신 기타가구원의 취업에 의한 가구소득 기여도는 음식숙박업이 12.4%로 단연 높고 그 다음이 전기가스·건설업 9.0%, 농·어업 8.8%, 서비스업 7.6%, 광업·제조업 7.2%, 운수창고통신 6.9%, 도소매업 6.1%로 낮아진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구소득 기여도는 소득으로 계측된 값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취업비율의 고저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음식숙박업에서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낮다고 배우자 취업비율이 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배우자가 무급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표 2-5>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가구주 산업별)

(단위:만원)

가구주 연령	농·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	서비스업
표본수(개)	183	4281	2569	1572	702	1214	4273
월평균 소득	111.9	172.5	169.5	159.6	135.7	189.3	207.4
월평균 소비지출	77.4	109.0	107.5	101.0	86.7	121.8	136.0
저축보유액(평균)	714.2	1468.1	1222.2	1204.9	967.8	1602.1	1900.2
보유자산(평균)	3485.2	6600.0	5757.7	6395.3	4514.3	6886.2	8256.7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35.2	46.8	47.1	43.0	36.3	50.1	63.1
조정소비지출	68.1	86.8	86.4	80.2	67.2	97.8	107.8
가계수지	-33	-40.1	-39.4	-37.2	-31.0	-47.7	-44.7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2	-37	-31	-32	-31	-34	-4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06	-165	-146	-172	-146	-144	-184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73.3	109.5	108.0	101.3	85.9	119.6	135.2
조정소비지출	75.9	99.0	98.3	91.4	78.7	111.5	123.5
가계수지	-2.6	10.6	97.1	98.5	7.2	8.1	11.7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75	139	126	122	134	199	16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42	625	593	649	626	854	708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01.3	156.2	153.2	144.7	127.0	170.8	187.2
조정소비지출	77.3	101.2	100.4	93.5	80.6	114.0	126.4
가계수지	24.0	54.9	52.9	51.2	46.4	56.8	60.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0	27	23	24	21	28	31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45	120	109	125	97	121	136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02.2	160.1	154.1	149.7	118.9	176.1	191.6
조정소비지출	77.0	101.4	100.4	93.6	80.2	114.2	126.6
가계수지	25.2	58.8	53.7	56.1	38.7	62.0	65.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8	25	23	21	25	26	2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9	112	107	114	117	111	127

라. 교원가구와 금융보험업가구

근로자가구중 가장 여유있는 그룹이 교원가구와 금융보험업가구로 알려져 있다. 교원가구의 경우 조사대상의 8할 이상이 상위 20%인 제5분위에 속하는데 비해 금융보험업가구의 경우 중소득층 이하에 속하는 근로자가가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두 그룹중 교원가구에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미치지 않고 있지만 금융보험업 가구에는 구조조정의 여파가 서서히 밀어닥치고 있다. 교원가구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추가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주로 금융보험업 가구에 실직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가장 뒤진 부문이 금융부문이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오늘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금융산업의 미발달과 금융기관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이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중인 대규모 금융기관 조정의 파급효과를 가구차원에서 살펴본다.

분석대상이 된 금융보험업가구는 분석대상인 전체 근로자 14,794가구의 3.9%에 해당하는 580가구로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9.3만원으로 근로자 가구 평균인 179.6만원보다 16.5%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보험업가구로 제5분위 소득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구 등 취업인원이 2인 이상이거나 간부급 가구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우리 주변의 현실과 꽤 거리가 있는 결과로서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금융기관의 신입 직원의 통상의 중견 기업의 5년내지 7년 경력의 대리, 과장급 사원의 급여와 비슷하다는 말을 늘상 들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용 표본이 은행, 종금, 보험 등과 같이 보수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 직원보다 연금 및 공제업, 의료보험, 보험대리 및 중개업 등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취업인원 1인과 2인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완전 실직으로 인해 가계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어 저축보유액에 의한 생활 가능 기간이 33개월, 58개월로 나온다. 취업인원 2인 이상 가구에서 배우자의 실직은 가계수지를 적자로 바꾸어 놓지 못한다(부표 2-10 참조).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이 3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실직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은 40대로 저축보유액으로 견딜 수 있는 기간이 35개월로 근로자가구 평균인 34개월에 근접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취약한 계층이 50대로 39개월, 이어 30대가 42개월, 30대 미만 44개월로 나오고 있다(부표 2-11 참조).

맞벌이가구의 경제력이 일반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보다 월등히 우월하여 가구주 완전실직시에도 저축보유액으로 견딜수 있는 기간이 65개월로 여유가 있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는 35개월, 노인가구는 51개월을 보인다. 의외로 모자가구가 83개월로서 맞벌이가구보다 높게 나온다(부표 2-12 참조).

맞벌이가구에서 배우자의 실직은 가계수지를 적자로 반전시키지 못한다. 이는 맞벌이가구에서 배우자 취업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9.8%로 근로자가구 평균 25.6%보다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이 점도 통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맞벌이가구의 대 일반가구 비율이 40%로서 근로자가구 평균과 비슷한 값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낮은 값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배우자 급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금융보험업가구는 소득이 광역시 가구보다 20.3%, 도 가구보다 13.1%가 더 높고, 저축보유액은 광역시보다 66.5%, 도보다 46.3% 높다. 또 보유자산은 광역시 가

구보다 95.6%, 도 가구보다 112.8%가 높다. 이같은 자료로부터 가구주 완전 실직시 저축보유액에 의한 생활가능 기간은 광역시가 30개월, 도가 47개월인데 비해 서울은 52개월로 높다. 배우자의 실직은 가계수지를 적자로 반전시키지 못한다(부표 2-13 참조).

<부표2-6>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 취업인원수 별)

(단위:만원)

취업인원수	1인	2인	3인 이상
표본수(개)	371	209	32
월평균 소득	228.8	356.0	477.5
월평균 소비지출	157.5	206.0	229.3
저축보유액(평균)	2459.0	3709.4	3659.7
보유자산(평균)	9608.7	11904.5	14076.9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6.5	143.9	265.6
조정소비지출	110.3	184.2	211.7
가계수지	-83.8	-40.3	53.9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9	-92	70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5	-295	261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27.7	250.0	371.5
조정소비지출	143.5	191.8	219.1
가계수지	-15.9	58.1	152.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55	64	2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605	205	92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70.3	406.6
조정소비지출	-	192.4	221.1
가계수지		77.9	185.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8	20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53	76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331.3	321.9
조정소비지출	-	195.2	215.9
가계수지		136.1	106.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7	3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87	133

주: 조정소비지출은 소비함수 추정후의 조정치로 산출 방법은 부록 1 참조

출처: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본고 계산

<부표 2-7>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교원 가구, 가구주연령별)

(단위:만원)

가구주 연령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표본수(개)	51	194	170	140	57
월평균 소득	179.0	248.4	292.5	349.1	327.8
월평균 소비지출	99.4	149.0	201.1	215.0	185.3
저축보유액(평균)	1114.8	2565.8	3727.9	3101.1	3251.4
보유자산(평균)	5640.7	9610.5	11661.2	12386.7	11133.0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60.7	77.6	68.8	98.2	84.0
조정소비지출	73.9	123.2	160.4	171.8	138.6
가계수지	−13.2	−45.9	−91.5	−73.6	−54.6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84	−56	−41	−42	−60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427	−211	−127	−168	−204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19.9	163.0	180.7	223.7	205.9
조정소비지출	90.8	138.3	188.3	197.6	169.2
가계수지	29.0	24.7	−7.6	26.1	36.7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8	104	−488	119	8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94	389	−1527	475	304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52.7	204.3	258.2	320.6	319.1
조정소비지출	92.5	140.3	192.8	202.1	175.2
가계수지	60.2	64.0	65.5	118.5	143.9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9	40	57	26	2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94	150	178	105	77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86.6*	314.6	276.3
조정소비지출	−	−	194.1	201.9	173.4
가계수지			92.5	112.7	102.9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0	28	32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26	110	108

주 : 실직후 소득이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은 전자에는 미싱 표본이 제외되었고, 후자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임

<부표 2-8>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 가구유형별)

(단위:만원)

가구 유형	일반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표본수(개)	419	167	15	11
월평균 소득	250.4	380.6	248.5	219.1
월평균 소비지출	166.8	212.3	136.0	131.9
저축보유액(평균)	2655.5	3801.8	1803.1	3024.7
보유자산(평균)	10207.6	11933.1	9063.1	8861.1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45.7	169.9	2.8	76.4
조정소비지출	123.3	195.1	52.7	109.5
가계수지	−77.7	−25.2	−50	−33.1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4	−151	−36	−91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1	−474	−181	−268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48.0	275.2	125.7	147.7
조정소비지출	152.1	200.6	116.5	128.4
가계수지	−4.1	74.6	9.2	19.3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652	51	197	15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506	160	990	458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50.2	260.1		
조정소비지출	157.7	199.9	−	−
가계수지	92.5	60.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9	6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0	198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31.3	367.5		
조정소비지출	156.9	203.6	−	−
가계수지	74.4	163.9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6	2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7	73		

주 :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작은 표본수로 인해 추정치인 조정소비지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

<부표 2-9>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교원가구, 지역별)

(단위:만원)

지역	서울	광역시	도
표본수	52	245	315
월평균 소득	334.2	284.0	278.2
월평균 소비지출	185.5	182.9	172.5
저축보유액(평균)	4488.1	3083.0	2600.5
보유자산(평균)	19273.5	10632.6	9293.7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99.2	77.2	77.2
조정소비지출	160.9	144.0	136.4
가계수지	-61.7	-66.8	-59.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73	-46	-44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312	-159	-155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16.7	180.6	177.7
조정소비지출	177.3	168.6	158.5
가계수지	39.4	12.0	19.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14	257	13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489	887	479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301.8	264.0	235.0
조정소비지출	180.4	173.1	161.5
가계수지	121.4	90.8	73.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7	34	3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59	117	125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96.9	265.8	266.2
조정소비지출	180.3	173.3	162.8
가계수지	116.6	92.5	103.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8	33	25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65	115	89

<부표 2-10>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 가구, 취업인원수 별)

(단위:만원)

취업인원수	1인	2인	3인 이상
표본수(개)	360	194	26
월평균 소득	191.7	277.6	352.7
월평균 소비지출	136.6	168.4	163.2
저축보유액(평균)	2340.6	2572.1	1817.8
보유자산(평균)	9133.5	10890.9	11853.4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8.2	104.8	195.0
조정소비지출	100.9	148.0	155.5
가계수지	−72.7	−43.2	39.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2	−60	4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26	−252	300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10.0	191.2	273.9
조정소비지출	123.6	155.6	160.1
가계수지	−13.6	35.6	113.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72	72	1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671	306	104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26.2	310.8
조정소비지출	−	157.4	161.8
가계수지		68.8	149.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7	12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58	80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60.2*	246.4
조정소비지출	−	159.2	158.1
가계수지		101.0	88.3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5	21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08	134

주 : 조정소비지출은 소비함수 추정후의 조정치로 산출 방법은 부록 참조

기타가구원 실직후 소득이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은 전자에는 미싱 표본이 제외되고 후자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임

자료:『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필자 계산

<부표 2-11>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금융보험업 가구, 가구주연령별)

(단위:만원)

가구주 연령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표본수(개)	118	244	129	69	20
월평균 소득	177.3	231.2	248.8	263.8	220.2
월평균 소비지출	108.4	144.4	178.5	180.9	127.3
저축보유액(평균)	1465.9	2567.0	2842.2	2677.5	1906.3
보유자산(평균)	6517.8	10121.2	11714.3	11127.1	9575.8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55.5	54.2	63.2	85.4	86.7
조정소비지출	89.8	114.6	145.7	149.5	96.7
가계수지	−34.3	−60.4	−82.5	−64.1	−10.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3	−42	−34	−42	−190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90	−168	−142	−174	−957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16.4	142.7	156.0	174.6	153.4
조정소비지출	100.3	132.7	165.3	167.7	117.8
가계수지	16.1	10.1	−9.3	6.9	35.6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91	255	−306	386	5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405	1006	−1263	1603	269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61.1	209.6	222.3	253.4*	220.2*
조정소비지출	102.0	135.4	169.2	173.1	126.4
가계수지	59.1	74.2	53.1	80.4	93.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5	35	54	33	20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0	136	221	138	102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44.0*	229.3*	179.4
조정소비지출	−	−	170.3	171.7	123.1
가계수지			73.7	57.6	56.3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8	47	3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58	193	170

주 : 실직후 소득이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은 전자에는 미싱 표본이 제외되고, 후자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임

<부표 2-12>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 가구, 가구유형별)

(단위:만원)

가구 유형	일반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표본수(개)	400	152	8	20
월평균 소득	206.8	294.6	142.4	170.0
월평균 소비지출	141.8	174.3	87.6	107.8
저축보유액(평균)	2325.9	2574.8	1017.6	2950.9
보유자산(평균)	9644.9	11143.1	5303.8	5748.4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41.4	115.0	33.9	61.8
조정소비지출	108.1	153.7	58.4	98.0
가계수지	−66.6	−38.8	−24.5	−36.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5	−66	−42	−81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45	−288	−217	−159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24.1	204.8	881.3	116.0
조정소비지출	128.8	161.2	78.6	103.6
가계수지	−4.7	43.6	9.5	12.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98	59	107	23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064	256	557	465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06.2	221.8		
조정소비지출	132.6	162.0	−	−
가계수지	73.6	59.8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2	4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1	186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92.7	288.6*		
조정소비지출	132.1	165.4	−	−
가계수지	60.6	123.2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8	21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59	90		

주: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작은 표본수로 인해 추정치인 조정소비지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 실직후 소득이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은 전자에는 미싱 표본이 제외되고, 후자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임

<부표 2-13>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보험업 가구, 지역별)

(단위:만원)

지역	서울	광역시	도
표본수	105	207	268
월평균 소득	275.9	219.4	215.2
월평균 소비지출	174.5	152.0	135.5
저축보유액(평균)	3428.7	2059.0	2248.7
보유자산(평균)	17471.5	8672.0	7759.3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77.4	55.4	59.6
조정소비지출	142.4	122.1	108.9
가계수지	-65.1	-66.7	-49.3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53	-31	-4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69	-130	-157
가구주 5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76.6	137.4	137.4
조정소비지출	161.7	141.1	122.6
가계수지	14.9	-3.7	14.7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30	-562	15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74	-237	527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45.0*	207.6*	194.1
조정소비지출	165.3	144.5	125.4
가계수지	79.7	63.2	68.7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43	33	3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19	137	113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263.7*	209.8*	202.8
조정소비지출	166.2	144.5	125.8
가계수지	97.5	65.3	77.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5	32	2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79	133	101

주 : 실직후 소득이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은 전자에는 미싱 표본이 제외되고, 후자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임

제2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과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

Ⅰ. 문제의 제기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활발한 고용조정 바람이 1998년말까지 계속될 조짐이다. 기업의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들이 부서간 업무 조정과 인재의 재배치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에 틀림없다. 업무능력, 생산성, 조직의 인화, 장래의 재목감 등 몇 가지 점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선별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로 고용조정 플랜이 제시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가을 이후 전개된 대규모 해고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1998년말이면 1백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직자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자료는 거의 없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실직자의 성별, 연령, 학력,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취업시간, 전직(前職) 유무, 실직의 주된 이유 정도이다. 문제는 이들 정보가 실직자의 개황 파악에는 나름대로 효과를 지니지만 실직자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쓸모가 약하다는 점이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로는 실직자의 경우 실직 전 담당 업무, 근속연수, 소득, 맞벌이 여부, 가구내 다른 취업자의 존재 여부, 가구소득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25]. 다행히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려는 시도가 최근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신규 실직자들의 속성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정보는 여성 취업자의 실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첫째, 전직(前職)실직자 중 여성의 숫자가 남성보다 많다. 남성 취업자가 여성 취업자보다 43%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여성이 고용조정의 우선 대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둘째, 여성 상용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율은 남성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율의 3배에 달하며, 자영업주의 취업자 감소율은 한층 높아 남성의 8배 이상의 규모이다. 셋째, 가구주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이 비가구주 여성의 그것을 크게 웃돈다. 혼인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이 가장 낮은 이혼·사별 그룹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이 미혼, 유배우 순이다. 한편 실업률 증가폭은 미혼이 가장 높고 이혼·사별, 유배우 순이다. 넷째,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젊은 여성과 50대의 중장년 여성에서 실업이 두드러진다.

이상의 통계에 의하면 30대, 40대 맞벌이가구의 여성배우자는 여성내에서 실업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동안 불황기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여파가 공공부문으로 까지 확대될 조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가구의 여성배우자인 취업자가 실업에 처할 위험한 상당수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서 조차 맞벌이가구인 여성취업자의 퇴사를 종용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맞벌이가구의 여성배우자인 취업자의 실업문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기혼 여성에 대한 취업현장의 차별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확인했다. 이하에서는 기혼여성 특히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이 어떠한 것이며, 맞벌이가구를 가구주 연령별, 부부학력별로 나누어 여성 배우자의 노동시장 퇴출에 따라 줄어든 가구소득이 일반가구의 가구소득과 비교하여 어떤 것인지를 정리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가구의 맞벌이 배우자의 해고가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계량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Ⅱ.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맞벌이가구의 취업 특성

지난 수십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의 하나가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이다. 이웃 중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특이할 정도로 높지만 우리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점 높아져 최근 일본 수준에 도달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향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근 IMF 관리체제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1984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 사이에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26].

본 절에서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을 구명한다.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최근의 변화

가. 여성의 취업과 실업의 현황

우리 나라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 7월 기준으로 47.6%이다. 15세 이상의 여자인구가 1천8백12만5천명인데 이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9백50만2천명을 뺀 8백62만3천명이 경제활동인구이며, 경제활동인구중 취업하고 있는 이들이 8백8만4천명으로 취업률은 93.7%이고 실업률은 6.3%이다. 실업자 53만9천명과 실업률 6.3%는 근래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의 37.2%, 1970년 40.4%, 1980년 42.8%, 1990년 47.0%, 1995년 48.3%로 줄곧 높아져 왔다[27].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6년도 기준으로 48.7%로 스웨덴(75.6%), 미국(59.3%), 캐나다(57.6%)보다는 크게 낮지만 일본(50.0), 싱가포르(51.5%)보다 약간 낮고 프랑스(48.4%)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탈리아(34.6%)보다 높다[28].

여성 취업의 특징의 하나는 단시간 취업자가 많은 점이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이며 게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의 여성 취업자중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은 11.0%로서 1996년(9.7%)에 비해 1.3%p 증가하였다(표 2-1 참조).

당연한 것이겠지만 가구주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구주가 아닌 여성의 그것보다 20%p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6월 기준으로 가구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0%인데 비해 비가구주 여성의 그것은 46.5%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여성을 혼인상태에 기준하여 3분하여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로

나눌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5월 기준으로 미혼(78.2%), 유배우(76.7%), 이혼·사별(63.1%)의 순으로 낮아지며, 실업률(3.8%, 1.5%, 1.4%)도 같은 순으로 낮아진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태를 보여주는 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에서는 1998년 5월 기준으로 남자가 0.38인데 비해 여자가 0.25로 취업여건이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최근의 악화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1997년 5월에는 동 배율이 0.94로 높았다[29].

<표 2-1> 단시간 취업자의 시간대별 남녀 분포

(단위 : (만명), %)

	남자					여자					b/(a+b)
	취업자	단시간 취업자(a)	17시간 이하	26시간 이하	35시간 이하	취업자	단시간 취업자(b)	17시간 이하	26시간 이하	35시간 이하	
1980	(846.2)	(67)	7.2	36.3	56.6	(522.2)	(73.3)	4.5	40.0	55.5	52.2
1990	(1070.9)	(50.3)	17.5	34.6	47.9	(737.6)	(81.7)	15.0	37.3	47.7	59.1
1997	(1240.9)	(59.9)	21.5	35.1	43.4	(863.9)	(94.8)	22.8	37.9	39.3	6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나. 최근의 변화와 그 특징

여자 실업의 특징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출되었거나 진입을 시도하여 여의치 않으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취업희망자 낙담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커서 실제보다 실업자수 증가폭이 낮게 나타나는 점이다.

최근의 대규모 실업 사태하에서 여자의 실업률은 1998년 7월 기준으로 1년전의 1.9%에 비해 4.4%p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남자의 실업률이 1년전의 2.4%에서 5.9%p가 증가한 8.5%인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낮다. 그렇지만 남자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전에 비해 11만7천명, 비율로 2.9%가 증가한 반면 여자는 60만2천명, 비율로 6.8%가 증가하여 취업희망자 낙담효과가 여자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취업자 변화를 종사상 지위별로 들여다보면 남녀간의 차이가 한층 두드러진다(표 2-1 참조). 1998년 7월 기준으로 1년전의 같은 시기에 비해 여자의 취업자 감소세가 월등히 높아, 근로자가 11.6%(남자 7.9%)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19.7%(동 6.4%)나 줄었다.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근로자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자가 3.3%(남자 0.6%)가 줄어들었고 특히 자영업주는 13.1%(동 1.6%)나 감소했다. 여자 자영업주의 감소율은 여자 상용직 근로자의 감소율보다는 낮지만 전체 여자 근로자의 감소율보다는 오히려 높다.

IMF 체제하의 불황기에 가게문을 닫는 여성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상의 통계 수치는 지난 1년 사이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여자들이 직장내에서 밀려나는 순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문을 닫는 비율도 여자가 남자보다 8배나 큰 것으로 드러나 부업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고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가구주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이 비가구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점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하나이다. 1998년 5월 기준 가구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6.5%로 전년동월 대비 4.0%p가 떨어진데 비해 비가구주 여성의 그것은 45.0%로 1.7%p가 떨어졌을 뿐이다. 여성 가구주를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로 3분하여 살펴보면, 1998년 5월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그룹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절대수준이 가장 낮은 이혼·사별 그룹(4.9%p)이며 그 다음이 미혼(2.8%p), 유배우(1.7p%)이다. 한편 실업률 증가폭은 미혼(4.0%p), 이혼·사별(2.9%p), 유배우(1.7%p)의 순으로 낮아진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는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부 보고서는 1년혹은 반년 단위로 간행되므로 최근의 노동력 변화를 설명해주는 통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매월 조사 발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혼여성의 취업실태에 대해 몇 가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1997년 5월과 1998년 5월의 두 시점을 비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미혼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4.0%)이 비가구주 여성의 그것(1.7%)보다 크다.

둘째, 기혼여성가구주 중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이들의 실업률 증가폭(1.4%→4.3%)이 배우자가 있는 이들의 증가폭(1.5%→3.2%)보다 훨씬 크다.

셋째, 미혼 여성가구주의 실업률은 본래 높은 수준인데 최근들어 더욱 크게 늘고 있다(3.8%→7.8%). 이는 20대, 20대미만의 실업률이 최근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높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넷째, 여성 경제활동인구중 가장 숫자가 많은 기혼의 비가구주여성은 불황기에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로 바뀌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1998년 5월의 경제활동참가율(45.0%)은 1년전에 비해 1.7%가 하락한 수준일 뿐이다. 기혼 비가구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자영업주인 가구주를 보조하는 가족종사자로 취업중인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

서 근로자로 취업중인 이들로 한정하면 직장에서 밀려나 실망실업자로 바뀌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도 기혼여성의 취업실태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조사는 가구유형을 맞벌이, 노인, 모자, 일반, 무직의 다섯 가지 부류의 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맞벌이가구와 모자가구를 통해 기혼여성의 취업상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다. 분류기준에 의해 일반가구에도 취업중인 기혼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30] 소수이므로 여기서는 맞벌이가구와 모자가구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취업 패턴을 살펴본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부분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또 기혼여성 노동의 가계 기여도를 계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맞벌이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일반가구와 비교함으로써 기혼 여성의 취업이 가계 수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리한다.

<표 2-2> 취업자 변화 (종사상 지위별)

(단위:만명, %)

	1997.7	1998.7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전 체	2138.9	1999.9	-6.5
○ 비임금근로자	803.9	789.7	-1.8
- 자영업주	608.2	577.8	-5.0
- 무급가족종사자	195.7	212.0	8.3
○ 임금근로자	1334.9	1210.2	-9.3
- 상용직	709.8	638.5	-10.0
- 임시직	425.8	399.1	-6.3
- 일용직	199.4	172.7	-13.4
남 자	1258.1	1191.5	-5.3
○ 비임금근로자	446.9	444.2	-0.6
- 자영업주	427.7	420.8	-1.6
- 무급가족종사자	19.2	23.4	21.9
○ 임금근로자	811.2	747.3	-7.9
- 상용직	514.3	481.5	-6.4
- 임시직	188.4	176.3	-6.4
- 일용직	108.5	89.5	-17.5
여 자	880.8	808.4	-8.2
○ 비임금근로자	357.1	345.4	-3.3
- 자영업주	180.6	156.9	-13.1
- 무급가족종사자	176.5	188.5	6.8
○ 임금근로자	523.7	462.9	-11.6
- 상용직	195.5	157.0	-19.7
- 임시직	237.3	222.8	-6.1
- 일용직	90.9	83.1	-8.6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 맞벌이가구의 취업 특성

맞벌이가구의 취업특성을 정성적(定性的)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2-3>부터 <표 2-6>에 정리되어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 2,067 가구를 포함한 근로자가구 5,678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분석을 적용한 결과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속성에 대해 몇 가지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준다. 우리는 맞벌이가구를 '본격파'와 '부업파'의 두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본격파'는 배우자의 직업이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인 경우에는 전원, 그리고 직업이 사무직원, 서비스 담당, 기능직원, 조작공, 단순노무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주소득 대비 일정수준(가령 4할)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고학력 여성을 집중적으로 포함하는 '자아실현파'와 '생계차원의 취업불가피파' 가 섞이게 된다. 본격파를 이렇게 규정할 경우 '부업파'는 배우자 직업이 사무직원, 서비스 담당, 기능직원, 조작공, 단순노무자이면서 자신의 소득이 가구주소득의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로 규정된다[31]. 이같은 설정하에 얻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구주소득이 클수록 맞벌이가구 비율이 낮고 맞벌이가구안에서는 '부업파'일 가능성이 높고 '본격파'일 가능성이 낮다.

둘째, 가구주 학력이 배우자 학력보다 높고 그 차이가 클수록 맞벌이가구일 확률이 낮으며, 맞벌이가구안에서는 '부업파'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5세 이하의 자녀 특히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맞벌이에 나설 확률이 낮고, 맞벌이에 나설 경우 그녀는 부업파보다는 본격파일 가능성이 더 크다.

넷째, 60세 이상 가구원의 존재는 맞벌이 확률을 높이며 특히 부업파 맞벌이의 확률을 높여준다. 이들의 존재가 부업파 맞벌이 촉진 효과는 2세 이하 자녀의 존재가 맞벌이를 억제하는 효과의 절반 정도이다.

다섯째, 유아유치원생과 중등학생의 존재는 맞벌이 확률을 높이지만 초등학생의 존재는 불분명하다. 중등학생의 존재가 맞벌이를 촉진하는 효과는 유아유치원생의 존재가 미치는 효과의 배 정도이다.

여섯째, 교육비중 보충교육비 비율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본격파일 확률이 높다.

일곱째, 저축보유액이 클수록 맞벌이가구일 확률이 높고 특히 본격파일 가능성이 크다. 부채규모가 클수록 역시 맞벌이가구일 확률이 높으며 부업파일 가능성이 크다. 보유자산이 클수록 맞벌이일 가능성은 낮으며 특히 본격파일 확률이 낮다.

여덟째, 자가에 비해 무상주택과 사택에 사는 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낮다. 또 본격파이면서 사글세·월세에 살 확률도 낮다.

아홉째, 가구주 산업이 숙박음식업일 경우 가구주 산업이 서비스업일 경우에 비해 맞벌이 확률이 크게 낮다. 가구주 산업이 운수창고 통신업과 광업 제조업일 경우 가구주 산업이 서비스업일 경우에 비해 부업파 맞벌이 확률이 낮다.

열째, 부업파 맞벌이 확률이 높은 가구주 직업은 공무원, 회사원, 임시 일용노무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순이고, 공무원 가구의 배우자가 본격파 맞벌이에 나설 확률은 높지 않다. 본격파로 나서는 이들은 가구주 직업이 임시 및 일용노무자이거나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일 경우이다.

열한째, 맞벌이 확률과 거주지역(시부, 군부)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열째, 맞벌이 확률이 높은 배우자 연령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20대, 1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맞벌이에 나서는 '본격파' 가구의 전형적인 특성을 정리해보자. 가구주소득이 평균적인 가구주소득보다 높고, 5세 이하의 자녀와 초등학생이 없는 대신 중등학생이 있고, 저축과 부채의 보유액이 많고, 보유자산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으며, 가구주 직업이 임시 및 일용노무자 이거나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이며, 배우자 연령이 30대인 가구이다.

다음으로 맞벌이가구중 '부업파' 맞벌이가구일 확률이 높은 가구는 가구주 소득이 평균적인 가구주소득보다 낮고, 5세 이하의 자녀나 중등학생이 있고, 60세 이상 가구원이 있으며, 저축과 부채보유액이 평균보다 많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배우자 학력보다 높되 그 격차가 작으며, 가구주 직업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며, 배우자 연령이 30대인 가구이다.

<표 2-3>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특성 분석: 프로빗 분석

		전체	부업파	본격파	부업파-본격파
분석표본수	:	5596	4378	4755	2067
맞벌이가구(0)	:	2057	839	1216	839
일반가구(1)	:	3539	3539	3539	1218
Log Likelihood for NORMAL	:	- 3371.9	- 1925.8	- 2406.6	-1210.7

변수	추정계수치	Pr>Chi	추정계수치	Pr>Ch	추정계수치	Pr>Chi	추정계수치	Pr>Chi
절편	0.6241	0.0001	-1.1232	0.0001	1.0783	0.0001	-2.3994	0.0001
가구주소득/가구주소득 평균	-0.2970	0.0001	0.1109	0.0466	-0.6515	0.0001	0.9780	0.0001
2세 이하 자녀수	-0.5279	0.0001	-0.4762	0.0001	-0.5030	0.0001	0.0347	0.7268
3-5세 자녀수	-0.3007	0.0001	-0.2193	0.0001	-0.3328	0.0001	0.1399	0.1659
60세 이상 가구원수	0.1933	0.0055	0.0240	0.8048	0.2550	0.0012	-0.2473	0.0423
유아유치원생수	0.1083	0.0410	0.0875	0.1962	0.1071	0.0874	0.0010	0.9916
초등학생수	-0.0014	0.9699	0.0169	0.7168	-0.0128	0.7745	0.0512	0.3949
중등학생수	0.1740	0.0001	0.1404	0.0004	0.1915	0.0001	-0.0346	0.4838
보충교육비/교육비	-0.1554	0.3992	0.4615	0.0411	-0.5930	0.0076	0.9346	0.0019
저축보유액/저축보유액 평균	0.0817	0.0001	0.0929	0.0001	0.0595	0.0025	0.0344	0.3003
부채보유액/부채보유액 평균	0.0859	0.0001	0.0653	0.0001	0.0945	0.0001	-0.0213	0.2119
보유자산/보유자산 평균	-0.1331	0.0017	-0.3019	0.0017	-0.0100	0.8355	-0.3487	0.0001
남편학력/배우자학력	-0.2726	0.0001	0.0184	0.8039	-0.4723	0.0001	0.4858	0.0001
더미 변수								
무상주택·사택	-0.2506	0.0041	-0.3942	0.0006	-0.1386	0.1758	-0.2864	0.0766
전세	-0.0185	0.6908	-0.0185	0.3540	0.0092	0.8657	-0.0482	0.5401
보증부월세	0.1221	0.0977	0.1113	0.2304	0.1174	0.1781	-0.0466	0.6961
사글세·월세	-0.1066	0.2412	-0.3027	0.0126	0.0566	0.5892	-0.3106	0.0427
아파트	0.0060	0.9016	-0.1044	0.1021	0.0895	0.1151	-0.2050	0.0133
연립·다세대(빌라, 맨션)	0.0415	0.4987	0.0762	0.3291	0.0259	0.7202	0.0244	0.8105
기타	0.3668	0.0014	0.7089	0.0001	-0.0921	0.5614	0.8189	0.0001
농업·어업	-0.2229	0.1798	-0.2037	0.3613	-0.2122	0.2646	-0.0132	0.9612
광업·제조업	-0.0359	0.5170	0.0941	0.1939	-0.1251	0.0519	0.1398	0.1331
전기가스·수도·건설업	-0.0461	0.4953	0.0140	0.8716	-0.0925	0.2444	0.0649	0.5739
도소매업	0.0095	0.9017	0.0100	0.9238	0.0091	0.9170	-0.0662	0.6157
숙박·음식점업	-0.4073	0.0009	-0.5436	0.0037	-0.3214	0.0179	-0.3635	0.1525
운수창고·통신업	-0.1199	0.0965	0.0769	0.3846	-0.2728	0.0022	0.4026	0.0007
공무원외사무종사자(가구주)	-0.0626	0.3414	0.0808	0.3676	-0.1342	0.0740	0.2424	0.0306
기능공및상용노무자(가구주)	-0.0469	0.5070	0.2752	0.0033	-0.2770	0.0008	0.6235	0.0001
임시및일용노무자(가구주)	0.0072	0.9372	0.3036	0.0104	-0.1941	0.0706	0.5457	0.0003
군부 지역(거주지역)	0.0093	0.8340	0.0669	0.2364	-0.0385	0.4643	0.0595	0.4155
20세 미만(배우자)	-0.3215	0.4519	-0.0793	0.8909	-0.6055	0.2295	0.6401	0.4664
30세 미만(배우자)	-0.1188	0.0461	-0.1653	0.0424	-0.1067	0.1192	-0.0880	0.4190
50세 미만(배우자)	-0.0466	0.4216	0.0426	0.5619	-0.1006	0.1391	0.1154	0.1937
60세 미만(배우자)	-0.5226	0.0001	-0.3019	0.0020	-0.6431	0.0001	0.3552	0.0084
60세 이상(배우자)	-0.9549	0.0001	-0.6878	0.0127	-1.0628	0.0001	0.5205	0.1753
2세대 가구	-0.1385	0.0399	0.1421	0.1146	-0.2461	0.0009	0.3940	0.0006
3세대 이상 가구	-0.1584	0.1586	0.0749	0.6215	-0.2110	0.1030	0.3652	0.0610

주 : 더미변수의 기준값은 자가, 단독주택, 서비스업, 공무원, 시부 지역, 30대, 1세대 가구임

Ⅲ.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과 가구간 경제력 격차의 변화

우리의 경우 전통적으로 맞벌이는 남자 혼자서 가계를 꾸려 가기 힘든 가정에서 곧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해 왔다. 실제로 가구주 소득만을 비교하면 맞벌이가구가 일반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을 기록해 왔다. 즉 맞벌이는 남편인 가구주 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가정에서 배우자가 생활비 조달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주류였다. 따라서 맞벌이는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이같은 전통적인 인식에 의문부를 달도록 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더라도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가구주 1인만이 버는 일반가구에 비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분석 결과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실직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자영업자인 배우자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32].

1. 개요

대부분의 근로자가구는 일반가구이거나 맞벌이가구이다. 두 가지 유형외에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조사대상 근로자가구의 2.2%와 1.8%를 점하고 있지만 일반가구(68.6%)와 맞벌이가구(27.5%)가 전체의 96.1%를 차지하여 대종을 이룬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가 취업한 가구를 지칭하며, 부부가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가구를 제외한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취업가구와 부부외에 기타가구원까지 취업한 가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반가구는 가구원의 취업유형에 따라 네 가지 곧 가구주만 취업한 가구, 가구주 및 배우자 취업 가구(맞벌이가구에서 제외된 가구), 가구주 및 기타가구원 취업 가구, 기타가구원만 취업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33].

<표 2-4>는 이상에서 규정된 정의에 따라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에서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이 실직할 경우 가계수지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 일정 가정하에 계산된 숫치를 보여주고 있다. 양 가구의 경제력을 비교해보자. 맞벌이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41.6% 높지만 소비지출은 23.7%가 높을 뿐이다. 저축여력이 큰 만큼 보유저축액이 21.3%, 보유자산이 11.4%가 더 높다. 저축에 비해 보유자산의 차이폭이 작은 것은 맞벌이가구가 비교적 젊은 세대에 많고, 또 일반가구중에도 과거 맞벌이를 통

해 일정 소득을 벌어 재산을 축적한 다음 맞벌이를 그만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저축보유액은 금융자산잔고, 보유자산은 금융자산잔고에 거주용부동산의 평가액[34]을 더한 값이다.

요컨대 평균적으로 보면 맞벌이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소득, 자산의 양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맞벌이가구의 배우자가 실직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득 우위가 깨지느냐 유지되느냐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우위는 이 경우에도 유지된다. 즉 맞벌이가구의 배우자가 실업할 경우 소득이 172.1만원을 기록하여 일반가구의 163.2만보다 9만원 정도 더 높고, 가계수지도 월 47만의 흑자를 보여 저축보유액이 오히려 축적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35].

<표 2-4> 가구원 실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근로자가구,가구유형별)

(단위:만원)

가구 유형	일반가구	맞벌이가구
표본수(개)	10154	4062
월평균 소득	163.2	231.3
월평균 소비지출	109.6	135.6
저축보유액(평균)	1433.2	1737.8
보유자산(평균)	6670.6	7429.4
가구주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33.4	97.2
조정소비지출	81.6	118.8
가계수지	-48.2	-21.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0	-81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38	-345
배우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62.2	172.1
조정소비지출	101.9	124.4
가계수지	60.2	47.6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24	36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11	156
기타가구원 100% 실직시		
실직후 소득	147.7	219.9
조정소비지출	101.2	126.8
가계수지	46.3	93.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1	19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144	80

2. 소득계층별

앞에서 평균적으로는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직시에도 소득수준이 일반가구의 소득수준을 넘어선다고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맞벌이가구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여러 측면에서 속성이 다른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배우자 학력이 높은 맞벌이가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가 수긍이 갈 수 있겠지만, 남편의 소득이 낮아 생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가 취업에 나선 가구라면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아마도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는 중저소득층에서 양 가구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다르며, 배우자의 실직이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본다.

<표 2-5>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직시 소득수준이 일반가구의 소득을 밑도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 실직시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제1분위에서 54.9만원으로 일반가구 78.2만원의 70.2%, 2분위는 87.0만원으로 일반가구 123.8만원의 70.3%, 제3분위는 118.4만원으로 일반가구 161.3만원의 73.4%를 보이고 있다. 즉 중저소득층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직은 일반가구와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일반가구의 그것보다 별로 높지 않은데 기인한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수준이 일반가구의 그것보다 41.6%가 높지만 제1분위 9.6%, 제2분위 2.0%, 제3분위 1.7%가 높은 것에 불과하다. 즉 제5분위의 고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득수준이 일반가구의 그것보다 월등히 커서 이것이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표 2-5> 가구원 실업 효과의 가구유형별 비교

(근로자가구, 소득기준 하위 60%)

(단위:만원)

소득 계층 / 가구유형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표본수(개)	2427	142	2466	430	2085	834
월평균 소득	78.2	85.7	123.8	126.3	161.3	164.1
월평균 소비지출	64.8	68.2	88.1	90.5	110.7	104.4
저축보유액(평균)	611.9	577.9	985.6	829.0	1366.6	1095.3
보유자산(평균)						
가구주 100% 실업시	3642.8	4046.4	5426.5	4880.4	6885.5	5453.5
실업후 소득	6.8	32.9	15.2	46.8	26.4	60.4
조정소비지출	49.3	64.9	66.0	81.0	77.4	93.8
가계수지	−42.6	−32.0	−50.8	−34.2	−51.1	−33.4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14	−18	−19	−24	−27	−3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85	−126	−107	−143	−135	−163
배우자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77.8	54.9	123.1	87.0	160.3	118.4
조정소비지출	59.7	66.3	82.6	83.8	103.4	97.5
가계수지	18.0	16.1	40.5	3.2	56.9	21.0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4	37	24	259	24	53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02	225	134	1526	121	260
기타가구원 100% 실업시						
실업후 소득	76.4	85.2	116.9	124.0	148.0	159.5
조정소비지출	59.6	67.0	82.3	85.2	102.5	99.0
가계수지	16.7	18.2	34.6	38.8	45.5	60.5
저축보유액/가계수지(월)	37	32	28	21	30	18
보유자산 /가계수지 (월)	218	223	157	126	151	90

출처 : 필자계산

3. 연령별·부부학력별

<표 2-6>는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을 연령별, 부부학력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의미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실직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일반가구의 그것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즉 96년 시점에서 배우자 취업은 맞벌이가구와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가구와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 실직시의 가구소득과 일반가구 소득의 차를 일반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 d 값은 대졸-대졸, 대졸-고졸, 고졸-고졸 부부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30대 미만, 30대, 40대에서 최대 ±10%, 50대에서 최대 ±15%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60대 이상에서는 c 값이 많은 학력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d 값은 최대 -61%까지 커진다. 389개 표본에 입각해 얻은 결과는 대졸-고졸, 고하-고하를 제외한 나머지 학력에 서 맞벌이가구 소득이 일반가구 소득보다 낮아 c 값이 마이너스를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 실직시에는 이들 가구를 포함하여 그 격차 즉 d 값이 최저 17%에서 최고 61%까지 확대된다[36]. 표본수가 적기는 하지만 맞벌이가구 표본비율 32.1%는 30대 미만(28.7%)보다 높고 30대(32.6%), 40대(45.7%), 50대(36.4%)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벌이가구의 특징을 나름대로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구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60대 이상 세대의 맞벌이가구의 경제력이 취약한 것은 이들 연령 계층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연령층에서 근로자가구로 취업중인 세대는 교직자, 고급관리자 등과 같이 연공 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가구이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산성 이하의 임금으로라도 취업해야 하는 서민가구로 양 가구의 급여수준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오늘의 60세 이상 세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양극화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 20, 30년전의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일반가구중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가구가 많은 반면 맞벌이가구중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부가 함께 뛰어야 하는 서민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학력 여성배우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던 당시, 대부분을 점하는 저학력 여성배우자들이 취업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은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정리하면 <표 2-6>에서 얻어진 결과는 최근의 맞벌이가구는 거의 대부분의 학력에서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우월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배우자 실직은 가구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60세 이상 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제력이 약한 맞벌이가구' 라는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이미지로서, 지난 20, 30년 사이에 맞벌이가구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오늘의 60세 이상 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 가구의 특징과 유사한 모습을 20, 30년전의 양 가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된 고졸-고하, 고하-고하, 고하-고졸 부부의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할 경우에도 맞벌이가 양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주장은 들어맞는다. 맞벌이가구의 경제력 우위는 최대 기준으로 30대 미만 31%, 30대 39%, 40대 29%, 50대 56% 이며, 배우자 실직시의 경제력 열위는 최대 기준으로 30대 미만 30%, 30대 4%, 40대 11%, 50대 8% 이다. 즉 30대, 40대, 50대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있어 서도 맞벌이는 양 가구간의 경제력을 벌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 30대 미만에서는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실직에 따라 경제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축소된 남녀간 임금격차, 높은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중 등이 이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60세 이상에서는 위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언급한 사항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저소득층 노령가구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 격차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계층은 대졸-대졸 부부이다. 60대 이상 -31%, 50대 34.1%, 40대 40.0%, 30대 41.8%, 30대 미만 52.4%로 커지고 있다. 대졸-고졸, 고졸-고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고학력의 사장화' 현상이 희석되고 있다.

다섯째, 맞벌이가 가구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현상은 연령별 보유자산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간의 보유자산 차액을 맞벌이가구 월소득으로 나눈 값인 b 값은 대졸-고졸 부부의 경우, 60대 이상(-20.6%) 50대(-4.3%), 40대(0.8%), 30대(6.8%), 30대 미만(14.5%)으로 내려오면서 커지고 있다. 숫자가 가장 많은 고졸-고졸 부부는 30대를 제외한 계층에서, 대졸-대졸 부부는 40대를 제외한 계층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또 저소득층을 다수 포함하는 고졸-고하 부부에서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맞벌이가구의 보유자산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여성의 고학력이 취업을 통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는 학력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대졸은 나이들수록 효과가 커지는 반면, 고졸은 나이들수록 작아지다가 50대에서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대졸-대졸 부부와 대졸-고졸 부부간 격차는 30대 미만 29.9만원, 30대 30.7만

원, 40대 42.6만원, 50대 105.8만원으로 나이들수록 커지지만[37], 고졸-고졸 부부와 고졸-고하 부부간 격차는 30대 미만 11.0만원, 30대 3.9만원, 40대 2.6만원, 50대 18.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에 비해 고졸 학력은 임금격차를 크게 유발시키지 않으며 30대와 40대의 낮은 임금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제 근무 등 근로환경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의할 점은 대졸의 취업확률이 고졸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고학력의 경제력 증대에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업확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의 기술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곱째, "나이들어서 맞벌이하는 가구는 경제력이 약한 가구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중년 이상의 세대인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대졸-대졸, 대졸-고졸, 고졸-고졸, 고졸-고하 등의 주요 학력에서 b 값이 거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들 가구들이 30대 미만, 30대 이후 맞벌이를 지속적으로 행해온 가구인지, 나이들어 맞벌이를 재개하거나 새로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이상의 논의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다만 유념할 점은 조사 시점에서 일반가구였던 가구 중 과거 맞벌이가구였던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가구유형에만 의존하여 양 가구의 경제력 격차를 설명하려는 시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표 2-6> 연령별·부부학력별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 비교

단위 : 만원

연령별	부부학력별 남편-아내	저축보유액 맞벌이	저축보유액 일반	보유자산 맞벌이	보유자산 일반	맞벌이 월소득	a 월	b 월	c %	d %	표본수(개) 맞벌이	표본수(개) 일반	표본수(개) 계
30대 미만	대졸-대졸	1312.8	1539.2	9999.8	9486.4	101.7	-2.2	5.0	52.4	-5.7	46	65	111
	대졸-고졸	1127.8	1048.5	7628.9	6586.1	71.8	1.1	14.5	37.2	-8.4	32	81	113
	고졸-대졸	1056.7	1584.6	6485.7	7786.4	75.0	-7.0	-17.4	87.3	23.9	14	11	25
	고졸-고졸	1099.7	946.3	5270.2	5538.7	69.2	2.2	-3.9	36.3	-10.4	242	645	887
	고졸-고하	1155.6	518.0	3622.3	3140.9	58.2	10.9	8.3	18.8	-30.3	9	42	51
	고하-고졸	670.7	477.3	2150.2	2970.9	61.8	3.1	-13.3	30.6	-20.7	11	42	53
	고하-고하	500.2	683.7	2577.2	3414.8	54.2	-3.4	-15.5	25.2	-19.9	13	26	39
											368	913	1281
30대	대졸-대졸	2655.7	2352.1	10377.9	11505.7	102.6	3.0	-11.0	41.8	-6.7	220	353	573
	대졸-고졸	2648.0	1881.1	9444.3	8955.9	71.9	10.7	6.8	48.0	8.9	200	496	696
	고졸-대졸	1847.4	2411.1	6855.0	8813.3	96.0	-5.9	-20.4	47.2	-7.9	25	27	52
	고졸-고졸	1707.6	1353.0	6967.0	6736.7	53.9	6.5	4.3	38.6	4.8	650	1508	2158
	고졸-고하	1261.5	1034.4	5710.3	5571.1	50.0	4.5	2.8	30.5	-3.0	146	241	387
	고하-고졸	1143.7	947.9	4381.6	4510.8	50.7	3.9	-2.5	39.0	4.3	43	105	148
	고하-고하	1301.3	875.8	5177.8	4320.0	49.8	8.5	17.2	33.8	-2.5	160	262	422
											1447	2998	4445
40대	대졸-대졸	2684.0	3360.8	13920.5	14108.6	119.1	-5.7	-1.6	40.0	-2.3	61	102	163
	대졸-고졸	3011.3	2786.3	12067.8	12008.6	76.5	2.9	0.8	35.8	3.9	104	215	319
	고졸-대졸	35844.9	2070.8	43594.9	9439.5	96.0	351.8	355.8	27.4	-11.7	3	16	19
	고졸-고졸	1951.3	1980.6	8216.3	8639.7	52.7	-0.6	-8.0	27.0	-1.1	379	506	885
	고졸-고하	1480.1	2019.8	7088.8	8618.3	50.1	-10.8	-30.5	15.7	-10.9	264	257	521
	고하-고졸	1334.1	2284.8	6082.3	7425.1	48.6	-19.6	-27.7	26.0	-4.0	42	74	116
	고하-고하	1332.1	1156.0	6192.5	5210.1	46.6	3.8	21.1	29.0	-2.0	520	451	971
											1377	1636	3013
50대	대졸-대졸	2553.5	3506.2	12879.4	16534.2	170.2	-5.6	-21.5	34.1	-14.7	19	41	60
	대졸-고졸	2781.1	2837.1	12782.3	13061.0	64.4	-0.9	-4.3	37.3	14.7	43	113	156
	고졸-대졸	3849.0	1691.5	12849.0	9341.4	51.4	42.0	68.2	53.0	28.1	3	5	8
	고졸-고졸	2387.9	2275.3	9003.4	9891.0	60.6	1.9	-14.6	30.0	3.3	63	125	188
	고졸-고하	1705.2	2324.1	7395.9	9185.2	42.4	-14.6	-42.2	10.8	-7.6	155	283	438
	고하-고졸	1504.3	1200.2	6135.6	7265.8	68.4	4.4	-16.5	56.0	7.6	20	24	44
	고하-고하	1668.6	1536.8	7157.1	6802.4	52.1	2.5	6.8	22.6	-5.7	349	522	871
											659	1149	1808
60대 이상	대졸-대졸	3083.1	2993.1	8708.1	21980.6	105.2	0.9	-126.1	-30.6	-60.5	4	12	16
	대졸-고졸	2292.6	4652.1	11617.6	14823.3	156.0	-15.1	-20.6	8.6	-37.2	6	26	32
	고졸-대졸	.	2595.5	.	9795.5	.					-	1	1
	고졸-고졸	1146.9	2912.6	2706.9	10395.0	.	.	.	14.3	14.3	5	17	22
	고졸-고하	1122.0	2906.3	7857.7	9605.4	36.5	-48.9	-47.9	-32.5	-47.6	21	56	77
	고하-고졸	722.8	752.8	2222.8	7752.8	55.0	-0.5	-100.5	-24.2	-55.3	1	3	4
	고하-고하	1103.5	1333.3	6801.7	6480.5	45.5	-5.1	7.1	2.5	-23.3	85	130	215
											125	264	389
											3976	6960	10936

주 : a = (맞벌이가구 저축보유액 - 일반가구 저축보유액)/맞벌이가구 월소득
b = (맞벌이가구 보유자산 - 일반가구 보유자산)/맞벌이가구 월소득
c = (맞벌이가구 월소득 - 일반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 100
d = (맞벌이가구 배우자 실직시 월소득 - 일반가구 월소득)/일반가구 월소득* 100

Ⅳ. 결론

현재 진행중인 기혼여성의 급속한 노동시장 퇴출 현상으로 중저소득층 맞벌이가구의 소득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퇴출 압력에서 벗어나 있는 다수의 일반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기혼여성 근로자에 비해 중저학력 기혼여성 근로자의 실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직으로 빚어지는 중저소득층 맞벌이가구의 경제력 약화 현상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맞벌이는 가구간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 전자는 제5분위의 고소득층에 한정되는 얘기로 중저소득층에서는 후자가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저소득층에서는 부부가 맞벌이에 나서야만 일반가구의 소득수준에 필적할만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근로자인 배우자의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만을 반영하고, 자영업자인 배우자의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 즉 사업 및 부업소득 중 배우자 기여분의 감소를 감안하지 못했다. 이것까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중저소득층 가구에서는 배우자의 실업으로 일반가구와의 소득격차가 우리가 제시한 값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을 엄밀히 고려하여 배우자 실업에 따른 파급효과의 크기를 계측해내는 작업이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노동부 『제27회 노동통계연감』 1997.
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디지털 조선일보, 중앙일보 외.
양세정「취업주부의 가계경제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요인」『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 변화와 추이』통계청, 1998, pp. 107-141.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 1998.
----- 홈페이지 보도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제3부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 추계

Ⅰ. 문제의 제기

정부는 1999년 상반기에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 입법 심의중에 있다. 예정대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5인 이상 사업장의 도시 근로자와 농어민에 도시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도시 자영업자 등 배우자 계층을 제외한 거의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 확대는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과제의 하나였다.

그 동안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 번에 8백만이 넘는 가입대상자가 한꺼번에 국민연금의 제도권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으로 확보한 8백만명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문제는 이들 신규 가입 예정자들의 3/4에 달하는 6백만이 넘는 이들이 기존 가입자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제 때 징수하여 연금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과 달리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이 30년 넘게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강구해 보았지만 실제 소득을 알아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주관하는 지역 의보조합 역시 10여년간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소득 및 소득 수준에 준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크게 불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처럼 제도 운영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인 “소득파악“이 현 단계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제도의 정착은 커녕 출발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1999년 상반기에는 기필고 적용 대상의 확대를 밀어부칠 심산으로 있다. 이를 위해 1998년초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해 봄으로써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본 고에서 우리는 신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 확대 사업“ 의 관건인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찾아본다. 즉 대상자가 자신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보유 자산, 그리고 소비지출 등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같은 목적하에 우리는 통계청이 조사한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실태에 관한 정보를 월간소득외에 연간소득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연간소득에 관한 정보만을 파악,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제반 가구특성 변수 및 월간소득과 연간소득을 이용하여 소득함수를 추정하고, 자영업자 가구는 연간소득만을 이용하여 소득함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얻어진 양 가구의 소득 추계식을 토대로 현실에 있어서의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추계식을 조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가령 고려가능한 대표적인 변수로 "사업계속연수"와 "종업원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들 변수에 대한 정보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업계속연수"는 대리변수로 "금융부채의 구성 비율" 등 몇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대응하고, "종업원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38].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소득 추정함수는 연금 당국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소득 추계 방식에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연금당국의 노력으로 훨씬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본 고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추정한 소득을 미세 조정하는 노력이 곁들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하 Ⅱ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작업이 왜 필요한 지를 검토하고, Ⅲ절에서 도시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우리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Ⅳ절에서 적용 확대 대상의 주된 계층인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계하는 우리의 방법을 설명하고, Ⅴ절에서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기술한다.

Ⅱ.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1.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은 1988년 1월에 도입되어 1997년 8월말 기준으로 7백 9십만명의 가입자를 지닌 국내에서 가장 큰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공적연금은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우리 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98년 4월 기준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대상은 1988년 도입당시의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1992년 1월부터 적용된 5～9인 사업장 근로자, 1995년 7월부터 적용된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업자가 추가되었다. 당국은 1999년도 상반기부터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다. 계획대로라면 도시지역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까지 확대되어 약 8백만명이 새롭게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 계층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국민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788만 1천명으로 사업장근로자와 농어촌가입자 등 당연적용대상자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일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표 3-1>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1997년 8월 기준)

연금 가입자			연금수급자[1)]
사업장 근로자	농어촌자영자	기타	
5,665	2,075	142	123

주: 1) 특례노령, 유족, 장해연금수급자의 합임.
자료: 국민연금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아 계획된 연금 급부를 충당할 만한 재정규모가 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이 불안하게 되어 있는 점이다. 2002년까지는 국민연금의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을 축적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003년 이후부터는 기금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이후 30여년이 경과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9)].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 수준은 낮은 반면 연금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40)].

또 인구의 소자녀화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진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청장년층이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2>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단위: 조원, 1993년 불변가격)

구 분	2008년 (만액 노령연금 지급개시)	2025년 (당년 수지 적자)	2033년 (적립기금 고갈)
총 수 입	30	61	55
총 지 출	7	64	131
적 립 금	150	328	완전 고갈

주: 총수입= 보험료수입+이자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및 반환일시금 지출

둘째, 그렇지 않아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그룹이 다수라는 점이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계층, 농어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가입 대상자의 50% 이상을 점하는 계층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높은 근로자 계층이 같은 세대의 저소득 근로자외에 농어민, 도시 자영업자 계층까지 지원해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 뿐아니다. 후대의 연금 가입자들이 선대의 가입자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 강한데 이 때도 후대의 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 근로자 계층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농어민 보험료 부과 실태와 문제점

1995년 7월에 도입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민연금은 시행후 3년여가 경과하고 있지만 정착의 징조를 보이기 보다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격 취득과 소득의 자진 신고율이 낮고, 신고한 사람이나 강제로 가입시킨 사람들도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 미납자, 체납자 등 비협조적인 가입(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가. 저조한 자격취득 신고율와 불성실한 소득 신고

가입대상자의 자격 취득에 대한 자진 신고율이 낮고 소득 신고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입 대상자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가 조기에 시정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의 중장기적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농어민 가입자의 자격 취득 자진신고율은 5%를 밑돌고 있으며, 이같은 현실은 매월 4 ~ 5만 명에 달하는 신규가입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징수담당 일선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권가입 조치로 겨우 가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 취득 신고율도 낮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들이 신고하는 소득이나 연금관리공단이 파악하는 소득이 실제 소득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다.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민의 실제 소득은 사업장 근로자의 9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파악하는 소득은 사업장 가입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층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은퇴기에 저소득 자영업자층을 지원해주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할 것이다.

<표 3-3>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소득 구분	사업장 근로자(a)	농어촌 자영자(b)	b/a
국민연금 부과기준 월소득(1996)	121.5만원	56.7만원	46.7%
월평균 소득 (1995))	191.1만원	181.7만원	95.1%

주: 사업장근로자는 「도시가계연보」의 도시 근로자가구, 농어촌 자영업자는 「농가경제통계」의 농가구를 지칭.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1996,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1996.

국세청은 30년이 넘는 징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영업자의 과세대상 소득을 실제소득의 25-3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파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1995년도의 농어민에 대한 연금 적용 확대시 경험했던 사실은 소득 파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시켜 주고 있다. 이 때 일제신고시의 소득신고는 대부분 동장, 통장, 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가입대상자를 호별 방문하여 소득기준이 아닌 “원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최저 등급인 1 ~ 2 등급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었다.

나. 낮은 보험료 징수율

인원 기준 징수율 51.5%와 금액 기준 징수율 71.3%는 결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마저도 해가 감에 따라 더욱 떨어지고 특히 IMF 한파가 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미납시 체납 처분으로 강

제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미징수자가 백만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 현황(1998년 1월말 기준)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아주 낮다.

<표 3-4> 농어촌 지역 보험료 부과와 징수 현황

(단위 : 만명,억원)

고 지		징 수		징수율		미징수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11.7만	7,910억	109.0만	5,645억	51.5%	71.3%	102.7만	2,265억

농어촌 지역 국민연금의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납자·체납자의 도미노 현상“이 도입예정인 도시 자영업자 국민연금에서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우리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일부가 비협조자로 돌아서면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도시지역 자영업자 보험료 부과시의 예상 문제점

정부는 1999년 상반기 이후 도시 자영업자 계층을 포함한 8백만이 넘는 미적용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여, 사실상 전국민을 공적 연금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연금 방식은 기존의 농어촌 지역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연금과 동일한 방식인 기초부분과 보수비례 부분이 하나로 통합된 연금 방식이다. 즉 연금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되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별도의 법 규정에 의거해 납부하는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첫째, 신규 적용 대상인 도시 자영업자와 5인 이하 사업장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자보다 매우 낮다[41]. 게다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쯤 되면 거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 적용 대상 그룹에서 과표양성화율이 낮은 것은 이들의 고용주는 소득과 고용인원을 과소보고하여 외형과 신고소득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해가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 행정 체계의 비능률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도시 자영업자 적용 확대에 따른 연금 행정 체계의 재정비에 따라 인력 및 예산 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즉 도시 자영업자 적용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력과 소요 예산의 증대로 나타날 터인데, 관리가 부실하면서 관리비까지 많이 소요되는 가입자 계층이 기존의 농어촌 지역 가입자에서 그보다 몇 배로 늘어남에 따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가 지난(至難)해질 것이다. 그동안 의료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 행정의 비능률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 약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바 있으며, 의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연금의 행정 능률마저 도시 자영업자 적용 확대로 급속히 악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연금 적용대상을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전체 예산 지출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경상비 지출보다 투자비 지출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회 보험 분야의 종사 인력 증대와 관련 예산 지출의 증대가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의료보험 업무의 재조정으로 의보조합 인력이 남아도는 것과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 확대는 완전 별개의 문제로 이 둘을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즉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 확대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전국민의 후생 증진이 주된 목적인 반면, 의보조합 인력의 재배치는 의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회보험의 비능률 제거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전자는 후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효과를 안겨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보조합 인력의 남아도는 인력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명분하에 도시 자영업자 적용 확대를 밀어부치는 것은, 부실사인 A가 살아남기 위해 정리한 상대적으로 무능한 인력을 인수하여 그룹내 계열 B사가 사업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다섯째, 정부 부문이니까 이같은 무책임한 일이 '국민 후생 증진'이라는 미명아래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시대착오적 발상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간의 국내외 연구 결과는 우리 방식과 같은 형태의 국민 연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보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국민 연금 제도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 도시 자영업자가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납부할 경우, 결과적으로 은퇴기의 연급 수급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들이 부성실한 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세 등 세제를 통해 사실상 자영업자 계층을 지

원해주고 있음을 아는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또 다시 자영업자 계층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다볼 경우, 전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42]. 실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등은 소득파악 문제에 대한 해법없이 국민연금법 개정시,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의 전개를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소득재분배가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산식이 균등분과 소득비례분으로 나뉘어져, 균등분은 연금수급자의 퇴직시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소득비례부분은 연금수급자의 연금가입 기간중의 평균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균등분의 비중이 높아 연금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를 의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연금급여 산식이 현행처럼 유지되면서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되면 소득재분배가 거꾸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곱째, '납부예외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이들이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연금 재정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게 되면서 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법상 가입은 하되 무소득 기간중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자로 1997년말 기준 47만여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업자이지만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현실에서 취업자까지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부실로 연결되고 있다.

Ⅲ. 도시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문제점

앞 절의 논의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신규 적용 대상자의 주된 부류인 도시 자영업자 계층의 소득 과소신고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4절에서 논의예정인 소득추계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분석 방법과 결과를 살펴본 다음 우리의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기존 연구와 비교, 검토한다.

1. 기존 연구와 논쟁의 포인트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세청이 징세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조금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그만큼 뿌리가 깊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문제는 조세 실무자와 의료보험 실무자들에 의해 나름대로 소득 파악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강구되어 왔지만, 학문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몇 안되는 연구도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지 않다. 집계된 자료를 이용한 Choo and Yoon (1984), Kim and Ahn (1987) 등이 초기의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미시자료를 이용한 Yoo and Na (1991), 현진권·나성린(1994), 현진권 외(1997), 배준호·홍충기(1998) 등이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근로자 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해 이를 이용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진권 외(1997)는 이 방법 외에 보유자산과 인적자본을 이용한 소득 추계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배준호·홍충기(1998)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자영업자들의 소비 행태가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즉, 두 집단간의 평균소비성향의 차이는 없다“ 라고 가정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또 현진권 외(1997)는 이같은 가정을 소비함수 분석을 통해 입증하려 하고 있다. 사실 이 가정은 그동안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현실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대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같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함수가 달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가 가구와 상이한 한계소비성향을 지니는 소비함수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한 연구가 배준호·홍충기(1998)이다. 이들은 대우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자 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양 가구간의 한계소비성향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고, 이 차이를 도시가계조사에 응용하여 도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같은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 수준과 분포를 조사한 현진권·나성린(1994)과 비교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우패널 데이터에서는 도시가계조사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데이터의 신뢰도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91년에 이어 1996년에 조사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와 대우패널보다 표본수가 4배 이상 크고 농어촌의 비농어가 가구까지를 포함하는 점에서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의 표본 대표성이 위의 두 조사보다 더 높다. 그런데 이 조사는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연간소득을 조사, 기록하고 있다. 양 가구의 소비함수 추정 결과에 의하면 두 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탄력성이 근로자 가구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43].

양 가구의 소비함수가 달라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직업의 안정도, 소득의 안정도, 노후의 소득 발생 여부와 그 규모 등에 있어 양 가구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앞의 두 가지 면에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노후의 소득 발생 여부와 규모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즉 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자영업자라면 자신과 가족 구성원수 등 기타 여건이 같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을 줄여 다음기의 직업 불안정, 소득 불안정, 나아가서는 노후 소득 마련에 대비할 것이다[44]. 이같은 행동은 단년도 소비함수식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진권 외(1997)은 배준호·홍충기(1998)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함수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진권·나성린(1994)이 사용한 것과 같은 소비함수를 이용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배준호·홍충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보고된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은 본래적으로 과소 신고되는 소득이므로 이를 감안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소비함수의 추정치가 하향 추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해 귀무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소비함수를 구별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근로자 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해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

법인 “소비지출접근법“이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함수를 추정해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치밀하지 못해,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함수를 구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그들 주장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치밀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소비함수의 정식화 과정과 이용 자료의 가공 과정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 배준호·홍충기(1998)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모호한 점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소 신고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무시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체계적인 요인“에 의해 과소 신고되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 요인을 소비함수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인 “소득변수 추정계수의 하향 추정“과 추정치가 최량의 불편추정량이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소득 추정 계수가 하향 추정되는 것은 소득과 “체계적인 요인“ 이 부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 요인이 변수로서 고려되지 못하고 교란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소득의 전반적인 과소 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는 소득 변수의 추정치의 과다 추정이다. 즉 체계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과소 추정 효과와 더불어 함께 고려되었어야 했다. 결국 이들이 제기한 “과소신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소득 변수의 추정치를 구하고 있는 배준호·홍충기의 소득 변수 추정치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은 문제의 한 측면만을 포착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요인에 의해 조사 자료(대우 패널)의 자영업자 소득이 기록되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2.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추정 방법 : 소비지출 접근법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1)식의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추정식은 다른 추정식과 비교, 검토한 결과 설명력이 가장 높은 식으로 판명되어 선택하였다. 이어서 대우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1)식의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대우패널의 경우 자영업자의 조사된 소득이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의 조사된 소득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되므로[45] 이를 사용해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먼저 도시가계조사 근로자 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시 표본을 전 가구로 하는 경우와 가구주연령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는[46] 두 경우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근로자가구 소비함수의 월소득 변수의 추정계수로부터 한계소비성향 c_1^W을 얻는다. 이어서 대우패널의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도 동일한 작업을 적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월소득 변수의 추정계수인 한계소비성향 c_2^W, c_2^S 를 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 가구의 한계소비성향 c_1^S 를 $c_1^W * c_2^S / c_2^W$ 로 가정한다. 즉 대우패널에서 제시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도시가계조사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가정이 필요한 것은 도시가계조사가 자영업자 소득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소득 변수의 추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추정치는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치를 그대로 이용한다.

또 표본을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해 이 함수의 월소득변수의 추정치에도 동일한 작업을 적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구해낼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한 소비함수를 기본모형으로 사용하고 전체가구에 대한 소비함수를 감응도 분석 차원의 보조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식 (1)에 의한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식 (2)의 소비함수를 추정해 보았으나 우리는 식 (1)의 소비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식 (2)의 로그함수의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을 뿐아니라 소득 탄력치인 C_1 ~ C_3와 가구원수의 추정계수치에 따라 추정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1)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_1 + b_2 N_2 + b_3 N_3 + b_4 N_4 + b_5 N_5 + b_6 N_6 + c_1 Y + c_2 D_2 Y + c_3 D_3 Y$$

C는 월 소비지출, D_2 는 전세더미, D_3 는 월세더미, N은 가구원수로 N_1은 5세 이하, N_2는 6세~13세 이하, N_3는 14~19세 이하, N_4는 20세~29세 이하, N_5는 30세~59세 이하, N_6는 60세 이상, Y는 월 총소득(세 포함)[47]을 지칭한다.

(2) $$\ln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_1 + b_2 N_2 + b_3 N_3 + b_4 N_4 + b_5 N_5 + b_6 N_6 + c_1 \ln Y + c_2 D_2 \ln Y + c_3 D_3 \ln Y$$

우리의 분석이 현진권·나성린과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규모 추정시 도시가계조사 외에 대우패널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들의 연구가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치 일치' 가정을 완화시키고 있다. 즉 대우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자와 자영

업자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서 얻어진 양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의 비율이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둘째, 실제 조사된 자료만을 이용할 뿐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을 가중작업을 통해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이들은 가구원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약 590만 가구의 모집단을 고려하여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을 추가하는 가중작업을 시도한다. 그 결과 고소득층의 대부분을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의 대부분을 근로자가 점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 등 세부담액 계산시 추계치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분석대상 세부담에 소득세, 부가가치세외에 가계가 부담하는 기타직접세, 기타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섯째, 자영업자 소득의 추정에 이용하는 근로자 소비함수의 추정식에 로그함수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식을 응용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분석방법상 로그함수의 추정 계수인 탄력치에 따라 소득의 추정치가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 관측치를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인 가구와 40세 이상인 가구로 나누어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여섯째, 자가, 전세, 월세의 주거형태 더미변수를 고려하기에 앞서 관측치를 월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전세, 월세거주자 중 일부를 자가거주자로 조정한다. 이는 전세, 월세거주자 중 일정수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거형태와 소득 및 소비의 상호관계를 높여주기 위함이다.

일곱째, 가구원수 변수를 연령에 따라 6등분하여 라이프사이클별로 상이한 소비지출을 반영시키고 있다. 자가, 전세, 월세의 주거더미는 연령별 가구원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별 가구원수 변수와 주거형태의 상호연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검토사항

도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과소파악 문제와 관련하여 장래 수행해야 할 과제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보고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신고소득의 과소 신고 여부와 과소 신고된 소득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둘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추정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가구와 자

영업자 가구의 소비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연령 분포가 유사한 가구를 찾아내 이들 가구의 소득(혹은 추정소득), 소비지출, 소비지출의 항목, 저축 구성, 보유자산 규모를 비교하여 양 가구간의 소비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셋째, 자영업자 가구에서 우려되는 소득의 과소 신고 경향이 근로자 가구에서는 없는지, 또 근로자 가구내에서도 소득(혹은 직업)의 안정도, 노후 연금의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소비 특성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Ⅳ. 도시 자영업자 소득 추계 방법 : 보유 자산과 인적 자본 접근법

1. 보유 자산과 인적 자본을 이용한 소득 추계

앞에서는 소비지출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의 소비지출 규모를 가구별이나 개인

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을 수반한다. 기존 연구들이 이용한 소비지출 자료는 도시가계조사나 대우 패널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정된 표본 가구들이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가구들의 경우, 이처럼 상세한 소비지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였다.

가. 소득추계의 기본적 발상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계가 불가능하다면 이같은 소비지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지표로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보유 유무, 자동차의 배기량, 주거용 부동산 소유 유무와 주거 유형(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면적, 골프장 회원권 등이다. 이들 지표는 관찰이 쉽기 때문에 이들 보유 자산을 토대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 쉽게 고려될 수 있다.

보유자산외에 개인의 인적자본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을 추계해 볼 수도 있다. 가령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 학력, 건강상태, 직업 그리고 가구내 취업가능자수의 성별,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소득 추계는 한층 정확해질 것이다.

아래와 같이 도식으로 정형화하여 볼 수 있다(그림 3-1). 먼저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추정해보고, 이어서 인적자본에서 소득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하에서 각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나. 보유자산을 이용한 소득 추계

위에서 소개한 소비지출접근법과 관련성을 지닌 방식이다. 소비지출 수준과 보유 자산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지출되지 않은 소득이 축적되어 자산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 소득 중 소비지출되지 않고 축적된 분“인 보유자산과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의 소득 수준과 오늘의 소득 수준간에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리적인 약점을 지닌다.

<그림 3-1> 소득 추계의 기본 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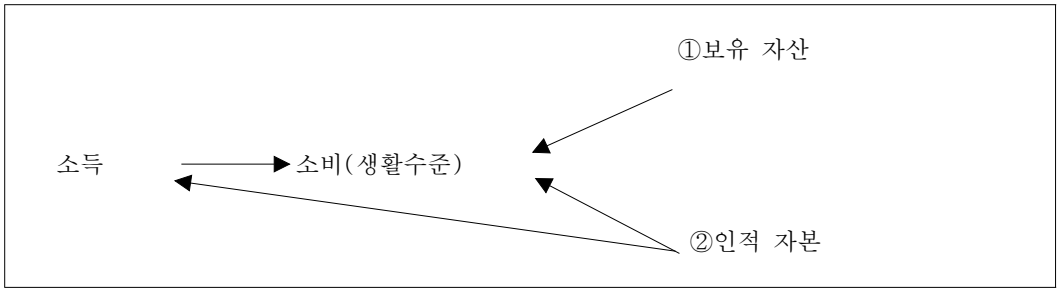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에서 도시 자영업자 가구와 무직자 가구의 보험료율을 정할 때, 해당가구의 자동차 보유 유무, 자동차 배기량, 주택보유 유무, 주택면적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전형적인 보유 자산을 이용한 소득 추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마땅한 다른 대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쉽게 관찰 가능한 보유자산에 입각해 소득을 추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이성은 있으나 추정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 개인의 인적자본을 이용한 소득 추계

인적자본이라 함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학력, 숙련 노동, 지식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의 노동력과 물적 자본과 결합하여 이들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적 자본과 대비되는 자본 개념으로 확립되었으며,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책정할 때 고려되는 변수가 되기도 하고 한 사회의 지적 수준을 평가할 때도 사용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물적 자본을 통한 증여와 비슷하게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한 가지 수단으로 인적 자본의 증진이 고려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소득이 개인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양과 질에 의존하지 않겠느냐는 한다는 그간의 이론적·실증적 논의에 입각해 가구내의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 취업원의 학력, 직업, 근속연수 등의 변수를 해당 가구의 인적 자본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가정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때의 소득은 개인의 노동소득만을 지칭하고 이자, 배당 소득 등의 자산소득과 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의 인적자본에 관한 정

보양이 쉽게 파악 가능하다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계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경기, 경쟁 요건, 개인의 사업 능력 등이 이같은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이들 요인과 인적 자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방법은 자영업자와 비슷한 인적 자본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급여를 찾아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로서 일했을 때 보다 자영업자로 일할 때 작지 않은 효용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전제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최초 취업시 근로자로 근무를 희망하지만 마땅한 취업처를 찾지 못해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48].

이상의 인적자본 요소로 학력, 노동시장 경험연수, 자영업자의 거주 지역, 산업 등을 포함한 추계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49].

2. 보유 자산과 인적 자본의 절충에 의한 소득 추계

여기서는 앞에서 기술한 두 방법을 절충한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다. 이같은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 방법이 더 현실 타당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측이 쉬운 보유자산과 인적자본 중에서 관측이 쉬운면서 또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선택해 소득 추계식을 만든다. 즉 자동차 보유 유무와 보유시 자동차의 종류, 주택 소유 유무와 소유시의 주거 면적, 무소유시의 주거 형태와 주거 면적, 교육연수, 노동 시장 경험연수, 직업, 산업 등의 변수를 포함시킨 추계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들 추계식을 거주 지역과 가구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구함으로써 한정된 가구를 대상으로한 보다 정치한 소득 추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가령 서울·근로자 가구로 대상이 한정되면, 이들 가구를 다시 주택과 자동차의 보유 유무로 구분한 다음, 각각에 대해 거주 행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면적 등의 보유 자산 변수와 자동차 종류,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연수, 노동시장 경험연수, 직업, 산업 등의 인적 자본 변수를 이용해 소득추계식을 세운다.

현진권 외(1997)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할 수 있는 일정한 인적자본과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가구들에 대하여 과연 그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이고 또 소

득의 분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있다. 소유물의 보유형태가 나이 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령별, 연령·지역별로 자동차보유 유무와 주택보유 유무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파악한다. 분류기준이 되는 변수를 늘려갈수록 분류된 각 그룹이 점차 동질화되어 소득에 대한 정보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표본의 수가 가장 많은 1993년도 대우패널 자료의 경우 분석 가능한 표본수가 1948개이므로 분류된 그룹내의 표본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있어 분류기준을 4개 이하로 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추계 작업은 보유자산과 인적자본 정보를 최대한 잘 이용하여 실제 소득에 근사한 추계소득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개념에 가까운 인적자본에 기초한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과 인적 자본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추계소득과 실제소득의 괴리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외에 자본 소득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으므로 보유자산에 입각한 방법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일선에서 개별가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소득추계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소득추계의 기본은 절충 방식에 입각한 소득 추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 변수를 늘려 분류된 그룹의 동질성을 높여 소득을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용자료와 분석방법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제도 확대시 이용 가능한 소득 추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유자산과 인적 자본을 절충한 소득 추계식을 이용한다.

이용자료는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이며, 분석방법은 기존의 분석방법인 배준호·홍충기(1998)와 현진권 외(1997)에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수정한 방법을 채용한다.

3. 분석결과

비교적 입수 가능한 정보인 물적 자산, 인적 자산, 소비지출 정보를 토대로 소득함수를 추계한 결과가 <표 3-5>와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표는 본시 소득이 파악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얻어진 소득함수식이지만, 여기서 얻어진 추정계수를 이용하면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

한 정보가 입수가능한 가구의 소득을 비교적 높은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을 추계하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는 주택 소유 여부, 점유 형태(자가, 무상주택,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거처구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사용면적, 자동차 보유별, 에너지 소비(전기료 + 수도료),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주 직업, 가구주 산업, 배우자 학력, 거주 지역(도 단위), 거주지역(시부, 군부), 가구구분 등이다.

이상의 14개 종속변수를 사용하는 모형 4 대신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주 직업, 가구주 산업, 배우자 학력의 5개 변수를 제한 9개 변수로 추정한 결과(모형 2)도 못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상의 9개 변수(혹은 14개 변수)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을 상당한 수준의 정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들 정보가 동일한 표본은 같은 소득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겠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오차는 5-6개 정도의 정보에 의존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것에 비하면 낮아져 실제치에 근사한 추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근로자 가구

먼저 근로자가구의 추정 계수를 토대로 얻어지는 정성적(定性的)인 함의를 정리해보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이 16.0%(모형 4는 24.5%) 더 높고, 자가보다는 전세가 11.7%(4.7%), 월세가 24.6%(13.3%)더 높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거주자가 7.0%(4.7%) 더 높고, 사는 집의 면적이 10% 넓어질수록 소득이 2.1%(1.4%) 더 많고, 경차를 가진 사람에 비해 소형차는 7.2%(5.2%), 중형차는 9.8%(8.1%), 대형차는 18.1%(13.2%)만큼 소득이 더 많다. 전기요금과 수도료 지급액이 10% 많은 이는 소득이 2.3%(1.1%) 더 많다.

서울 거주자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 거주자는 소득이 낮다. 부산 21.6%(21.1%), 경기 5.8%(7.3%), 강원 10.9%(13.8%), 충북 10.2%(11.5%), 충남 5.4%(4.3%), 전북 14.7%(17%), 전남 4.1%(4%), 경북 3.2%(4.9%), 경남 -0.2%(5%), 제주 9.9%(5.4%) 등이다.

또 시부지역 거주자에 비해 군부지역 거주자는 8.9%(6.4%) 낮고,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13.7%(7.1%),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2.4%(8.6%), 임시 및 일용노무자 36.9% (29%)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연령에서는 40대 전반 가구에 비해 20세 미만 47.4%, 20대 전반 10.1%, 20대 후반 10.7%, 30대 전반 8.7%, 30대 후반 4.6%, 40대 후반 8.9%, 60대 이상이 3.7% 낮은 반면 50대 전반은 15.8%, 50대 후반은 6.7%가 각각 더 높다.

가구주 연령과 더불어 인적 자산의 크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력의 경우 파급효과가 다소 불분명하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에 비해 중퇴이하 18.5%, 중졸 7.7%, 고퇴 8.1%가 더 낮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대체로 높게 나오지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 이에 비해 배우자 학력은 비교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졸에 비해 중퇴이하는 8.6%가 더 낮지만 전문대졸 9.7%, 대퇴 16.2%, 대졸 13.3%, 대학원졸은 16.1% 만큼 더 높다.

직업에서는 사무직원에 비해 임원 관리자 21.8%, 전문가 8%, 준전문가는 2.1% 만큼 높고, 서비스판매직 3.3%, 기능직은 12.4% 만큼 낮다.

산업에서는 금융·보험·서비스업에 비해 농·어업 4.6%, 광업·제조업 2.4%, 도소매업 7.5%, 숙박·음식업 11.4%, 운수·통신업은 3.6% 만큼 낮다.

대부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분석 결과인데 주거의 점유 형태에서 자가보다 전세나 월세가 더 높은 소득을 지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대도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의 자가 비율이 높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장래의 검토과제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소득이 단독주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대도시의 고소득층이 아파트나 연립 주택에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표 3-5>로 정리된 모형 2 혹은 모형 4의 추정식을 컴퓨터에 입력해 두고 9개 변수나 14개 변수에 대한 해당 표본의 값을 입력하면 손쉽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얻어진 값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가입자의 개별적인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보정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의료보험에서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준을 세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영업자 가구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와 달리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도 '연간소득' 이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두 달의 월간소득은 조사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가구의 연간소득을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소득함수 추정식이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소득함수의 추정정도(精度)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떨어지지만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유추해 내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이 15.0%(모형 4는 17.7%) 더 높고, 자가보다는 전세가 13.4%(6.4%), 월세가

17.4%(32.6%)더 높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거주자가 11.7%(4.4%) 더 높고, 사는 집의 면적이 10% 넓어질수록 소득이 1.9%(1.2%) 더 많고, 경차를 가진 사람에 비해 소형차는 11%(9.7%), 중형차는 10.2%(8.6%), 대형차는 7.5%(3%)만큼 소득이 더 적다. 전기요금과 수도료 지급액 합계가 10% 많은 이는 소득이 2.3%(1.1%) 더 많다.

서울 거주자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 거주자는 소득이 낮다. 부산 50.3%(5.1%), 경기 3.8%(8.5%), 강원 10.4%(10.3%), 충북 12.6%(14.2%), 전북 6.5%(8.1%), 전남 8.5%(3.2%), 경북 7.4%(10.8%), 경남 4.4%(4.1%), 제주 7.8%(6.4%) 등이다. 충남만이 3.6%(2.8%) 더 높고 나오고 있으나 유의도는 낮다[50].

시부지역 거주자에 비해 군부지역 거주자는 5.5%(1.9%) 낮고, 상인(피용자 무)에 비해 상인(고용주) 27%(20.7%), 개인경영자 27.9%(16.6%), 법인경영자 43.5%(24%), 자유업자(피용자 유)는 57.8%(45.8%)가 더 높고 자유업자(피용자 무)는 10.7%(5.7%)만큼 낮다.

가구주 연령에서는 40대 전반 가구에 비해 20대 전반 28%, 20대 후반 4%, 50대 후반 3.7%, 60대 이상은 15%가 더 낮은 반면 30대 전반 0.2%, 30대 후반 0.8%, 40대 후반 4.9%, 50대 전반은 3.8%가 각각 높다.

가구주 연령과 더불어 인적 자산의 크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력의 경우 근로자가구와 마찬가지로 파급효과가 불분명하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에 비해 중퇴이하 12.8%, 중졸 7.2%, 고퇴 7.2%, 전문대 중퇴와 졸업 1.7%가 낮고 대퇴 4.3%, 대졸 5.8%, 대학원졸은 8% 만큼 높지만 유의도가 낮다. 배우자 학력은 가구주 학력보다 유의도가 더욱 낮은데 고졸에 비해 중졸이 3.3%가 낮고 전문대졸 4.2%, 대졸은 3%가 높다. 그런데 대학원졸은 5.1% 낮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유의도는 낮다.

직업에서는 사무직원에 비해 임원 관리자 8.2%, 전문가는 21.2% 만큼 높고, 기능직은 3.4%가 낮다.

산업에서는 금융·보험·서비스업에 비해 농·어업 27.3%, 전기가스·건설업 3.3%, 운수·통신업은 9.4%가 높고 숙박·음식업은 7.5%만큼 낮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숫자가 제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가령 경차에 비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보유자의 소득이 더 낮을 것이라는 추정결과에는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 표본수가 3024(2583)개로 근로자가구의 7578(5805)개에 비해 작아 일부 변수의 경우 소수의 특이치가 모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고, 특이치가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변수들의 분산이 커서 전체적으로 모형의 현실 설명도가 낮아지고 있다. 추정결과가 보여주듯이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근로자가구에 비해 연령과 학력이라는 인적자산의 두 변수가 지닌 모형

설명력이 낮고, 소득의 안정도 역시 낮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표 3-6>에 정리된 모형 2 혹은 모형 4의 추정식을 컴퓨터에 입력해 두고 9개 변수나 14개 변수에 대한 해당 표본의 값을 입력하여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가구에서는 가구간의 편차가 심하므로 모형에서 얻어진 값을 기본 지표로 삼되 보험가입자의 개별적 사항을 근로자 가구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 표 3-5 > 보유자산과 인적자본 정보를 이용한 소득추계 (근로자가구)

	모형 1	모형 2	모형3	모형4
종속변수	로그소득(연간소득 기준)			
표본수	14734	7578	11183	5805
절편	10.846	11.551	12.598	13.071
	(153.4)	(110.1)	(152.9)	(110.0)
소유여부	0.219	0.196	0.157	0.150
	(14.73)	(9.41)	(11.49)	(7.81)
무상주택	0.077	0.037	0.012	−0.012
	(3.42)	(1.30)	(0.57)	(−0.46)
전세	0.169	0.111	0.077	0.046
	(11.23)	(5.20)	(5.48)	(2.37)
보증부월세	0.202	0.168	0.079	0.076
	(10.58)	(6.17)	(4.21)	(2.84)
월세	0.175	0.220	0.085	0.125
	(8.06)	(7.61)	(3.72)	(4.16)
아파트	0.118	0.068	0.038	0.046
	(12.63)	(5.16)	(4.18)	(3.58)
연립다세대	0.031	−0.001	−0.012	−0.014
	(2.56)	(−0.07)	(−1.05)	(−0.85)
기타	0.067	0.068	0.076	0.129
	(2.72)	(2.14)	(3.17)	(4.00)
로그집면적	0.211	0.213	0.125	0.140
	(26.09)	(18.31)	(13.88)	(10.55)
경차	0.094	0.063	0.042	0.033
	(5.32)	(2.96)	(2.55)	(1.64)
소형차	0.159	0.133	0.087	0.086
	(24.35)	(15.04)	(13.81)	(9.85)
중형차	0.205	0.156	0.109	0.113
	(25.60)	(14.75)	(14.21)	(10.83)
대형차	0.225	0.229	0.129	0.159
	(12.64)	(9.78)	(8.24)	(7.65)
로그에너지	0.257	0.225	0.139	0.105
	(35.23)	(21.66)	(17.85)	(9.47)
20세 미만			−0.412	−0.642
			(−3.03)	(−3.67)
25세 미만			−0.130	−0.1070
			(−3.83)	(−2.32)
30세 미만			−0.111	−0.113
			(−7.07)	(−5.25)
35세 미만			−0.088	−0.091
			(−6.81)	(−5.11)
40세 미만			−0.055	−0.047
			(−4.48)	(−2.87)
50세 미만			0.078	−0.093
			(5.67)	(−4.92)
55세 미만			0.152	0.147
			(10.12)	(7.07)
60세 미만			0.071	0.065
			(4.17)	(2.73)
60세 이상			−0.076	−0.038
			(−3.83)	(−1.38)
중졸			−0.089	−0.080
			(−7.94)	(−5.12)
중퇴이하			−0.152	−0.205
			(−5.44)	(−5.36)
고퇴			−0.012	−0.085
			(−0.39)	(−2.07)
전문대졸			0.013	0.010
			(0.84)	(0.46)
전문대퇴			0.040	0.012
			(1.60)	(0.37)
대졸			0.045	0.020
			(3.26)	(1.01)
대퇴			0.019	0.030
			(0.44)	(0.51)
대학원졸			0.043	0.010
			(1.82)	(0.32)
대학원퇴			−0.020	−0.102
			(−0.32)	(−1.16)
임원,관리자			0.179	0.197
			(7.63)	(6.13)
전문가			0.097	0.077
			(5.45)	(3.14)
준전문가			0.030	0.021
			(2.19)	(1.12)
서비스판매직			−0.073	−0.034
			(−6.10)	(−1.28)
기능직			−0.190	−0.132
			(−11.98)	(−4.39)
단순노무직			0.108	0.043
			(1.67)	(0.56)
DSAN1(농·어)			−0.103	−0.047

			(−2.65)	(−1.03)
DSAN2(광·제조)			−0.035	−0.024
			(−3.32)	(−1.53)
DSAN3(전기가스·건설)			−0.085	−0.013
			(−7.26)	(−0.68)
DSAN4(도소매)			−0.099	−0.078
			(−7.15)	(−3.72)
DSAN5(숙박·음식)			−0.142	−0.121
			(−6.30)	(−3.76)
DSAN6(운수·통신)			−0.026	−0.037
			(−1.83)	(−1.82)
DSAN7(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0.154	0
			(0.58)	
배우자중졸			0.006	−0.005
			(0.53)	(−0.36)
배우자중퇴이하			−0.096	−0.090
			(−3.63)	(−2.48)
배우자고퇴			−0.059	−0.036
			(−1.38)	(−0.63)
배우자전문대졸			0.054	0.093
			(3.03)	(3.64)
배우자전문대퇴			−0.010	−0.030
			(−0.28)	(−0.58)
배우자대졸			0.098	0.125
			(6.34)	(5.83)
배우자대퇴			0.119	0.150
			(2.34)	(2.02)
배우자대학원졸			0.205	0.149
			(4.20)	(2.24)
배우자대학원퇴			−0.081	−0.316
			(−1.03)	(−1.91)
부산		−0.243		−0.237
		(−2.74)		(−2.87)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0		0
경기		−0.060		−0.076
		(−2.86)		(−3.65)
강원		−0.115		−0.149
		(−4.55)		(−5.95)
충북		−0.108		−0.122
		(−4.33)		(−4.96)
충남		−0.056		−0.044
		(−2.17)		(−1.73)
전북		−0.159		−0.186
		(−6.05)		(−7.21)
전남		−0.042		−0.041
		(−1.53)		(−1.50)
경북		−0.033		−0.050
		(−1.32)		(−1.97)
경남		0.002		−0.051
		(0.10)		(−2.24)
제주		−0.104		−0.055
		(−3.34)		(−1.76)
군부 지역		−0.082		−0.066
		(−6.74)		(−5.40)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0.143		−0.074
		(−8.38)		(−3.97)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0.254		−0.090
		(−15.52)		(−3.26)
임시 및 일용노무자		−0.461		−0.212
		(−23.95)		(−6.67)
(괄호안의 값은 t값)				
Adj R2	0.368	0.427	0.375	0.402
F value	612.5	202.6	125.2	59.3

<표 3-6> 보유자산과 인적자본 정보를 이용한 소득추계 (자영업자가구)

	모형 1	모형 2	모형3	모형4
종속변수	로그소득(연간소득 기준)			
표본수	6384	3024	5482	2583
절편	10.910	11.366	12.338	12.953
	(87.42)	(58.58)	(78.28)	(56.35)
소유여부	0.169	0.164	0.149	0.163
	(6.95)	(4.64)	(6.34)	(4.87)
무상주택	0.067	0.111	−0.035	−0.019
	(1.21)	(1.33)	(−0.62)	(−0.24)
전세	0.162	0.126	0.070	0.062
	(6.42)	(3.45)	(2.85)	(1.80)
보증부월세	0.171	0.112	0.052	−0.008
	(5.84)	(2.54)	(1.80)	(−0.18)
월세	0.154	0.160	0.056	0.282
	(4.33)	(3.26)	(1.55)	(0.59)
아파트	0.103	0.111	0.022	0.043
	(6.29)	(4.28)	(1.37)	(1.70)
연립다세대	0.051	0.030	−0.008	−0.016
	(2.48)	(0.91)	(−0.42)	(−0.52)
기타	0.043	0.102	0.034	0.069
	(1.84)	(3.24)	(1.44)	(2.21)
로그집면적	0.253	0.193	0.184	0.116
	(18.78)	(9.64)	(12.67)	(5.60)
경차	0.163	0.238	0.124	0.176
	(4.16)	(4.39)	(3.26)	(3.53)
소형차	0.133	0.122	0.091	0.073
	(10.15)	(6.37)	(7.21)	(4.04)
중형차	0.181	0.130	0.126	0.086
	(14.40)	(7.09)	(10.13)	(5.03)
대형차	0.218	0.160	0.161	0.145
	(12.96)	(6.37)	(9.78)	(6.12)
로그에너지	0.255	0.227	0.153	0.108
	(20.62)	(12.33)	(11.79)	(5.75)
20세 미만			0	0
25세 미만			−0.172	−0.328
			(−1.01)	(−1.05)
30세 미만			−0.048	−0.041
			(−1.39)	(−0.89)
35세 미만			−0.014	0.002
			(−0.62)	(0.07)
40세 미만			0.020	0.008
			(1.07)	(0.29)
50세 미만			0.039	0.048
			(1.92)	(1.59)
55세 미만			0.075	0.037
			(3.13)	(1.03)
60세 미만			−0.043	−0.038
			(−1.61)	(−0.96)
60세 이상			−0.140	−0.163
			(−4.65)	(−3.67)
중졸			−0.065	−0.075
			(−3.72)	(−3.05)
중퇴이하			−0.165	−0.137
			(−3.58)	(−2.15)
고퇴			0.020	−0.075
			(0.45)	(−1.23)
전문대졸			−0.0002	−0.017
			(−0.01)	(−0.38)
전문대퇴			−0.0003	0.017
			(−0.01)	(−0.27)
대졸			0.057	0.056
			(2.43)	(1.64)
대퇴			−0.007	0.042
			(−0.09)	(0.34)
대학원졸			0.059	0.077
			(1.14)	(0.98)
대학원퇴			−0.104	−0.192
			(−0.80)	(−0.99)
임원,관리자			0.142	0.079
			(1.72)	(0.68)
전문가			0.165	0.192
			(1.87)	(1.52)
준전문가			−0.105	−0.004
			(−1.26)	(−0.04)
서비스판매직			−0.065	0.006
			(−0.81)	(0.06)
기능직			−0.120	−0.035
			(−1.40)	(−0.30)
단순노무직			0.538	0
			(1.65)	

DSAN1(농·어)			0.316 (1.86)	0.241 (1.09)
DSAN2(광·제조)			0.038 (1.59)	−0.016 (−0.46)
DSAN3(전기가스·건설)			0.053 (2.13)	0.032 (0.89)
DSAN4(도소매)			0.033 (1.60)	0.038 (1.27)
DSAN5(숙박·음식)			−0.0008 (−0.02)	−0.078 (−1.75)
DSAN6(운수·통신)			0.075 (2.93)	0.090 (2.44)
DSAN7(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0.237 (0.53)	0.271 (0.62)
배우자중졸			−0.030 (−1.76)	−0.034 (−1.35)
배우자중퇴이하			−0.030 (−0.63)	0.009 (0.13)
배우자고퇴			−0.039 (−0.62)	0.060 (0.68)
배우자전문대졸			0.032 (0.89)	0.041 (0.82)
배우자전문대퇴			0.057 (0.91)	0.127 (1.52)
배우자대졸			0.080 (2.71)	0.030 (0.75)
배우자대퇴			0.021 (0.13)	−0.113 (−0.44)
배우자대학원졸			−0.211 (−2.04)	−0.036 (−0.23)
배우자대학원퇴			−0.037 (−0.14)	−0.244 (−0.77)
부산		−0.700 (−0.34)		−0.052 (−0.29)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0		0
경기		−0.039 (−1.05)		−0.089 (−2.60)
강원		−0.110 (−2.53)		−0.109 (−2.62)
충북		−0.135 (−3.02)		−0.153 (−3.62)
충남		0.035 (0.78)		0.028 (0.65)
전북		−0.067 (−1.51)		−0.084 (−1.97)
전남		−0.089 (−1.89)		−0.033 (−0.71)
경북		−0.077 (−1.66)		−0.114 (−2.60)
경남		−0.045 (−1.06)		−0.042 (−1.04)
제주		−0.081 (−1.49)		−0.066 (−1.25)
군부 지역		−0.057 (−2.64)		−0.020 (−0.97)
상인(고용주)		0.239 (10.90)		0.188 (8.38)
개인경영자		0.246 (5.60)		0.154 (3.27)
법인경영자		0.361 (4.59)		0.215 (2.76)
자유업자(피용자 무)		−0.113 (−1.80)		−0.059 (−0.75)
자유업자(피용자 유)		0.456 (4.71)		0.377 (3.82)
(괄호안의 값은 t값)				
Adj R2	0.2955	0.3073	0.2758	0.2792
F value	192.25	45.705	40.376	15.707

Ⅴ. 결 론

국민연금의 제도 확대는 199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1999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는 사실상 취업자 전원이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하면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정된 확대조치로 성인 중 전업주부층을 제외한 거의 전국민이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우산속에 들어오게 된다.

제도 확대를 앞두고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확대 적용 대상자인 도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5인 미만) 근로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것이 문제가되는 것은 이들에게 적용될 연금 방식이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 따라서 이 연금은 소득비례부분을 포함하며, 소득비례부분은 근로기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그 결과 은퇴기에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금 급여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또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 계층간 소득 재분배효과가 약화된다.

우리는 본 고에서 통계청이 조사한 1996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도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 자료를 이용해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된 내용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결과는 좀 더 정치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향후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은 먼저 도시구분별, 가구구분별로 신뢰도 높은 소득 함수 추정식을 개발하고, 기존의 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소득 추정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실용도높은 추정방법의 개발이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추정된 소득을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별도 수집한 정보에 입각해 최종적으로 추정소득을 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12.

――――――――――――――――――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자료집, 1997.12.

배준호·홍충기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 분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51-76.

정영헌 외 『근거과세 정착과 추계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최병호·김용하 외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6-14, 1996.

통계청 『1992년 총사업체조사보고서』

통계청 『1992년 고용구조조사보고서』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초자료 1998.

한국노동연구원 『'99년도 실업대책 방향』 1998.6.

현진권 외 『사회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소득 추계방법의 개발』 한국조세연구원, 1997.

Choo, H. and J. Yoon. "Siz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1982: Its Estimation and Sources of Change , in Korean, *Korea Development Review*, March 1984, KDI. 2-18.

Parket, S. C. "The Distribution of Self-Employment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1976-1991 , *The Economic Journal*, vol. 107, no. 441, 1997.

Pissarides, Christopher A. and Guglielmo Weber. "An Expenditure-Based Estimate of Britain's Black Economy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9, 1989.

Yoo, J. G. and Na, S. L. "An Estimation of The Incomes of Self-Employed Urban Households in Korea ,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991.

Yoo, I. H. "An Estimate of the Tax Evasion in Korea: Income and Value Added Taxes , Working Paper 97-03, 1997.

부록. 가구구분별 소비함수

<부표 3-1> 소비함수 추정식 (전체가구)

	모형 1	모형 2	모형3	모형4
종속변수			로그소비	
표본수	21117	16665	16665	10602
절편	4.315	5.806	6.278	4.611
	(49.83)	(49.49)	(52.48)	(33.60)
로그소득(연간소득)	0.493	0.428	0.402	0.484
	(79.40)	(56.47)	(52.13)	(52.97)
소유여부	0.064	0.051	0.048	0.068
	(5.53)	(4.29)	(4.12)	(4.00)
무상주택	−0.017	−0.053	−0.047	0.004
	(−0.89)	(−2.65)	(−2.36)	(0.16)
전세	0.016	−0.002	0.007	0.015
	(1.36)	(−0.17)	(0.61)	(0.88)
보증부월세	0.165	0.111	0.117	0.158
	(11.38)	(7.12)	(7.64)	(7.28)
월세	0.193	0.114	0.122	0.215
	(11.47)	(5.94)	(6.42)	(9.18)
아파트	0.046	0.025	0.034	0.037
	(6.21)	(3.16)	(4.31)	(3.27)
연립다세대	−0.017	−0.037	−0.037	−0.022
	(−1.79)	(−3.73)	(−3.76)	(−1.48)
기타	−0.018	−0.003	0.008	−0.023
	(−1.22)	(−0.19)	(0.54)	(−1.15)
로그집면적	0.130	0.099	0.074	0.148
	(20.06)	(12.80)	(9.63)	(15.37)
경차	0.052	0.054	0.051	0.038
	(3.54)	(3.45)	(3.30)	(2.01)
소형차	0.081	0.716	0.070	0.080
	(14.88)	(12.47)	(12.40)	(10.31)
중형차	0.090	0.086	0.085	0.083
	(14.35)	(13.05)	(13.21)	(9.48)
대형차	0.094	0.083	0.086	0.087
	(8.76)	(7.72)	(8.05)	(5.58)
로그에너지	0.197	0.164	0.132	0.184
	(33.38)	(24.29)	(19.31)	(20.96)
20세 미만		−0.003	0.013	
		(−0.02)	(0.10)	
25세 미만		−0.096	0.024	
		(−2.83)	(0.63)	
30세 미만		−0.091	0.041	
		(−6.46)	(1.74)	
35세 미만		−0.115	−0.030	
		(−10.34)	(−1.62)	
40세 미만		−0.042	0.002	
		(−4.19)	(0.12)	
50세 미만		0.015	0.003	
		(1.36)	(0.22)	
55세 미만		−0.007	0.053	
		(−0.55)	(2.56)	
60세 미만		−0.023	0.092	
		(−1.63)	(3.56)	
60세 이상		−0.107	0.083	
		(−6.51)	(3.30)	
중졸		−0.036	−0.037	
		(−3.82)	(−3.97)	
중퇴이하		0.001	0.001	
		(0.04)	(0.04)	
고퇴		0.007	0.002	
		(0.28)	(0.07)	
전문대졸		0.010	0.011	
		(0.72)	(0.81)	
전문대퇴		0.084	0.079	
		(3.90)	(3.75)	
대졸		0.032	0.035	
		(2.69)	(3.03)	
대퇴		0.135	0.138	
		(3.55)	(3.70)	
대학원졸		0.056	0.056	
		(2.58)	(2.60)	
대학원퇴		−0.047	−0.056	
		(−0.82)	(−0.98)	
임원,관리자		0.030	0.034	
		(1.72)	(1.97)	
전문가		0.022	0.024	
		(1.26)	(1.40)	
준전문가		0.004	0.002	
		(0.30)	(0.14)	
서비스판매직		0.005	0.002	
		(0.46)	(0.21)	
기능직		0.010	−0.003	
		(0.65)	(−0.20)	
단순노무직		−0.143	−0.156	
		(−2.17)	(−2.39)	
DSAN1(농·어)		−0.007	−0.025	
		(−0.17)	(−0.65)	
DSAN2(광·제조)		−0.046	−0.047	
		(−4.77)	(−4.93)	
DSAN3(전기가스·건설)		−0.017	−0.020	

		(−1.62)	(−1.94)	
DSAN4(도소매)		−0.074	−0.070	
		(−7.16)	(−6.87)	
DSAN5(숙박·음식)		−0.074	−0.064	
		(−4.19)	(−3.66)	
DSAN6(운수·통신)		−0.005	−0.009	
		(−0.41)	(−0.75)	
DSAN7(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0.226	0.222	
		(0.99)	(0.98)	
배우자중졸		−0.010	−0.030	
		(−1.06)	(−3.28)	
배우자중퇴이하		−0.067	−0.089	
		(−2.87)	(−3.85)	
배우자고퇴		−0.047	−0.039	
		(−1.35)	(−1.14)	
배우자전문대졸		−0.010	0.005	
		(−0.64)	(0.31)	
배우자전문대퇴		0.117	0.134	
		(3.69)	(4.28)	
배우자대졸		−0.001	0.026	
		(−0.04)	(1.89)	
배우자대퇴		0.145	0.151	
		(2.89)	(3.07)	
배우자대학원졸		−0.023	0.017	
		(−0.52)	(0.38)	
배우자대학원퇴		0.038	0.064	
		(0.48)	(0.84)	
2세 이하			0.016	
			(2.02)	
3세−5세 이하			0.028	
			(3.74)	
6세−13세 이하			0.062	
			(11.25)	
14세−19세 이하			0.107	
			(19.10)	
20세−29세 이하			0.054	
			(8.97)	
30세−39세 이하			0.074	
			(7.58)	
40세−49세 이하			0.081	
			(6.62)	
50세−59세 이하			0.062	
			(4.54)	
60세 이상			0.019	
			(2.37)	
부산				−0.070
				(−0.90)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경기				−0.038
				(−2.23)
강원				−0.056
				(−2.71)
충북				−0.064
				(−3.11)
충남				−0.070
				(−3.34)
전북				−0.030
				(−1.39)
전남				−0.100
				(−4.50)
경북				−0.069
				(−3.29)
경남				−0.090
				(−4.80)
제주				−0.020
				(−0.80)
군부 지역				−0.076
				(−7.60)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0.026
				(1.58)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0.007
				(−0.43)
임시 및 일용노무자				−0.044
				(−2.31)
상인(고용주)				−0.029
				(−1.70)
개인경영자				0.046
				(2.26)
법인경영자				−0.009
				(−0.24)
자유업자(피용자 무)				0.018
				(0.28)
자유업자(피용자 유)				−0.015
				(−0.29)
(괄호안의 값은 t값)				
Adj R2	0.5089	0.4216	0.4388	0.5117

< 부표 3-2 > 소비함수 추정식 (근로자가구)

	모형 1	모형 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종속변수			로그소비			
표본수	14734	11183	11183	7578	5807	5807
절편	4.160	5.711	6.209	4.512	5.931	6.099
	(38.71)	(37.05)	(39.15)	(26.85)	(25.85)	(26.40)
로그소득(연간소득)	0.499	0.433	0.405	0.477	0.421	0.403
	(64.26)	(43.00)	(39.23)	(41.80)	(29.11)	(27.11)
소유여부	0.078	0.060	0.053	0.091	0.068	3.062
	(5.56)	(4.08)	(3.68)	(4.37)	(3.21)	(2.97)
무상주택	-0.0148	-0.049	-0.049	0.013	-0.017	-0.027
	(-0.69)	(-2.15)	(-2.19)	(0.45)	(-0.58)	(0.93)
전세	0.023	0.004	0.011	0.025	0.021	0.035
	(1.64)	(0.26)	(0.75)	(1.17)	(0.97)	(1.64)
보증부월세	0.189	0.131	0.138	0.170	0.128	0.133
	(10.45)	(6.58)	(7.01)	(6.30)	(4.37)	(4.63)
월세	0.208	0.111	0.117	0.227	0.143	0.146
	(10.16)	(4.54)	(4.85)	(7.87)	(4.36)	(4.52)
아파트	0.040	0.024	0.033	0.027	0.023	0.034
	(4.52)	(2.53)	(3.44)	(2.07)	(1.62)	(2.46)
연립다세대	-0.020	-0.036	-0.035	-0.030	-0.037	-0.018
	(-1.70)	(-2.89)	(-2.86)	(-1.72)	(-1.97)	(-1.01)
기타	0.037	0.030	0.045	0.026	0.038	0.056
	(1.62)	(1.17)	(1.80)	(0.84)	(1.07)	(1.61)
로그집면적	0.125	0.087	0.064	0.139	0.120	0.098
	(16.03)	(9.01)	(6.60)	(11.75)	(8.22)	(6.79)
경차	0.030	0.03	0.032	0.017	0.027	0.030
	(1.78)	(1.87)	(1.80)	(0.79)	(1.23)	(1.41)
소형차	0.078	0.069	0.068	0.082	0.072	0.071
	(12.51)	(10.16)	(10.12)	(9.18)	(7.50)	(7.48)
중형차	0.079	0.073	0.074	0.069	0.073	0.071
	(10.28)	(8.88)	(9.14)	(6.43)	(6.30)	(6.24)
대형차	0.079	0.062	0.062	0.063	0.057	0.056
	(4.70)	(3.73)	(3.77)	(2.68)	(2.50)	(2.48)
로그에너지	0.204	0.171	0.135	0.204	0.157	0.141
	(28.42)	(20.37)	(15.74)	(19.18)	(12.89)	(11.44)
20세 미만		-0.007	0.054		0.290	0.307
		(-0.05)	(0.37)		(1.51)	(1.59)
25세 미만		-0.110	0.050		-0.105	0.038
		(-3.05)	(1.18)		(-2.08)	(0.64)
30세 미만		-0.096	0.075		-0.089	0.073
		(-5.75)	(2.58)		(-3.78)	(1.79)
35세 미만		-0.123	-0.012		-0.120	-0.036
		(-8.96)	(-0.51)		(-6.17)	(-1.10)
40세 미만		-0.061	0.005		-0.053	-0.019
		(-4.74)	(0.24)		(-2.94)	(-0.63)
50세 미만		-0.008	-0.023		-0.012	-0.010
		(-0.58)	(-1.40)		(-0.58)	(-0.43)
55세 미만		-0.022	0.082		-0.016	0.121
		(-1.38)	(3.17)		(-0.70)	(3.25)
60세 미만		-0.008	0.162		-0.011	0.198
		(-0.44)	(5.05)		(-0.42)	(4.28)
60세 이상		-0.108	0.125		-0.117	0.099
		(-5.14)	(3.93)		(-3.87)	(2.17)
중졸		-0.032	-0.034		-0.032	-0.033
		(-2.71)	(-2.85)		(-1.88)	(-1.92)
중퇴이하		0.003	0.007		0.068	0.072
		(0.10)	(0.23)		(1.62)	(1.73)
고퇴		0.033	0.036		0.069	0.063
		(1.01)	(1.12)		(1.53)	(1.42)
전문대졸		0.014	0.016		0.003	0.003
		(0.82)	(0.97)		(0.15)	(0.14)
전문대퇴		0.063	0.061		0.063	0.071
		(2.37)	(2.32)		(1.77)	(2.00)
대졸		0.048	0.050		0.055	0.061
		(3.25)	(3.49)		(2.58)	(2.92)
대퇴		0.164	0.163		0.156	0.157
		(3.61)	(3.64)		(2.45)	(2.50)
대학원졸		0.052	0.046		0.047	0.038
		(2.07)	(1.86)		(1.39)	(1.23)
대학원퇴		-0.080	-0.097		-0.128	-0.139
		(-1.19)	(-1.45)		(-1.33)	(-1.46)
임원,관리자		0.019	0.027		0.013	0.023
		(0.76)	(1.09)		(0.38)	(0.66)
전문가		0.004	0.008		0.048	0.041
		(0.23)	(0.41)		(1.76)	(1.54)
준전문가		-0.001	-0.001		0.016	0.017
		(-0.08)	(-0.09)		(0.78)	(0.83)
서비스판매직		-0.00008	-0.004		0.039	0.039
		(-0.01)	(-0.29)		(1.34)	(1.36)
기능직		0.005	-0.007		0.043	0.036
		(0.29)	(-0.43)		(1.29)	(1.11)
단순노무직		-0.142	-0.159		-0.102	-0.128
		(-2.07)	(-2.35)		(-1.23)	(-1.55)
DSAN1(농·어)		-0.008	-0.021		0.001	-0.016

		(−0.19)	(−0.52)		(0.01)	(−0.32)
DSAN2(광·제조)		−0.051	−0.050		−0.065	−0.067
		(−4.62)	(−4.56)		(−3.79)	(−4.01)
DSAN3(전기가스·건설)		−0.039	−0.043		−0.053	−0.064
		(−3.11)	(−3.49)		(−2.62)	(−3.18)
DSAN4(도소매)		−0.085	−0.080		−0.101	−0.096
		(−5.73)	(−5.49)		(−4.36)	(−4.19)
DSAN5(숙박·음식)		−0.058	−0.039		−0.065	−0.046
		(−2.41)	(−1.64)		(−1.84)	(−1.31)
DSAN6(운수·통신)		−0.014	−0.017		−0.013	−0.017
		(−0.96)	(−1.15)		(−0.59)	(−0.770)
DSAN7(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0.269	0.330		0	0
		(0.95)	(1.19)			
배우자중졸		−0.014	−0.031		−0.009	−0.028
		(−1.20)	(−2.72)		(−0.56)	(−1.76)
배우자중퇴이하		−0.053	−0.077		−0.097	−0.116
		(−1.88)	(−2.78)		(−2.45)	(−2.96)
배우자고퇴		−0.060	−0.060		−0.161	−0.159
		(−1.32)	(−1.34)		(−2.54)	(−2.53)
배우자전문대졸		−0.021	−0.003		−0.020	−0.004
		(−1.13)	(−0.18)		(−0.70)	(−0.13)
배우자전문대퇴		0.097	0.123		−0.019	−0.002
		(2.47)	(3.17)		(−0.33)	(−0.04)
배우자대졸		−0.020	0.010		−0.042	−0.009
		(−1.21)	(0.61)		(−1.78)	(−0.36)
배우자대퇴		0.162	0.176		0.294	0.305
		(3.02)	(3.31)		(3.62)	(3.79)
배우자대학원졸		0.026	0.070		0.004	0.043
		(0.50)	(1.36)		(0.05)	(0.59)
배우자대학원퇴		0.039	0.072		−0.399	−0.348
		(0.46)	(0.87)		(−2.20)	(−1.94)
2세 이하			0.027			0.004
			(2.83)			(0.30)
3세−5세 이하			0.034			0.027
			(3.73)			(2.16)
6세−13세 이하			0.067			0.057
			(9.67)			(5.88)
14세−19세 이하			0.106			0.092
			(14.99)			(9.06)
20세−29세 이하			0.051			0.030
			(6.86)			(2.67)
30세−39세 이하			0.079			0.070
			(6.48)			(3.97)
40세−49세 이하			0.106			0.071
			(6.89)			(3.22)
50세−59세 이하			0.049			0.004
			(2.95)			(0.15)
60세 이상			0.019			0.004
			(1.89)			(0.29)
부산				−0.088	−0.041	
				(−0.99)	(−0.46)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0	0	
경기				−0.021	−0.034	
				(−1.05)	(−1.47)	
강원				−0.050	−0.066	
				(−2.01)	(−2.41)	
충북				−0.067	−0.095	
				(−2.72)	(−3.53)	
충남				−0.057	−0.048	
				(−2.20)	(−1.73)	
전북				−0.024	−0.056	
				(−0.93)	(−1.98)	
전남				−0.097	−0.084	
				(−3.57)	(−2.80)	
경북				−0.058	−0.076	
				(−2.31)	(−2.73)	
경남				−0.085	−0.079	
				(−3.77)	(−3.18)	
제주				−0.017	−0.014	
				(−0.54)	(−0.40)	
군부 지역				−0.063	−0.064	−0.061
				(−5.22)	(−4.78)	(−4.61)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0.027	0.075	0.085
				(1.58)	(3.69)	(4.24)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0.014	0.039	0.040
				(−0.84)	(1.30)	(1.36)
임시 및 일용노무자				−0.054	0.011	0.023
				(−2.75)	(0.32)	(0.66)
(괄호안의 값은 t값)						
Adj R2	0.500	0.427	0.375	0.402		
F value	984.6	202.6	125.2	59.3		

<부표 3-3> 소비함수 추정식 (자영업자가구)

종속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로그소비			
표본수	6384	5482	5482	3024	2583	2583
절편	4.599	6.149	6.610	4.842	6.440	6.767
	(29.79)	(30.61)	(32.66)	(20.52)	(20.94)	(22.58)
로그소득(연간소득)	0.481	0.408	0.385	0.496	0.404	0.371
	(46.00)	(34.44)	(32.21)	(32.68)	(22.80)	(20.86)
소유여부	0.040	0.043	0.047	0.022	0.046	0.056
	(1.97)	(2.07)	(2.33)	(0.74)	(1.55)	(1.92)
무상주택	0.008	−0.033	−0.010	−0.006	0.019	0.051
	(0.16)	(−0.69)	(−0.20)	(−0.09)	(0.26)	(0.74)
전세	0.008	−0.005	0.010	−0.002	0.004	0.028
	(0.39)	(−0.24)	(0.46)	(−0.05)	(0.13)	(0.92)
보증부월세	0.131	0.087	0.096	0.143	0.119	0.129
	(5.34)	(3.45)	(3.84)	(3.89)	(3.18)	(3.50)
월세	0.169	0.125	0.138	0.202	0.166	0.201
	(5.68)	(3.95)	(4.40)	(4.95)	(3.89)	(4.91)
아파트	0.061	0.028	0.038	0.061	0.035	0.062
	(4.45)	(1.97)	(2.71)	(2.85)	(1.57)	(2.89)
연립다세대	−0.011	0.046	−0.048	−0.003	−0.031	−0.025
	(−0.65)	(−2.69)	(−2.80)	(−0.10)	(−1.13)	(−0.98)
기타	−0.040	−0.015	−0.007	−0.039	−0.023	−0.007
	(−2.09)	(−0.74)	(−0.37)	(−1.49)	(−0.82)	(−0.27)
로그집면적	0.138	0.119	0.092	0.163	0.158	0.126
	(11.96)	(9.25)	(7.15)	(9.69)	(8.54)	(6.90)
경차	0.140	0.129	0.124	0.128	0.128	0.132
	(4.28)	(3.87)	(3.77)	(2.83)	(2.89)	(3.01)
소형차	0.087	0.080	0.079	0.074	0.073	0.069
	(7.85)	(7.22)	(7.21)	(4.64)	(4.58)	(4.36)
중형차	0.109	0.105	0.103	0.117	0.119	0.109
	(10.23)	(9.62)	(9.55)	(7.64)	(7.77)	(7.26)
대형차	0.108	0.098	0.099	0.115	0.120	0.122
	(7.57)	(6.76)	(6.96)	(5.50)	(5.67)	(5.86)
로그에너지	0.185	0.149	0.124	0.141	0.116	0.103
	(17.40)	(13.02)	(10.74)	(9.04)	(6.88)	(6.33)
20세 미만		0	0	0	0	0
25세 미만		−0.091	−0.037		0.001	0.106
		(−0.61)	(−0.25)		(0.01)	(0.38)
30세 미만		−0.094	−0.026		−0.043	0.034
		(−3.11)	(−0.58)		(−1.03)	(0.55)
35세 미만		−0.100	−0.055		−0.121	−0.074
		(−5.18)	(−1.80)		(−4.34)	(−1.69)
40세 미만		−0.012	0.0002		−0.006	0.011
		(0.75)	(0.01)		(−0.26)	(0.27)
50세 미만		0.051	0.089		0.043	0.027
		(2.87)	(1.97)		(1.60)	(0.91)
55세 미만		0.025	0.002		−0.002	−0.023
		(1.22)	(0.06)		(−0.07)	(−0.45)
60세 미만		−0.055	−0.045		−0.067	−0.038
		(−2.34)	(−1.03)		(−1.91)	(−0.57)
60세 이상		−0.111	0.006		−0.083	0.077
		(−4.21)	(0.13)		(−2.09)	(1.22)
중졸		−0.039	−0.040		−0.035	−0.032
		(−2.56)	(−2.65)		(−1.58)	(−1.48)
중퇴이하		−0.001	−0.015		−0.010	−0.028
		(−0.02)	(−0.37)		(−0.18)	(−0.50)
고퇴		−0.033	−0.043		0.059	0.052
		(−0.86)	(−1.14)		(1.09)	(0.97)
전문대졸		0.006	0.003		0.025	0.017
		(0.22)	(0.12)		(0.63)	(0.42)
전문대퇴		0.127	0.118		0.085	0.089
		(3.52)	(3.33)		(1.53)	(1.63)
대졸		−0.002	0.005		0.025	0.032
		(−0.09)	(0.25)		(0.85)	(1.08)
대퇴		0.047	0.062		−0.210	−0.181
		(0.68)	(0.91)		(−1.92)	(−1.68)
대학원졸		0.102	0.111		0.032	0.045
		(2.45)	(2.48)		(0.46)	(0.65)
대학원퇴		0.087	0.945		0.647	0.648
		(0.77)	(0.84)		(3.77)	(3.85)
임원,관리자		0.029	0.008		0.116	0.111
		(0.40)	(0.12)		(1.12)	(1.09)
전문가		0.109	0.095		0.170	0.171
		(1.42)	(1.25)		(1.52)	(1.55)
준전문가		0.031	0.002		0.070	0.076
		(0.43)	(0.03)		(0.67)	(0.74)
서비스판매직		0.012	−0.011		0.071	0.071
		(0.17)	(−0.17)		(0.72)	(0.73)
기능직		0.019	−0.010		0.075	0.064
		(0.25)	(−0.14)		(0.70)	(0.61)
단순노무직		−0.203	−0.215		0	0
		(−0.71)	(−0.77)			
DSAN1(농·어)		−0.043	−0.127		−0.010	−0.217
		(−0.29)	(−0.87)		(−0.05)	(−1.12)
DSAN2(광·제조)		−0.018	−0.027		−0.018	−0.032
		(−0.87)	(−1.33)		(−0.57)	(−1.06)

DSAN3(전기가스·건설)		0.067	0.043		0.052	0.050
		(2.15)	(2.01)		(1.62)	(1.58)
DSAN4(도소매)		−0.053	−0.055		−0.043	−0.043
		(−2.96)	(−3.12)		(−1.63)	(−1.66)
DSAN5(숙박·음식)		−0.081	−0.83		−0.150	−0.155
		(−2.92)	(−3.04)		(−3.81)	(−4.00)
DSAN6(운수·통신)		0.023	0.011		0.015	−0.007
		(1.03)	(0.51)		(0.44)	(−0.23)
DSAN7(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0.100	0.010		0.104	−0.004
		(0.26)	(0.03)		(0.27)	(−0.01)
배우자중졸		0.0003	−0.024		0.002	−0.031
		(0.02)	(−1.64)		(−0.01)	(−1.42)
배우자중퇴이하		−0.092	−0.109		−0.094	−0.129
		(−2.19)	(−2.63)		(−1.49)	(−2.07)
배우자고퇴		−0.033	−0.019		−0.039	−0.023
		(−0.61)	(−0.36)		(−0.52)	(−0.31)
배우자전문대졸		0.024	0.033		−0.043	−0.034
		(0.76)	(1.07)		(−0.97)	(−0.77)
배우자전문대퇴		0.156	0.158		0.111	0.114
		(2.88)	(2.95)		(1.49)	(1.56)
배우자대졸		0.048	0.067		0.040	0.067
		(1.88)	(2.63)		(1.11)	(1.87)
배우자대퇴		0.003	−0.009		0.193	0.196
		(0.02)	(−0.07)		(0.84)	(0.87)
배우자대학원졸		−0.194	−0.159		−0.050	0.022
		(−2.15)	(−1.79)		(−0.35)	(0.16)
배우자대학원퇴		−0.074	−0.035		−0.058	−0.045
		(−0.33)	(−0.16)		(−0.21)	(−0.16)
2세 이하			−0.005			0.005
			(−0.32)			(0.24)
3세−5세 이하			0.020			0.013
			(1.50)			(0.71)
6세−13세 이하			0.053			0.051
			(5.89)			(4.06)
14세−19세 이하			0.107			0.113
			(11.62)			(8.55)
20세−29세 이하			0.060			0.074
			(5.96)			(4.63)
30세−39세 이하			0.066			0.092
			(3.96)			(3.60)
40세−49세 이하			0.046			0.074
			(2.21)			(2.43)
50세−59세 이하			0.093			0.115
			(3.96)			(3.30)
60세 이상			0.020			0.021
			(1.50)			(1.08)
부산				0.010	−0.018	
				(0.06)	(−0.11)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0	0	
경기				−0.080	−0.089	
				(−2.64)	(−2.91)	
강원				−0.057	−0.071	
				(−1.59)	(−1.92)	
충북				−0.045	−0.050	
				(−1.20)	(−1.33)	
충남				−0.095	−0.079	
				(−2.60)	(−2.09)	
전북				−0.035	−0.021	
				(−0.94)	(−0.55)	
전남				−0.096	−0.083	
				(−2.46)	(−2.01)	
경북				−0.087	−0.066	
				(−2.27)	(−1.69)	
경남				−0.097	−0.094	
				(−2.77)	(−2.62)	
제주				−0.018	−0.017	
				(−0.40)	(−0.37)	
군부지역				−0.104	−0.086	−0.084
				(−5.75)	(−4.59)	(−4.60)
상인(고용주)				0.064	0.055	0.065
				(3.44)	(2.74)	(3.30)
개인경영자				−0.007	−0.077	−0.059
				(−0.20)	(−1.83)	(−1.43)
법인경영자				0.008	−0.087	−0.064
				(0.13)	(−1.25)	(−0.94)
자유업자(피용자 무)				0.014	0.097	0.108
				(0.27)	(1.38)	(1.57)
자유업자(피용자 유)				0.120	−0.051	−0.027
				(1.49)	(−0.58)	(−0.31)
(괄호안의 값은 t값)						
Adj R2	0.5006	0.4357	0.4351	0.4357	0.4466	0.4460
F value	427.558	79.358	73.082	107.256	31.194	34.140

1)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부지역의 경우 인구 및 가구수 등에 기준하여 시부와 군부가 점하는 가중치를 구해, 이 가중치로 조사치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노응원(1998)은 이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의 값들을 조정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를 조사하고 있다.
2) 주거 관련 항목인 '월세평가액'은 자가, 전세, 월세 등에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평가액(실월세액 혹은 상당 추정액)이다. 보유자산규모는 저축보유액에 월세평가액을 적정한 할인률로 나누어 자본화한 값을 더한 것이다. 적정 할인률로는 8%가 사용되었다. . 사실 할인률로 어떤 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유자산가격이 달리 나오는데 추정된 값은 피부로 느끼는 값보다 다소 작게 계측된 감이 없지 않다. 실세 금리를 고려하여 좀더 높은 10%, 14%의 두 할인률을 사용하면 자본화된 값은 더욱 작게 추정된다.
3) 빈곤율은 전국 기준으로 65년 40.9%(도시 54.9 농촌 35.8), 76년 14.8%(18.1, 11.7), 80년 9.8%(10.4, 9.0), 91년 7.6%(8.7, 2.8)로 낮아지고 있다. 또 빈곤격차/GNP 비율도 4.9%, 1.1%, 0.5%, 0.48%로 작아지고 있다. 빈곤 격차는 빈곤인구를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빈곤선-빈곤인구 평균소득) * 빈곤인구로 정의된다. 노인철 외(1995) p. 83 <표 2-2> 참조.
4) '빈곤층'은 학술 용어로 '저소득층'은 행정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빈곤선(poverty line), 빈곤율(poverty ratio), 빈곤격차(poverty gap), 빈곤도(depth of poverty), 빈곤의 심각도(severity of poverty), 센 빈곤지수(Sen poverty index), 절대빈곤, 상대빈곤,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극빈, 일과성빈곤, 만성빈곤 등이 있다. 빈곤이라고 하면 통상 '소득빈곤'을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인간빈곤'의 개념도 도입되었다. '인간빈곤지수' 계측시에는 40세미만 사망자 비율, 문맹자 비율,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 5세미만의 저체중아 비율 등이 사용된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UNDP(1997), pp. 16-18, 노인철 외(1995) pp. 78-79 참조.
5) 1994년 기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16만원은 최저생계비 17.3만원의 92.5%에 달해 88년 이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른 값이 제시되고 있으며 한 연구(박순일·김미곤)에 의하면 1994년 기준으로 5인가족 76.6만원(1인당 15.3만원)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철 외(1995) p. 85 <표 2-3> 및 p. 80 <표 2-1> 참조.
6)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6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530.2만명 중 70만원 미만의 누적합계는 전근로자의 16.3%이고, 80만원 미만의 누적합계는 23.8%에 달한다. 이상의 통계치로부터 하위 20%를 포함하는 한계점 소득으로 74.9만원을 추정해 낼 수 있다. 이 값은 근로자 14,797가구를 대상으로 96년 10월-11월 기준으로 얻어낸 본고의 제1분위 평균소득 76.3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노동부 통계는 조사 단위가 '개인'인 반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구'라는 점이다. 가구당 취업인원을 고려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소득이 오히려 낮게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고의 제1분위에서 맞벌이가구 비율은 4.8%에 불과하므로 취업인원은 1을 약간 넘는 수준일 것이다.
7) 현 불황하의 재취업 패턴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재취업자의 속성에 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가 98년 8월 시점에서 노동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8) 퇴직시나 퇴직후 지급받는 각종 금전적 보상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훨씬 적다. 가령 퇴직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만한 퇴직금과 각종 위로금을 지급받는 이들은 전체 퇴직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

는 이들은 98년 7월 기준 15만명으로 97년 하반기 이후 늘어난 실직자 1백만명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수급자와 수급자당 급여수준은 결코 큰 숫자와 금액이 아닐 것이다.

9) 문제는 소득 감소시 해당 가구가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축소하느냐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조정소비지출'은 가구가 소득 감소에 직면해 나타낼 소비지출로 이 값을 엄밀하게 계산해 내기는 쉽지 않다. 가구의 소득이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의 반응이 대칭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비함수 연구 중 유력한 가설인 '항상소득가설' 과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 감소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는 비탄력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소득 감소 만큼 소비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설들은 소비지출을 '항상소득'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소비지출의 변화를 '톱니효과' 등으로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이 가설을 받아들여 소득 감소시의 소비지출 탄력치를 소득 증가시 탄력치의 0.1배로 가정하였다. 가령 소득이 10% 늘어날 때 소비지출이 6% 늘어난다면, 소득이 10% 줄어들 때 소비지출은 0.6%만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근 발표된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소득 감소를 웃도는 소비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감한 반응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간주하여 수년 이상에 걸친 항상적인 소비 패턴을 고려해야 하는 본고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10) 이종훈(1997) 「인건비 예산의 효율화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재정개혁』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1)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상의 결과가 본 분석의 소비지출의 조정 가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 소비지출이 달리 조정되면 교원가구의 동 기간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12) 실업자대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안정채권이 98년 3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4개월간 판매되었다. 총판매액은 8,734.5억원으로 상속세 면제가 매출을 크게 늘렸다. 1일평균판매액은 판매개시일인 3월 30일부터 상속세 면제 발표전인 6월16일까지 29억이었는데, 면제 발표후인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제1회차분은 149억원, 6월 30일부터 판매한 제2회차분은 209억원을 기록하였다. 권종별 판매 실적은 10억원권 94매, 1억원권 6,284매, 1천만원권 15,105매이다. 당초 고용안정채권으로 1조6,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7월 3일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판매목표액을 6,000억원으로 축소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2차추경에 반영하여 보다 고용효과가 높은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입키로 결정하였다. 7월말 기준 실업자 대부 실적은 20,305건에 1,29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13)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 요율을 0.6%에서 1.0%로, 고용안정사업 요율을 0.2%에서 0.3%로 올리며,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00인 이상 0.7%, 50인 이상 일반 0.5%,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0.3%, 50인 미만 0.1%로 올릴 예정이다.

14) 이하의 기술에 있어선 이경원·이상수(1998)를 상당부분 참조하였다. 서울시의 실업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과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는 이 보고서를 참조바란다.

15) 서울시의 98년도 기준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포함하여 3만9천 2백14가구의 9만1천2백90명이다.

16) 최근 5년동안 가구주가 구시군 경계를 이동하게 되는 요인은 직업 36.4%, 가족 23.5%, 주택 22.9% 순이다. 직업요인은 취업(36.1%), 근무지 이동(31.0%), 사업(18.5%)의 비중이 높고, 가족은 결혼(51.4%), 분가 또는 독립(15.7%), 가족과 가깝게 거주(9.5%)의 비중이 높으며, 주택은 내집마련(25.6%), 큰평수로 이동(20.6%), 임대계약기간 만료(17.5%) 등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이동요인의 특성은 20대~40대 초반까지는 취업·사업 등 직업요인에 의한 이동이 많고,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는 주택요인에 의한 이동이 많다. 98년도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

17) 복지부가 최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1만명을 지정하였다. 이는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3.65명과 가구당 취업인원수 1.56명을 감안하면 13만 2천명의 실업자를 지원하는 효과를 지닌다.

18) 지방채 발행이 재원 조달의 유력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발행잔고는 19조원으로 큰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외채도 있다. 지방채의 75%가 수익사업 관련 부채로 상환 여력은 있다고 보인다. 지방채 발행 외에 외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높은 이자가 걸림돌이다. 행정자치부 차원의 통합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상용(1998)세미나 토론 자료.

19) 지차체 조직 및 예산 운영과 관련한 군살빼기, 투자지출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예산 및 회계 제도의 개편과 투명한 관리 운영 등이 그것이다. 즉 인건비 및 물건비를 절감하고 산하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며, 절감된 예산을 투자 지출 및 사회개발 지출로 이전 운용하고, 산출예산제도(내부계약제도 등)와 성과예산제도,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공무원 정원제보다는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경직적인 인사제도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상용(1998) 토론자료 등.

20) 이영희(1998)는 IMF 불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일부 자치단체(강원, 전남, 제주)를 제외하면 당초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대비 최대 4.1%까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각적인 재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고려 가능한 세입 보전방안 중 유력한 것이 자치체가 민간부문 및 해외부문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즉 지역 금융기관 자금이 지역외로 적지 않게 유출되고 있는데 이 민간 여유자금을 자치체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흡수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영희(1998) 토론자료 등.

21) 물론 가구주의 실직은 일반가구를 무직가구로 맞벌이가구를 일반가구로 전환시키고, 배우자의 실직도 유사한 변화를 초래한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변화까지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오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22) 1998년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지출의 감소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8.8%인데 비해 교양오락 28.7%, 외식비 24.3%, 피복신발 23.9%, 가구가사용품 17.9%, 보건의료 15.4%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1998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1998. 6, p. 3.

23) 우리가 채택한 mod=상수 가정은 강한 가정이다. 이는 소비의 소득탄력치 조정을 고려할때 소득계층이나 직종에 따라 상이한 조정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블루칼러에 비해 화이트칼러는 실직후 재취업이 힘들므로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항상소득의 감소로 받아들여 소비를 크게 줄이는 반면, 블루칼러는 비교적 쉽게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간주하여 소비를 약간만 줄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캐롤라이나 대학의 M.Dynarski and S.Sheffrin(1987)은 실직자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화이트칼러의 소비감소율이 블루칼러의 그것보다 4배에 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Q.J.E.* May 1987, pp. 411-28.

24) 이번 통계청 프로젝트의 연구참여자들도 대부분이 월소득보다 연소득에 비중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외에 자영업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월소득을 연소득으로 확장시키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누구도 조사된 월소득과 연소득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연소득이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연소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연소득이 가계부 등 엄격한 기록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

우 소득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하며 남아 있는 기록도 불분명하여 조사된 숫치가 평소의 '감(感)'에 의해 기술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지 모른다.

25)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재취업 방법, 실직전 업종과 재취업시의 업종, 실직전 소득과 현재 소득, 실업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생계유지 방법·직업훈련 이수 여부·직업훈련 기간, 각종 지원조치중 재취업에 유효했던 지원조치 등이다.

26) 1984년에는 전년 대비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5만 6천명(-2.7%) 감소하였다.

27)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및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8)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7*, 日本 總務廳 統計局 웹싸이트, www.stat.go.jp

29) 노동부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8.

30) 가계소비실태조사는 맞벌이가구를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한 가구로서 배우자가 가족의 일을 계속적으로 돕는 경우, 같이 살고있지 않은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를 제외한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 제1권 가계수지편 p.16.

31) '부업파'의 분류기준의 하나로 사용한 배우자소득/가구주소득의 값으로 '4할'아닌 '3할'을 채택할 경우에도 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32) 여성 자영업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포기나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포착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의 소득이 가구주의 사업 및 부업소득에 포함되어 조사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업 및 부업소득만을 구분하여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연간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간소득 관련 항목중 미싱항목이 많아 이같은 추산 작업이 어려웠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33) 기타가구원의 취업 유무와 취업비율이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에서 크게 차이날 경우 가구주, 배우자외에 기타가구원의 존재와 취업 유무가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같은 경우 기타가구원의 존재를 무시하고 배우자의 취업과 실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논하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타가구원은 맞벌이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보다는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으며, 기타가구원 취업이 가구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가구가 9.6%, 맞벌이가구가 5.0%로 일반가구 쪽이 크다. 그런데 일반가구쪽의 기타가구원 취업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 가구단위로는 기타가구원이 취업을 통해 가구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두 가구에서 비슷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기타가구원의 존재 여부와 취업비율이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우리의 분석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기타가구원에 대한 별도의 배려 없이 논의를 진행한다.

34) 거주용부동산 평가액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인 '월세평가액'에 일정 할인율(가령 8%)을 적용하여 자본화한 값이다.

35) 배우자 실직에 따른 가구소비지출의 조정과정은 제1부의 부록1 참조.

36) 표본수가 적어 신뢰성있는 결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37)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1996)』에서 제시된 1995년 기준 여성근로자의 학력별 경력별 월급여액 차이를 토대로 학력별 연령별 월급여액 차이를 유추해보자. 대졸과 고졸을 비교하면 20대(고졸 5-9년, 대졸이상 1-2년)는 고졸 69.4만원, 대졸이상 80.2만원이고, 30대(고졸 10년 이상, 대졸이상 5-9년)는 고졸 92.9만원, 대졸이상 108.3만원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 제시된 임금차보다 작다. 또 고졸과 고졸이하를 비교하면 20대(중졸 5-9년, 고졸 3-4년)는 중졸 57.7만원, 고졸 59.5만원, 30대(중졸 10년 이상, 고졸10년 이상)는 중졸 64.8만원, 고졸 92.0 만원으로 본 분석과 비교하여 20대는 작게, 30대는 크게 나타난다. 단 남성노동력의 경우 높은 연령이 높은 경력연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노동력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의 숫자

는 해석시 주의가 요망된다.

38) 현실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값은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곧 추정된 소득을 두 값을 이용해 적정 수준 값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9)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 추계 결과(1997).

40)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급여를 내리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충고할 지 모르겠다. 맞는 지적이다. 이것이 명확한 해답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 방향으로개혁함에 따른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는 것이었다.

41) 배준호·홍충기(1998)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의 1/3(평균)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에서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과표양성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현진권·전영준 외(1997)도 과표양성화율이 크게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42) 기존 가입자들과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문제는 지금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이 근로기의 문제라고 하면 양자간의 연금 급부상의 불공평 문제는 은퇴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급부상의 불공평이라 함은 근로기에 낮은 보험료를 낸 그룹이 은퇴기에 비교적 높은 연금 급부를 수령함에 따른 불공평을 지칭하며, 자영업자의 대규모 가입으로 이같은 문제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 대비 근로소득세의 평균실효세율은 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4% 수준인데 비해 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근로자 부담분 6%, 퇴직금전환분 포함시)로 인상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근로소득세보다 높은 계층이 상당수의 근로자에서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장래 중간 소득 계층 이상의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자영자 계층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자 계층은 대부분 중간 소득 계층이하의 그룹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43) 근로자 가구(표본수 14734 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치가 0.50인데 비해 자영업자 가구(표본수 6384 가구)의 그것은 0.48로서 근로자 가구보다 낮다. 본고의 <부표 3-1>에서 <부표 3-3> 까지의 모형 1 참조.

44) 간단한 2기 모형을 세워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기간별 소비 최적화 행동을 가정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1기 소비성향이 근로자 가구의 1기 소비성향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다. 2기에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와 이같은 소득없이 1기에만 소득을 벌어 일생을 사는 자영업자는 당연히 낮은 소비성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45)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소비가 모두 조사된 관측치는 일부에 불과하다. 일련의 데이터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 선택된 1,402 관측치중 38%인 529 관측치만이 소득과 소비 통계를 갖추고 있다. 또 조사된 관측치도 통계상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즉 월세평가액을 포함한 소득 평균이 83만 6천원인데 월세평가액을 제외한 소득 평균이 123만 3천원으로 나타나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월세평가액 포함시 120만 3천원, 미포함시 94만 6천원으로 나타나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관측치별 평균소비성향의 평균이 2.7로 나타나 비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된 통계치의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증거이다. 이에 비해 대우패널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 결과에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

46) 40세를 구분연령으로 사용한 것은 이 연령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 등 가계비 지출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0세 구분은 35세, 45세, 50세 구분시에 비해 그룹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 전 가구 사용할 때에 비해 두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구원의 연령별 구성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차별화하여 보여주는 장점을 지닌다.

47) 총소득 대신에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을 변수로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추정된 소비함수식 전체의 설명력이 낮아지고 소득변수의 유의도도 약간 낮아진다.

48)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초 취업시 본의와 달리 자영업자를 택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49) 대우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현진권 외(1997)의 분석

$\log$소득 $= b_0 + b_1$교육연수 $+ b_2$경험연수 $+ b_3$경험연수$^2 + b_4$ 거주지역 $+ b_5$산업

추정치는 $b_1 = 0.07(0.00)$, $b_2 = 0.03(0.00)$, $b_3 = -0.00(0.00)$, $b_4 = -0.01(0.02)$ (괄호안은 표준오차)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구주 교육년수가 일년 추가될수록 가구 근로소득은 평균적으로 7%씩 더 늘어나고, 노동시장 경험년수는 일년 추가되면 소득이 평균 3%씩 더 증가하나 경험년수가 클수록 증가 속도가 체감함을 보여준다. 또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서비스업 종사자보다 각각 7% 와 14% 정도 소득이 높은 반면 농·어업은 약 24% 정도 소득이 낮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다. 다른 산업에서는 서비스업과 비슷한 소득수준으로 나타난다.

50) 광역시 중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 지역더미가 들어간 추정식의 추정계수들은 이상의 4개 광역시 지역이 제외된 표본에서 얻어진 값이라는 점에서 제약을 지닌다.